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해설서



목차

제 1 장 일반사항	1
1.1 제도 일반사항	3
1.2 운영체계	8
1.3 관련 가이드라인의 목록	14
1.4 용어정의	14
1.5 기타 알아두면 좋은 내용	19
제 2 장 관리업체 지정방법 및 절차 등	23
2.1 관리업체 지정 개요	25
2.2 관리업체 지정 특례	29
2.3 관리업체 지정 방법	45
2.4 권리와 의무 승계	60
제 3 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등	65
3.1 명세서 작성 개요	67
3.2 명세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69
3.3 명세서 검증 및 제출	78
3.4 명세서 공개 및 비공개 신청	80
제 4 장 감축목표 설정 등	85
4.1 감축목표 설정 개요	87
4.2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 및 재산정	94
4.3 감축목표의 설정	97
4.4 감축목표의 재설정	101
4.5 이의신청	103

제 5 장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107
5.1 이행계획서 개요	109
5.2 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110
5.3 관장기관의 이행계획 시정요청 및 개선명령	113
 제 6 장 이행실적 확인 및 행정처분	117
6.1 이행실적 확인 개요	119
6.2 이행실적 확인	120
6.3 이행실적 확인에 따른 개선명령	133
 별첨 1.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공통)	137

지침해설서 주요내용 및 지침 적용 범위

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해설서의 적용 범위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환경부 고시 제2022-54호)와 관련된 부분이다.

아래 표는 지침해설서를 기준으로 적용된 지침의 적용범위를 제시한다.

지침해설서 목차		지침 조문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제4조(주체별 역할분담) 제5조(비밀 준수) 제6조(자료제출 협조) 제9조(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등)
주요 내용	• 제도 일반사항 • 운영 체계 • 관련 가이드라인의 목록 • 용어 정의 • 기타 알아두면 좋은 내용	
제2장	관리업체 지정방법 및 절차 등	제8조(관리업체의 구성 및 지정기준) 제10조(관리업체의 지정대상 선정 등) 제12조(건물분야 특례) 제13조(교통분야 특례) 제13조의2(건설업 분야 특례) 제14조(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16조(지정대상 관리업체의 목록작성) 제17조(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 등의 제출시기) 제18조(적절성 등 확인) 제19조(확인결과 보완 등) 제20조(관리업체의 지정·고시) 제21조(이의신청서 작성 등) 제22조(관리업체 재심사)
주요 내용	• 관리업체 지정 개요 - 관리업체 지정 및 지정 예외 세부 기준 - 관리업체 지정 방법, 지정 절차, 지정 일정 - 지정된 관리업체가 지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 지정된 관리업체가 관리업체 지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는 절차 및 일정 - 이의신청한 관리업체가 이의신청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 • 권리와 의무 승계 - 조직경계 변경 시 유의사항 - 합병·양수·양도·분할 시 승계사항	

지침해설서 목차

지침 조문

제3장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제36조(명세서의 작성 및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체계) 제37조(명세서의 제출) 제40조(명세서의 확인) 제41조(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제63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제64조(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제65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제67조(명세서의 공개)
주요 내용	- 명세서 작성 개요 - 명세서의 제출 절차 및 시기 - 명세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 명세서 작성 양식 및 작성 방법 - 명세서의 검증 및 제출 - 명세서 공개사항 - 명세서 공개 관련 규정 - 명세서 비공개 신청 절차 및 방법	
제4장	감축목표 설정 등	제23조(목표 설정의 원칙) 제24조(기준연도 배출량) 제25조(기준연도 배출량의 재산정) 제26조(목표관리 계획기간) 제27조(목표설정 기준 및 절차) 제28조(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제31조(목표의 설정 및 관리 특례) 제32조(이의 신청)
주요 내용	- 감축목표 설정 개요 - 감축목표 설정 시 원칙 및 각 주체별 역할, 업무 정의 - 감축목표 설정 방법 및 체계 - 예상배출량 산정 방법 - 감축목표 설정 관련 세부 예시 및 예외사항 -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 및 재산정 - 이의신청 - 감축목표 설정 후 이의 신청 절차 및 관련 정보	
제5장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제35조(개선명령) 제38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제39조(이행계획 수립의 적용 특례)
주요 내용	- 이행계획서 개요 -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제출 시기, 제출 방법 및 절차 - 관장기관의 이행계획 시정요청 및 개선명령 -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예시	
제6장	이행실적 확인 및 행정처분	제33조(목표 달성의 평가 등) 제34조(이행실적 확인) 제35조(개선명령)
주요 내용	- 이행실적 확인 개요 - 이행실적 평가 절차, 시기, 평가 방법 - 배출허용량 재조정 방법 및 예시 - 관장기관의 이행실적 확인 및 개선명령 - 개선명령 관련 세부업무 및 예시	

지침 규정 적용 범위

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해설서에 적용된 지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지침 규정 적용 범위

지침 규정			포함 여부
제1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6조(자료제출 협조)	■ 포함
		제7조(정책협의회)	□ 미포함
	제2장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제8조(관리업체의 구성 및 지정기준) ~제22조(관리업체 재심사)	■ 포함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	제23조(목표 설정의 원칙) ~제28조(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제31조(목표의 설정 및 관리 특례) ~제35조(개선명령)	■ 포함
		제29조(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제30조(벤치마크 할당계수의 개발 등)	□ 미포함
	제4장 목표관리제의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체계	제36조(명세서의 작성 및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체계) 제37조(명세서의 제출) 제38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제39조(이행계획 수립의 적용 특례) 제40조(명세서의 확인)	■ 포함
	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제41조(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 미포함
	제6장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관리	제4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 구축) 제43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 관리)	□ 미포함
	제7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44조(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 미포함
	제8장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사무의 종합적인 점검·평가	제45조(점검·평가의 원칙) ~ 제59조(개선명령 등)	□ 미포함
제2편	제1장 총칙	제60조(목적)~제62조(비밀 준수)	□ 미포함
	제2장 명세서의 작성 방법 등	제63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 제66조(명세서의 작성)	■ 포함
	제3장 명세서의 공개	제67조(명세서의 공개)	■ 포함
	제4장 보 칙	제68조(규제의 재검토)	□ 미포함

지침해설서 개정연혁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2011년 3월 16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에 목표관리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에 대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환경부는 명세서 작성 및 목표관리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작성 해설서」를 수정·보완하여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해설서」(이하 “지침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2014년 10월 환경부는 이듬해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침을 개정(환경부 고시 제2014-186호)하였으며, 2015년에는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침해설서의 제1차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때 개정된 지침에 따라 기존 지침해설서를 ‘제1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과 ‘제2편 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으로 분권하였다.

2016년 6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 조항을 상위 법령과 일치 시키고, 혼동의 우려가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2020년 1월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등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에서 공통되는 내용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으로 일원화하도록 지침을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0-3호)하였으며, 2021년 3월에 배출량 산정 관련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1-47호)하였다.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으로 법령이 새롭게 제정이 되고 2022년 3월 같은 법 시행령 제정과 함께 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의 관한 지침을 전부개정(환경부 고시 제2022-54호)하였다.

이에 본 해설서는 2022년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에게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실무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침 해설서 개정 연혁

구 분	일 자	주요 내용
발 간	2012.12	•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작성 해설서」를 수정·보완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해설서」 발간
제1차 개정	2015.07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86) 개정 사항 반영 • 해설서 1편(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2편(명세서 작성 방법)으로 분권
제2차 개정	2016.12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개정 사항 반영 • 명세서 작성가이드라인 통합
제3차 개정	2021.06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1-47호) 개정 사항 반영
제4차 개정	2022.12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개정 사항 반영

지침해설서 주요 개정사항

본 해설서는 2022년 개정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의 내용을 반영 한 것으로, 배출량 산정방법, 활동자료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1-278호)」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지침 해설서 개정 항목

개정 구분	2022년 개정 지침해설서		2021년 지침해설서
	장 제목	세부목차	
■ 개정 ■ 보완	제1장 일반사항	1.1 제도 일반사항 1.2 운영체계 1.3 관련 가이드라인의 목록 1.4 용어정의 1.5 기타 알아두면 좋은 내용	1.1 제도 일반사항 1.2 운영체계 1.3 관련 가이드라인의 목록 1.4 용어정의 1.5 기타 알아두면 좋은 내용
■ 보완	제2장 관리업체 지정방법 및 절차 등	2.1 관리업체 지정 개요 2.2 관리업체 지정 특례 2.3 관리업체 지정 방법 2.4 권리와 의무 승계	2.1 관리업체 지정 개요 2.2 관리업체 지정 특례 2.3 관리업체 지정 방법 2.4 권리와 의무 승계
■ 개정 ■ 보완	제3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등	3.1 명세서 작성 개요 3.2 명세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3.3 명세서 검증 및 제출 3.4 명세서 공개 및 비공개 신청	3.1 명세서 작성 개요 3.2 명세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3.3 명세서 검증 및 제출 3.4 명세서 공개 및 비공개 신청
■ 보완	제4장 감축목표 설정 등	4.1 감축목표 설정 개요 4.2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 및 재산정 4.3 감축목표의 설정 4.4 감축목표의 재설정 4.5 이의신청	4.1 감축목표 설정 개요 4.2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 및 재산정 4.3 감축목표의 설정 4.4 감축목표의 재설정 4.5 이의신청
■ 삭제			5.1 조기감축실적 기준 5.2 조기감축실적 신청 방법
■ 개정 ■ 보완	제5장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5.1 이행계획서 개요 5.2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5.3 관장기관의 이행계획 시정요청 및 개선명령	6.1 이행계획서 개요 6.2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6.3 관장기관의 이행계획 시정요청 및 개선명령
■ 개정 ■ 보완	제6장 이행실적 확인 및 행정처분	6.1 이행실적 확인 개요 6.2 이행실적 확인 6.3 이행실적 확인에 따른 개선명령	7.1 이행실적 개요 7.2 이행실적 작성 및 제출 7.3 관장기관의 이행실적 확인 및 개선명령
■ 보완	별첨 1.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공통)	별첨 1.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공통)	별첨 1.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공통)
■ 삭제			별첨 2. 이행실적 작성 예시(공통)

관장기관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침 및 해설서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발행한 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적용할 때에는 관리업체간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총괄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한다.

제 1 장

일반사항

- 1.1 제도 일반사항
- 1.2 운영체계
- 1.3 관련 가이드라인의 목록
- 1.4 용어정의
- 1.5 기타 알아두면 좋은 내용

제1장 일반사항



1.1 제도 일반사항

1.1.1 법적 근거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 ② 정부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④~⑦ (생략)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②~⑧ (생략)



1.1.2 제도 개요(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7조 제1항)

- 목표관리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 감축목표 부여 및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관리함으로써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법체계

법 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8469호, 2021.9.24.]
시행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3.25.]
지 침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2-54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1-278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환경부고시 제2021-112호]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 이 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제21조제6항, 제21조제11항, 제27조제3항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목적

- 지침의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위한 관리업체의 목표 설정, 개선명령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의 원칙과 역할, 방법 및 절차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1.1.3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프로세스

- 목표관리제 운영프로세스는 지침 제20조(관리업체의 지정·고시), 제23조(목표 설정의 원칙), 제24조(기준연도 배출량), 제37조(명세서의 제출), 제38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근거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 30일까지 소관 관리업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이 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관리업체는 기존 배출시설 및 신·증설 시설의 예상배출량 등을 반영하여 목표협의를 통해 배출허용량을 부여 받는다.
 - 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목표를 부여받은 계획기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업체는 감축목표달성을 위해 계획기간에 감축활동을 시행하고 계획기간 다음해 3월 31일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규 관리업체인 경우 지정된 연도 및 지정된 연도 직전 3개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모두 보고하여야 한다.
- (예시) 2022년도에 신규 지정된 관리업체는 2023년 3월 31일까지 2019~2022년도까지 총 4개년도 명세서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프로세스

시 기		관리업체	관장기관	환경부장관
T년	상시	배출량 산정 및 인벤토리 구축 (단, 지속적인 운영·관리 필요)		목표관리지침 참조
	6월		관리업체 지정고시 (매년 반복)	관리업체 지정 종합 · 공표
T+1년		제3자 검증기관 배출량 검증		
	3월	(T-3년도~T년도) 명세서 제출	접수 / 확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록부(DB) 등록
	9월	목표 협의 (업체 ↔ 관장기관)	심의안건 작성	탄소중립위원회 목표설정 심의
	12월	(T+2)년도 이행계획서 제출	(T+2)년도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허용량 통보	
T+2년		제3자 검증기관 배출량 검증		
	3월	(T+1년도) 명세서 제출	접수 / 확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록부(DB) 등록
	9월	목표 협의 (업체 ↔ 관장기관)	심의안건 작성	탄소중립위원회 목표설정 심의
	12월	(T+3)년도 이행계획서 제출	(T+3)년도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허용량 통보	
T+3년		제3자 검증기관 배출량 검증		
	3월	(T+2년도) 명세서 제출	접수 / 확인 이행실적 평가	
	6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록부(DB) 등록	탄소중립위원회 이행실적 심의
	9월	목표 협의 (업체 ↔ 관장기관)	심의안건 작성	탄소중립위원회 목표설정 심의
	12월	(T+4)년도 이행계획서 제출	(T+4)년도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허용량 통보	
T+4년		(T+3년도) 진행업무 반복 (이후 반복 적용)		

* T년 : 관리업체 최초 지정연도

1.1.4 관련 법규 및 고시열람 방법

구분	관련 법령과 고시	열람방법
도입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령(법령·대통령령·부령)에서 검색
제도 체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27조	
세부 지침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에서 검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환경부 고시 제2021-112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1-278호)	
관리업체 지정	연도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 → “관리업체” 검색
	연도별 건물·교통·건설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고시	
	연도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관리업체 지정고시	
	연도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고시	
	연도별 해양, 수산, 해운, 항만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고시	



1.2 운영체제



지침 제9조(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등)

① 제8조의 관리업체의 소관 관장기관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관리업체의 소관 관장기관 구분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 · 임업 · 축산 · 식품 분야
 2.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 · 발전(發電) 분야
 3. 환경부 : 폐기물 분야
 4. 국토교통부 : 건물 · 교통(해운 · 항만 분야는 제외한다) · 건설 분야
 5. 해양수산부 : 해양 · 수산 · 해운 · 항만 분야
- (이하생략)

해 설

총괄기관	 환경부				
	산업 · 발전	건물 · 교통 · 건설	농업 · 임업 · 축산 · 식품	폐기물	해양 · 수산 · 해운 · 항만
부문별 관장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실무 대행처관	한국에너지공단	<건물> 한국에너지공단 <교통> 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 한국부동산원	<식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임업>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해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 · 수산 · 항만> 해양환경공단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발전 부문의 관장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실무대행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건물·교통·건설 부문의 관장기관은 국토교통부로 실무대행은 한국에너지공단(건물),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 한국부동산원(건설)에서 담당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임업·축산·식품 부문의 관장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실무대행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식품)과 한국임업진흥원(임업)에서 담당하고 있다. 식품분야의 경우 식료품, 음료, 담배를 포함하고, 임업분야는 목재 및 나무제품을 포함하나 가구는 제외한다.

○ 환경부

- 폐기물 부문의 관장기관은 환경부로 실무대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폐기물 부문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수도사업을 포함한다.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의 관장기관은 해양수산부로 실무대행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운), 해양환경공단(해양·수산·항만)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은 어업, 수산물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해운·항만 분야를 포함한다.



1.2.1 주체별 업무분담



총괄기관의 업무분담 관련 근거 지침 목록

- | | |
|--|--|
| ☐ 제18조(적절성 등 확인) | ☐ 제52조(사전조사) |
| ☐ 제19조(확인결과 보완 등) | ☐ 제53조(서면점검·평가) |
| ☐ 제20조(관리업체의 지정·고시) | ☐ 제54조(공동 실태조사 등) |
| ☐ 제22조(관리업체 재심사) | ☐ 제55조(점검·평가보고서의 작성) |
| ☐ 제47조(자료제출 요구의 원칙) | ☐ 제56조(점검·평가업무 등의 지원) |
| ☐ 제50조(비밀유지 의무) | ☐ 제57조(점검·평가결과의 통보) |
| ☐ 제51조(점검·평가계획의 수립) | ☐ 제59조(개선명령 등) |

해설

○ 총괄기관(환경부)의 업무범위

- 제도 총괄 및 조정
- 목표관리제 관련 종합적 기준, 절차 및 지침 마련
- 부문별 관장기관 사무에 대한 점검 및 평가(중대 문제 시 공동 실태조사)
- 부문별 관장기관이 선정한 관리업체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의 확인
-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이의신청 재심사 결과 확인
-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고시한 관리업체의 종합·공표
-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 부문별 관장기관이 검토한 산정등급 3(Tier 3) 배출계수에 대한 확인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 심의안건에 관한 부문별 관장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부문별 관장기관이 설정한 감축목표와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탄소중립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 점검·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비밀로 분류된 자료를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보존



부문별 관장기관의 업무분담 관련 근거 지침 목록

- | | |
|---|--|
| ☐ 제16조(지정대상 관리업체의 목록작성) | ☐ 제32조(이의 신청) |
| ☐ 제17조(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 등의 제출시기) | ☐ 제33조(목표 달성의 평가 등) |
| ☐ 제19조(확인결과 보완 등) | ☐ 제34조(이행실적 확인) |
| ☐ 제20조(관리업체의 지정·고시) | ☐ 제35조(개선명령) |
| ☐ 제22조(관리업체 재심사) | ☐ 제40조(명세서의 확인) |
| ☐ 제25조(기준연도 배출량의 재산정) | ☐ 제54조(공동 실태조사 등) |
| ☐ 제27조(목표설정의 기준 및 절차) | ☐ 제58조(점검·평가결과의 반영) |
| ☐ 제28조(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 ☐ 제59조(개선명령 등) |

해 설

○ 부문별 관장기관의 업무범위

- 관리업체의 선정 · 지정 · 관리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결과 통보 및 변경 내용에 대한 고시
- 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 및 산정근거 자료 제출
- 관리업체의 이행실적 및 명세서의 확인
- 관리업체에 대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필요한 조치 요구 등 목표이행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정등급 3(Tier 3) 배출계수에 대한 검토와 관리업체에 대한 사용가능 여부 및 시정사항의 통보



센터의 업무분담 관련 근거 지침 목록

- 제31조(목표의 설정 및 관리의 특례)
- 제33조(목표 달성의 평가 등)
- 제4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 구축)
- 제43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 관리)
- 제49조(자료의 제출방법)
- 제58조(점검·평가결과의 반영)

해 설

○ 센터(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업무범위

- 목표관리 업무 수행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른 관리업체 명세서의 통보
-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의 운영
-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흡수량, 배출 · 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검증 · 관리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 · 연구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 · 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등



관리업체의 업무분담 관련 근거 지침 목록

- ☐ 제20조(관리업체의 지정·고시)
- ☐ 제21조(이의신청서 작성 등)
- ☐ 제25조(기준연도 배출량의 재산정)
- ☐ 제31조(목표의 설정 및 관리 특례)
- ☐ 제32조(이의 신청)
- ☐ 제35조(개선명령)
- ☐ 제36조(명세서의 작성 및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체계)
- ☐ 제37조(명세서의 제출)
- ☐ 제38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 제39조(이행계획 수립의 적용 특례)
- ☐ 제63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 ☐ 제64조(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 ☐ 제65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 ☐ 제66조(명세서의 작성)

해 설

○ 관리업체의 업무범위

-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
- 이행계획 제출
- 명세서의 작성 및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의 제출
- 관장기관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성실한 이행
-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 선정·지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1.3 관련 가이드라인의 목록

○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관련 가이드라인

구 분	명 칭	발행처	발간일
명세서 작성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2.2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2.2
이행계획서 작성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2.2
이행실적 평가	이행실적평가 가이드라인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2.4
명세서 검증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매뉴얼 및 세부검증 가이드라인	국립환경과학원	2021.12

※ 관리업체는 목표관리제 업무 대응과 관련하여 본 지침해설서 및 위의 가이드라인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1.4 용어정의

-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검증기관”이란 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물리·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말한다.

- “관리업체”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지침 제8조제2항의 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구분 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 “기준연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관련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지정한 과거의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를 말한다.
- “매개변수”란 두 개 이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활동자료, 배출계수, 발열량, 산화율, 탄소함량 등을 말한다.
- “심사위원회”라 함은 법 제27조제5항 및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체가 제출한 비공개 신청서를 심사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센터에 두는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 “목표 설정”이란 부문별 관장기관이 이 지침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 등에 따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목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배출계수”란 해당 배출시설의 단위 연료 사용량, 단위 제품 생산량, 단위 원료 사용량, 단위 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계수(係數)를 말한다.
-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서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기·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원료·전기·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 “배출허용량”이란 연간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무게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부문별, 업종별, 관리업체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배출상한치를 말한다.
-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법인”이란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를 말한다.
-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배출집약도”라 한다) 등의 실적·성과를 국내·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 “보고”란 관리업체가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하 “동일법인 등”이라 한다)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 “산정”이란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거나 측정하여 이를 정량화하는 것을 말한다.
- “산정등급(Tier)”이란 활동자료, 배출계수, 산화율, 전환율,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한다.
- “업체”란 동일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 “업체 내 사업장”이란 업체에 포함된 각각의 사업장을 말한다.
- “에너지”란 연료(석유, 가스, 석탄 및 그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써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열 및 전기를 말한다.
-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連繫性)”이란 연료, 열 또는 전기의 공급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즉, 건물 등에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에너지를 변환하지 않고 다른 건물 등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연소배출”이란 연료 또는 물질을 연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 “연속측정방법(Continuous Emissions Monitoring)”이란 일정지점에 고정되어 배출가스 성분을 연속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측정 장비를 통해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예비관리업체”란 관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를 말한다.
-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_6)을 말한다.
-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 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
- “온실가스 간접배출”이란 관리업체가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 “운영통제 범위”란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 등을 의미한다.
- “이산화탄소 상당량”이란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 “이행계획”이란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니터링을 포함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한다.
- “전환율”이란 단위 물질당 변화되는 물질량의 비율을 말한다.
- “조직경계”란 업체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의 기준이 되는 조직의 범위를 말한다.
- “종합적인 점검·평가”란 환경부장관이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전반적인 제도 운영 또는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굴·시정·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주요정보 공개”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업체 명세서의 주요 정보를 전자적 방식 등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 “중앙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라.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동일법인 등이 해당 사업장의 조직 변경, 신규 사업에의 투자, 인사, 회계, 녹색경영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일체로서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온실가스 감축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활동자료”란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말한다.
 - “배출원”이란 온실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는 물리적 단위 또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 “흡수원”이란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물리적 단위 또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1.5 기타 알아두면 좋은 내용

1.5.1 비밀 준수



지침 제5조(비밀 준수)

- ① 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른다.
 1. 총괄기관 또는 부문별 관장기관(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센터에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통계 자료를 취급하는 자
 2. 법 제27조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
 3. 공공기관 정보제공에 의해 온실가스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4. 공시를 위한 정보제공에 의해 온실가스 정보의 열람 및 공개가 허가된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근무하는 자
 5. 관리업체의 명세서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를 포함한다) 및 검증기관
 6.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 자료를 취급하는 자
 7. 위의 각 호에 종사하였던 자
- ③ 이 지침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해 설

- **(제2항)** 제1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체의 관련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 **(제1항, 제3항)**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한 정보(가공한 경우 포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또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5.2 자료제출의 협조



지침 제6조(자료제출 협조)

- ① 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 총괄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부문별 관장기관 및 검증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행계획서,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출토록 할 수 있다.
-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부문의 목표관리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관장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협조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은 관장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④ 관리업체가 관리대상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기 위해 전력 사용량, 열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해 설

○ (제1항~제4항) 자료제출 협조 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자료협조 대상	내 용
제1항	환경부장관 → 부문별 관장기관 및 검증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2항	환경부장관 → 관리업체 및 검증기관	목표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행계획서,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제3항	부문별 관장기관 → 다른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부문의 목표관리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이행을 위해 다른 관장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협조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음
제4항	관리업체 →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공기관	배출원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 열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1.5.3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영 제7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해 설

○ (제1항) 법 제83조제1항에 의거 영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항)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단, 부문별 관장기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시행령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6조2항 관련)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관리업체가 법 제27조제2항①을 위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설: 정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3조제1항제1호	500만원 1,000만원
2	관리업체가 법 제27조제3항②을 위반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설: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3)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4)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3조제1항제2호	500만원 65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3	관리업체가 법 제27조제6항③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설: 개선명령 이행기간의 감축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83조제1항제3호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시행령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관련 조문 내용

위반 행위 관련 조문		조문 내용
1	법 제27조제2항	관리업체 및 예비관리업체는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부의 요청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27조제3항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여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6항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관리업체 지정방법 및 절차 등

- 2.1 관리업체 지정 개요
- 2.2 관리업체 지정 특례
- 2.3 관리업체 지정 방법
- 2.4 권리와 의무 승계

제2장

관리업체 지정방법 및 절차 등



본 장에서는 주무관청에서 관리업체를 지정하는 방법과 관리업체로 지정되는 기준 및 절차를 확인하고 관리업체에서의 지정 확인 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한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기, 방법 등을 확인한다.

2.1 관리업체 지정 개요

2.1.1 관리업체 지정 기준 및 산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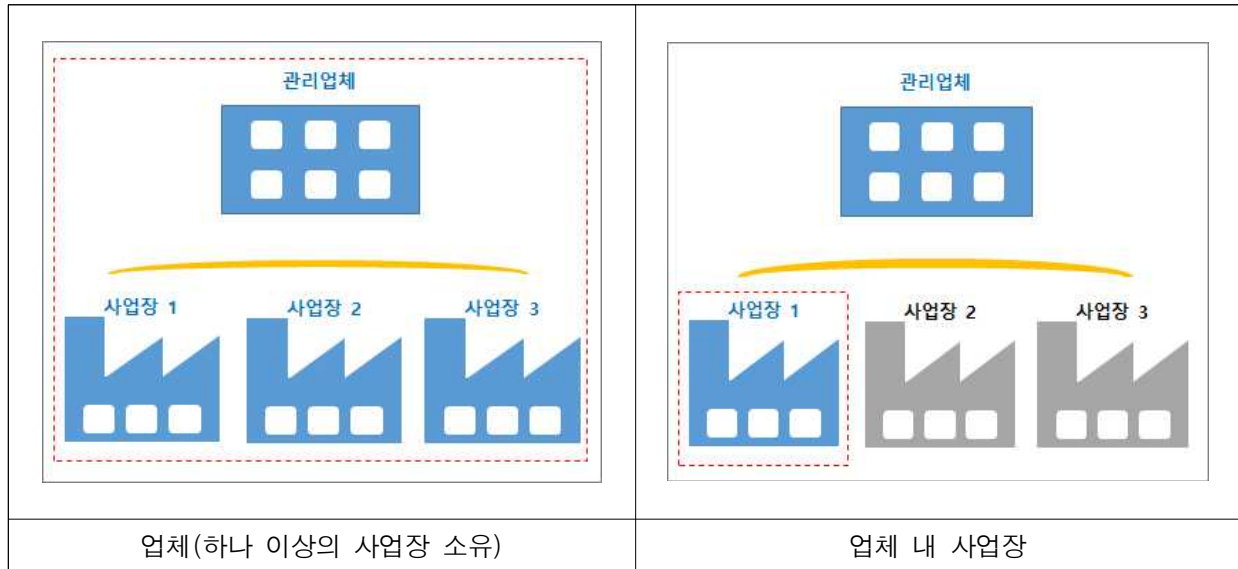
지침 제8조(관리업체의 구성 및 지정기준)

- ① 관리업체(중앙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업체, 업체 내 사업장으로 구분한다.
- ②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신설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eq) 이상인 업체
 2.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_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해설

○ (제1항) 업체,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업체 내 여러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지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업체명”으로 지정고시 함

○ (제2항) 관리업체(업체) 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업체 지정 기준

구 분	온실가스배출량
단 위	kilotonnes CO ₂ -eq
지침 제8조제2항제1호 기준	50 이상
지침 제8조제2항제2호 기준	15 이상

- 관리업체 지정기준 산정 방법

-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을 기준으로 한다.
- 신설 등으로 인해 위 항목에 의한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최초 가동연도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지침 제8조제2항제1호의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내 하나 이상의 사업장이 지침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관리업체로 지정한다.

관리업체(업체) 지정 예시

- A업체는 4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최근 3개년의 온실가스 연평균 총량은 69,000 tCO₂eq이다. 각 사업장마다 세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합 계	사업장 1	사업장 2	사업장 3	사업장 4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	69,000	15,000	20,000	10,000	24,000
지정대상	○				

- ▷ A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50,000 tCO₂eq)을 충족하기 때문에 업체단위 관리업체로 지정된다.

관리업체(사업장) 지정 예시(1)

- B업체는 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최근 3개년의 온실가스 연평균 총량은 45,000 tCO₂eq이다. 각 사업장마다 세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합 계	사업장 1	사업장 2	사업장 3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	45,000	15,000	10,000	20,000
지정대상		○	×	○

- ▷ B업체는 업체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50,000 tCO₂eq)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업장 1과 3의 경우 사업장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15,000 tCO₂eq)을 충족한다.
- ▷ B업체는 사업장 단위 관리업체로 지정기준이 충족하여 관리업체로 지정된다.

참고사항

○ 부칙 제9조(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배출량 등의 예비산정의 특례)

- － 지침 제10조제3항의 적용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5 기준에도 불구하고 산정등급 1(Tier 1)을 적용할 수 있다.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

- 관리업체는 지침 제8조(관리업체의 구성 및 지정기준)에 따라 목표관리제에서 관리업체로서 지정이 되나, 아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기준에 해당이 될 때에는 관리업체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이 변경되며,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는다.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T년도에 지정된 경우, T+1년에 T년도의 명세서 및 이행실적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배출권 할당량 차감(T-2, T-1, T년도 이행실적 반영) 등에 반영됨.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이하 ‘할당지침’) 제3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 할당대상 부문 또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관리업체 및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가 아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할당대상업체로 지정이 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

구분	업체	사업장
단위	kilotonnes CO ₂ -eq	kilotonnes CO ₂ -eq
기준년도 연평균 총량	125 이상	25 이상

※ 사업장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 (참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대상업체 지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할당지침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 가능

2.2 관리업체 지정 특례

2.2.1 건물분야 특례



지침 제12조(건물분야 특례)

- ① 제8조의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이 업체 내 사업장과 지역적으로 달리하더라도 관리업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②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제2호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는 제외한다.
- ③ 건물이 제2항의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접 또는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2. 에너지관리의 연계성(連繫性)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보며, 동일 부지 내 있거나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3.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해당 건물의 소유자로 본다.
- ④ 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건물로 본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제1항에 의해 관리업체에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해 설

○ 관리업체 지정 시 건물분야 특례

-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 지정 시 관리업체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소유지분, 동일한 소유자의 연접한 건물, 에너지 연계성, 건물의 지분형식 등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관리업체 고려 기준에서 제외한다.
- 건물분야 특례는 건축/건설업종 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 대해서도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 업체 단위의 관리업체 지정

- 해당되는 모든 건축물은 관리업체의 조직경계에 포함한다.

예) 업체 소유 및 업체 명의의 임차 건물에 해당하는 본사, 지점, 영업소, 물류창고 등

- **(제2항)** 건물의 소유관계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가, 나, 다 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관리업체 조직경계에서 제외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세부용도 구분	조직경계 포함여부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公館)	☐ 제외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제외 (단, 라목 기숙사는 조직경계 포함)

건축물의 세부용도 구분		조직경계 포함여부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7. 판매시설 9. 의료시설 11. 노유자 시설 13. 운동시설 15. 숙박시설 17. 공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25. 발전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9. 야영장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6. 종교시설 8. 운수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2. 수련시설 14. 업무시설 16. 위락시설 18. 창고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8. 장례시설	■ 포함

○ (제3항제1호) 인접 또는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

- 관리업체로 지정된 법인 A가 소유하는 건물, 시설물이 서로 다른 대지에 인접 · 연접하여 존재하고 있을 경우 법인 A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간주한다.

건물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예시(1)

- 부지 (가)와 부지 (나)는 서로 인접해 있다. 부지 (가)에는 A 관리업체의 상업시설과 사무실동a가 있고 부지 (나)에는 연립주택동과 사무실동b를 가지고 있다.
- ▷ 이 경우 A 관리업체는 부지 (가)의 상업시설과 사무실동a를, 부지 (나)에서는 사무실동b만을 포함하여 조직경계를 설정하고 부지 (나)의 연립주택동은 제외한다.



건물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예시(2)

- B 관리업체는 부지 (가)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공공도로를 끼고 인접한 부지 (나)에도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부지 (가)의 빌딩은 B 관리업체가 이용하고 있고, 부지 (나)의 빌딩은 다른 회사(비관리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 이 경우 부지 (가)의 빌딩과 부지 (나)의 빌딩 모두 B 관리업체 조직경계로 본다.

참고사항

① 인접하는 건물 등

- ‘인접 또는 연접’ 이란 다음 2가지 조건 중 어느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함.
 - 동일 부지 내에 존재할 것
 - 인접한 부지 내에 존재할 것
- 이 때 ‘부지’의 지리적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 등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배치도)에 따라 파악함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건축 등의 허가신청서(건축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 「수도법」 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신청서(수도시설의 평면도 등 첨부)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 「하수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 허가 신청서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② 도로, 수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건물 등

- 도로·수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부지 내에 공통하는 소유자가 존재하고 주된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인접한 복수의 건물을 묶어 하나의 건물로 간주함. 다만, 수로를 사이에 둔 경우 커다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등 건물·사업장 간에 오고가는 길이 쉽지 않고 하나의 건물·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건물·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증에 기재된 부지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적용함

○ (제3항제2호) 에너지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의 경우

- 한 명의 소유주가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을 소유한 경우 하나의 건물 등으로 간주한다.

○ 에너지 연계의 예

- 어느 건물의 수전점(고압 수전시설 등)에서 전기를 받고, 나아가 다른 건물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 지역 열 공급 수입(受入) 시설에서 복수의 건물 등에 증기 등을 반송하고 있는 경우
- 어느 건물 등에 부속하는 연료탱크에서 배관 등으로 접속하여 다른 건물 등에 연료공급을 행하고 있는 경우

○ 에너지관리의 연계성 유무

- 외부에 대한 전기공급점을 파악 : 건물 등의 배전도를 활용 가능
- 외부에 대한 가스공급점을 파악 : 도시가스 사업자가 작성한 배관도를 활용
- 지역 열공급 수입시설의 유무를 파악하고, 존재할 경우 그 수입시설에서 외부에 대한 열 공급의 유무를 파악 : 공기조화설비 계통도를 활용
- 연료저장소 등에 대해 배관 등의 접속에 의하여 건물 외부로 연료공급이 있는지를 파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신고 정보를 활용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의 경우 예시(1)

- A관리업체는 부속병원, 식당, 연구소, 사무동을 가지고 있다. 부속병원에서 수전하여 인근에 있는 연구소, 식당, 사무동에 공급하고 있다.

▷ 이 경우 부속병원, 식당, 사무동, 연구소를 하나의 건물로 간주한다.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의 경우 예시(2)

- B관리업체는 하천을 사이에 두고 (가)빌딩과 (나)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가)빌딩에서 생산된 증기, 온수의 일부를 (나)빌딩으로 공급하여 (나)빌딩에서 사용하고 있다.

▷ 이 경우 증기, 온수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빌딩과 (나)빌딩은 하나의 건물로 간주한다.

용어정의



-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란 전기, 열 또는 연료의 어느 공급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즉, 건물 등에서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에너지를 변환하지 않고 다른 건물 등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함



○ (제3항제3호)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있을 경우

-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해당 건물의 소유자로 본다.

지분형식에 따른 조직경계 결정방법 예시

- A관리업체와 B관리업체는 10층 건물인 (가)빌딩에 대한 지분을 6:4로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C관리업체는 1~3층, 비관리업체인 D업체는 4~10층을 이용하고 있다.

건물(가) : A관리업체(지분소유 : 60%), B관리업체(지분소유 : 40%)

지상 4~10층 : D업체(비관리업체)

지상 1~3층 : C관리업체

- ▷ A관리업체가 (가)빌딩에 대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빌딩은 A관리업체의 조직경계에 포함된다. 다만, C관리업체가 이용하는 1~3층은 A관리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며 C관리업체의 조직경계에 포함된다.

○ (제4항) 한 건물에 다수 임차인이 입점해 있을 경우

- 해당 건물의 배출량 보고 및 온실가스 관리 주체는 건물의 소유자가 된다.
- A 관리업체의 건물에 타 관리업체(B, C 등)가 임차할 경우에는 관리업체 B, C가 입점한 부분의 관리주체는 각 관리업체(B, C)이며, 관리업체 A의 관리범위는 관리업체 B, C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된다.

한 건물에 다수 임차인이 입점해 있을 경우 예시

- 건물(가)는 A관리업체의 소유이나 건물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임차해 주고 있다.

건물(가) : A관리업체 소유

지상 6~8층 : 소규모 사업자(임차)

지상 2~5층 : C관리업체(임차)

지상 1층 : 소규모 사업자(임차)

지하 1~2층 : B관리업체(임차)

- ▷ A관리업체의 조직경계는 B, C 관리업체의 지하 1~2층, 지상 2~5층을 제외한 나머지를 A관리업체의 조직경계로 한다.

- 타법인이 조직경계 내에 상주하는 경우의 조직경계 결정방법은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가이드라인」의 “조직경계 결정방법”을 참조한다.

2.2.2 교통분야 특례



지침 제13조(교통분야 특례)

- ① 동일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 ②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 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 ③ 제10조의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할 때에는 항공 및 선박의 국제 항공과 국제 해운부문은 제외한다.
- ④ 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교통 부문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교통분야에 속하는 관리업체를 지정할 때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복수의 교통분야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로 본다.
- ⑥ 동일 업체 하에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이 관리되는 교통분야 사업장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개별 교통분야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하여 관리업체로 지정한다.

해 설

○ 관리업체 지정 시 교통분야 특례

-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 지정 시 관리업체가 소유한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배/통제 권한의 유무와 운송 사업하는 법인의 허가받은 차량 유무, 화물운송량 등 교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과 선박의 경우 국제항공과 국제 해운부문은 제외한다.

○ (제1항) 임차 차량의 경우

- 관리업체 A가 해당 법인의 전용차량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B로부터 승용차 1대를 임차하여 그 차량의 운행일정, 운행노선, 운행경비 등 차량 운행의 전반에 관하여 관리한 경우에 그 차량은 관리업체 A의 소유로 간주하여 관리업체 A의 조직경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2항) 개인차량을 지입 하는 경우

- 관리업체 A가 개인 B의 소유인 화물자동차를 지입차량의 형식으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는 관리업체 A의 조직경계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 타 법인에 운송을 위탁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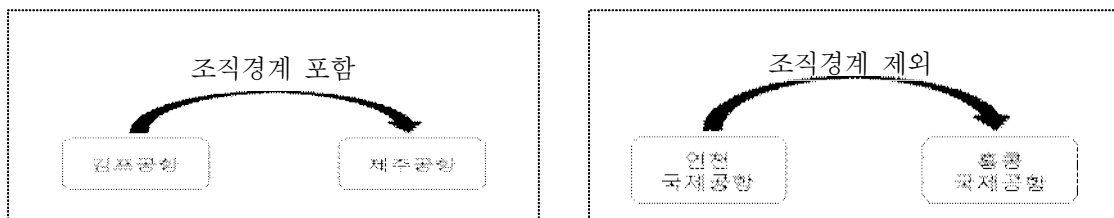
- 물류업체가 아닌 관리업체 A가 타 법인인 물류업체 B에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 관리업체 A의 지배적 영향력이 없는 운송 위탁 부분은 관리업체 A의 조직경계에서 제외한다.

○ (제3항) 항공 및 선박의 경우

- 항공은 국내 운항인 경우, 선박은 연안해운인 경우에만 조직경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 ※ 국내 운항이란 항공의 이착륙 지점 또는 선박의 입출항 지점이 모두 국내인 경우를 말함
 - ※ 연안 해운이란 국내항과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내항선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말함
-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항공 및 선박의 조직경계를 결정한다.

교통분야 중 항공의 경우 조직경계 설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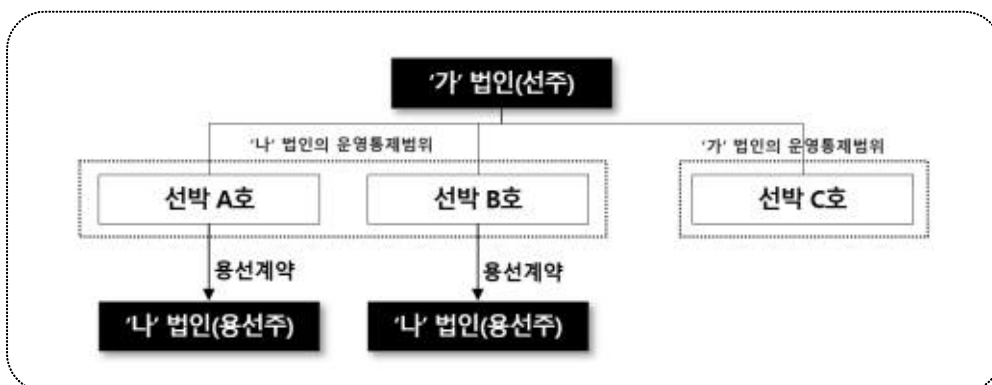
- A항공사의 (가) 항공기가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항공에 도착하였고, B 항공사의 (나)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 ▷ A 항공사의 경우 이착륙 지점을 기준으로 국내운항으로 분류되며 조직경계에 포함되나, B 항공사의 경우 이착륙 지점을 기준으로 국제운항으로 분류되며 조직경계에서 제외한다.

교통분야 중 해운의 경우 조직경계 설정 예시

- 해운업체인 “가” 법인은 선박 A호, B호, C호의 선주이다. “가” 법인은 용선 계약을 통해 “나” 법인에 선박 A호와 B호를 임대하고 있다.



- ▷ 계약 조건에 따라 선박 A호와 B호의 운항 및 연료유 구매 권한을 “나” 법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선박 A호와 B호는 계약기간동안 “나” 법인의 운영통제 범위에 포함된다. 선박 C호는 “가” 법인이 소유와 운항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가” 법인의 운영통제 범위에 포함된다.

참고 사항

- 용선 계약 방식에 따라 업무활동 경계, 시설 및 시설관리의 주체, 해당 활동에 의한 경제적 이익 등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통제 범위를 설정한다.

구분	개념 및 특성	비용 부담	보고 주체
항해용선	출발항에서부터 양륙항까지 편도항해를 기준단위로 하여 선주가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는 계약	- 선주가 모든 에너지(연료) 비용 부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수취 - 용선주는 운송서비스를 이용하고 운임을 지급	선주
정기용선 (기간용선)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선주가 선박을 용선주에게 빌려주는 계약	- 선주는 선원인건비, 유지비, 보험료, 상각비 등의 고정비 부담 - 용선주는 용선료와 연료비, 하역비, 항비, 도선료 등의 운항비용 부담	용선주
나용선	일정 기간동안 선박 자체만을 빌려주고 운송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계약	- 선주는 고정비 중의 상각비만 부담 - 용선주는 상각비 이외의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 부담	용선주

○ (제5항)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소가 떨어져 있는 경우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여러 개의 교통분야 사업소가 떨어져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배출량을 모두 합산하여 관리업체 지정 여부를 확인한다. 관리업체의 지정은 관리업체의 대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의 사업장은 관리업체(대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6항) 동일 업체 하에 사업소별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소이더라도 동일 업체에서 차량 등을 운용·관리 할 경우, 각 사업소를 동일 업체의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용어정의

- ‘실질적인 지배·통제’란 차량의 운행일정, 운행노선, 운행횟수, 운행경비 등 차량 운행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사실상 관리·감독하는 것을 의미
- ‘차량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허가 받은 차량’이란 ‘이른바 지입계약에 따른 지입차량’ 등을 의미
- ‘지입계약’이란 차량소유자와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 차량소유자(이른바 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른바 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
- ‘지입차량’이란 차량소유자(이른바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른바 지입회사)에게 차량명의를 신탁하고,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킨 차량

※ 참조 :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등



2.2.3 건설업 분야 특례



지침 제13조의2(건설업 분야 특례)

동일 업체 하에 관리되는 모든 건설현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개별 건설현장을 하나의 배출시설로 간주한다.

해설

○ 관리업체 지정 시 건설업 분야 특례

- 동일한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여러 개의 건설현장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하나의 배출시설로 간주하여 각 건설현장의 배출량을 모두 합산하여 관리업체로 지정한다.

건설업 분야 특례 예시

- A업체는 4개의 건설현장을 가지고 있고 최근 3개년의 온실가스 연평균 총량은 35,000 tCO₂eq이다. 각 건설현장마다 세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합 계	건설현장 1	건설현장 2	건설현장 3	건설현장 4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	35,000	15,000	10,000	5,000	5,000

- ▷ 4개의 건설현장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가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장 기준(15,000 tCO₂eq)을 충족하기 때문에 사업장단위 관리업체로 지정되며, 건설현장을 배출시설로 간주하여 모든 건설현장을 보고하여야 한다.

2.2.4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지침 제14조(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만 이 지침을 적용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의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4.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제41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6. 「수도법」 제17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도
 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시설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시설
- ② 이 지침에 의해 관리업체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행령 제17조의 이행실적을 시행령 제21조의 관리업체 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의 명세서 등을 받는 즉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 설

○ 관리업체 지정 시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 (제1항)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수도 등을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2.2.5 기타 조직경계 관련 사항

□ 건설업종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 계약 관계가 단독도급인 건설현장의 경우

- 건설현장 전체가 해당 건설사의 조직경계에 포함된다.

○ 계약 관계가 공동도급인 건설현장의 경우

- 세부적으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공동도급의 조직경계 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공동이행방식 : 건설현장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 주관사에 있으므로 보고주체를 주관사가 하고 건설현장의 전체 배출량을 주관사의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참여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부분 역시 지배적 영향력이 주관사에 있으므로 건설현장의 전체 배출량을 주관사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 분담이행방식 : 공사와 관련된 계약이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 건설사별로 분담되기 때문에 명확한 조직경계 설정이 가능하다.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하는 모든 건설사가 자사에게 분담된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관사와 참여사의 구분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와 비관리업체 구분에 상관없이 해당 건설사에 할당된 건설현장을 조직경계에 포함하도록 한다.

수주 형태		조직경계 설정 방법
단독도급		건설현장 전체가 해당 건설사의 조직경계에 포함됨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주관사가 전체 건설현장을 조직경계에 포함
	분담이행방식	주관사, 참여사에 해당하는 자사의 공사부분을 각 업체의 조직경계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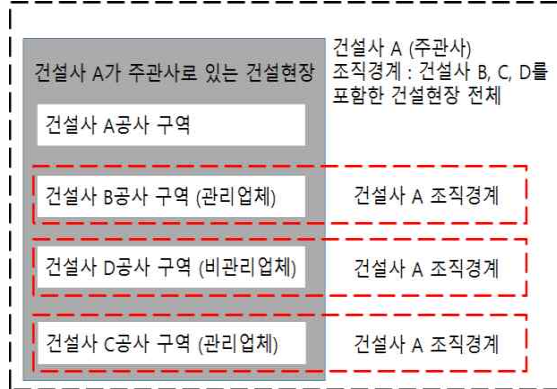
● 용어정의



-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
-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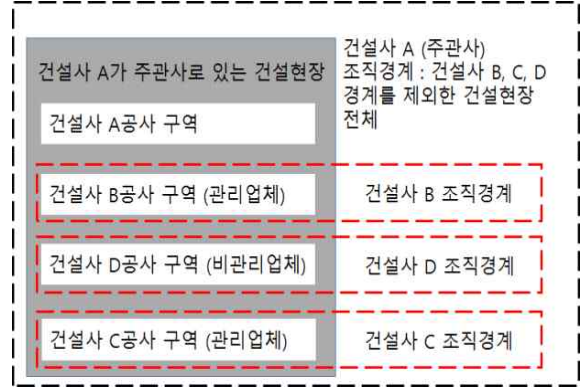
공동도급 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조직경계 설정 예시

- A건설사가 주관사로 참여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건설현장에서 관리업체인 B, C건설사와 비관리업체인 D건설사가 참여사로 참여하였다.



- ▷ 이 경우 관리업체인 B, C건설사가 참여하여도 주관사인 A건설사의 조직경계로 간주한다.

- A 건설사가 주관사로 참여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건설현장에서 관리업체인 B, C 건설사와 비관리업체인 D 건설사가 참여사로 참여하였다.



- ▷ 이 경우 A 건설사가 주관사로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구역을 담당하는 건설사의 조직경계로 간주한다.

□ 사업장내 건설 및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직경계 결정방법

○ 에너지비용을 공사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

- 조직경계 수립의 주체는 공사업체이며, 발주업체의 조직경계에서 공사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을 제외한다.

○ 에너지비용을 발주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 조직경계 수립의 주체는 발주업체이며, 발주업체의 조직경계에 포함한다.

□ 1개 법인의 여러 사업장이 인근에 다수 위치하고 있는 경우 조직경계 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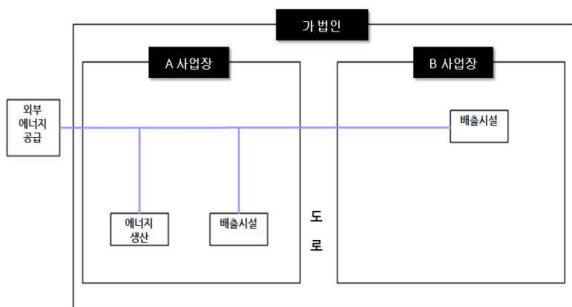
- 에너지 연계 사용 및 운영 통제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직경계의 통합 또는 개별수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온실가스 배출량의 누락 및 중복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설명을 모니터링계획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업체 인근 다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 조직경계 결정 방법

에너지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관리업체 ‘가’ 법인의 다수 사업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A 사업장과 B 사업장은 상호 일정한 지리적 경계로 구분되어 있고 지번도 달리 적용되어 있으나 사업장 간에 에너지는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을 포함하여 생산, 서비스 제공,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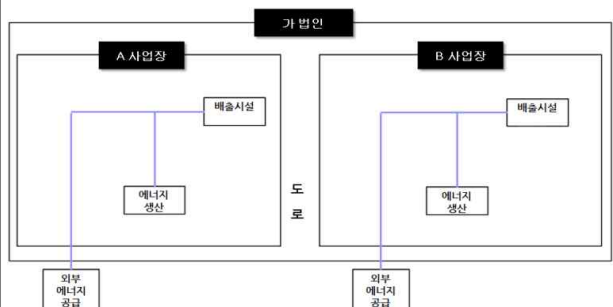


- ▷ 에너지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운영관리가 통합하여 수행되고 있다면 A 사업장 및 B 사업장을 하나의 조직경계로 통합할 수 있다.

단, 온실가스 배출량의 누락 및 중복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관리업체 ‘가’ 법인의 다수 사업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A 사업장과 B 사업장은 물리적으로는 상호 일정한 지리적 경계로 구분되어 있고 지번도 달리 적용되어 있고 A 사업장과 B 사업장간에 에너지는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다. 또한,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을 포함하여 생산, 서비스 제공,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 에너지 연계성이 구분되어 있으나 운영관리가 통합되어 수행되고 있다면, 지리적 여건에 따라 A 사업장과 B 사업장을 각각 개별 사업장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A 사업장과 B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단, 온실가스 배출량의 누락 및 중복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폐기물 분야 종료매립장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1. 사후관리기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 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 검사기관(이하 “매립시설 검사기관” 이라한다)이 침출수의 성질과 상태, 양, 지하수·해수·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축대벽·둑 등의 안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의 종료를 결정·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해 설

○ 종료매립장의 조직경계

- 종료매립장의 경우 다른 배출시설과 동일하게 매립장의 전력사용이나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의 온실가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 종료매립장의 조직경계 제외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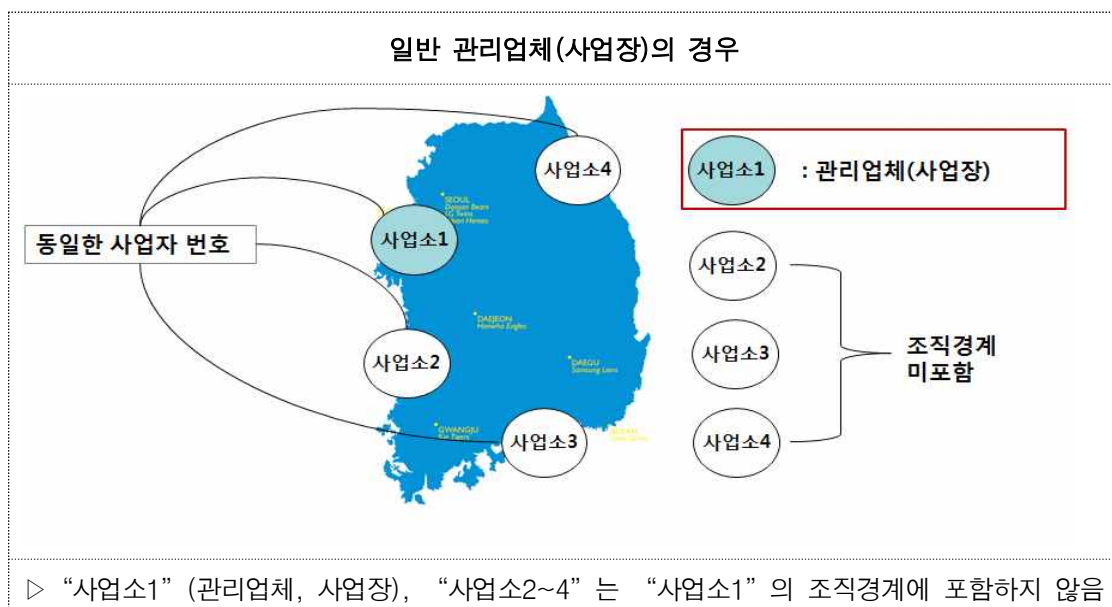
- 종료매립장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종료를 결정통보한 날까지 조직경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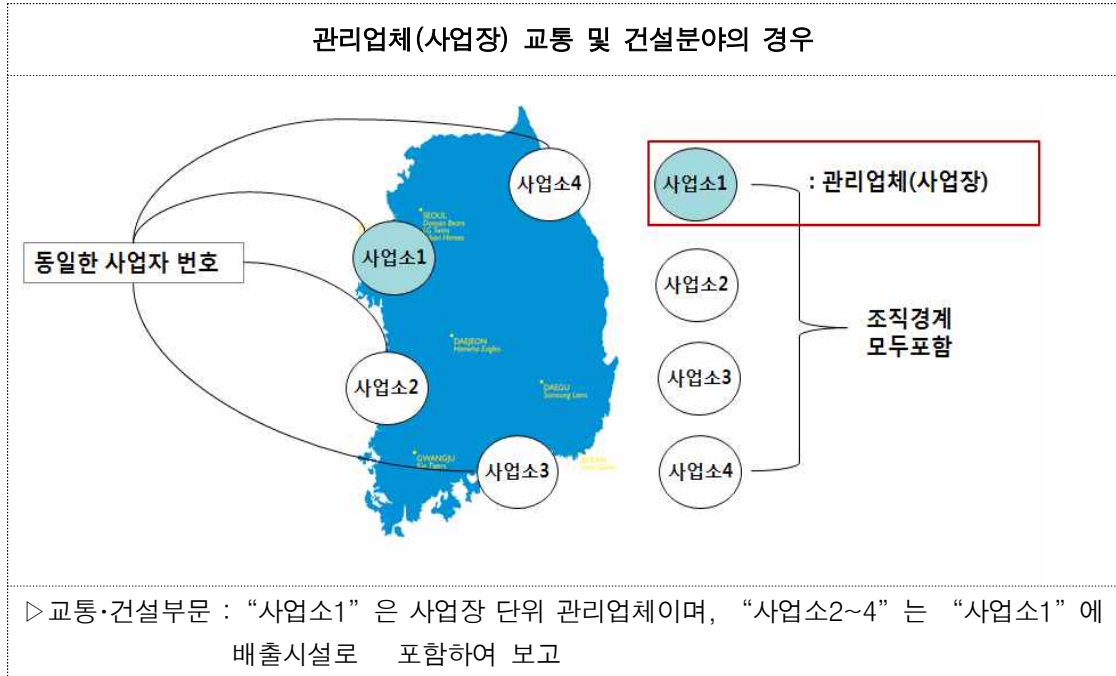
□ 1개 사업자번호의 여러 사업소가 떨어져 있는 경우 조직경계 결정방법

○ 목표관리제

- 업체 기준 지정인 경우 : 업체 내 모든 사업장을 조직경계에 포함
- 사업장 기준 지정인 경우 : 해당 사업장만 조직경계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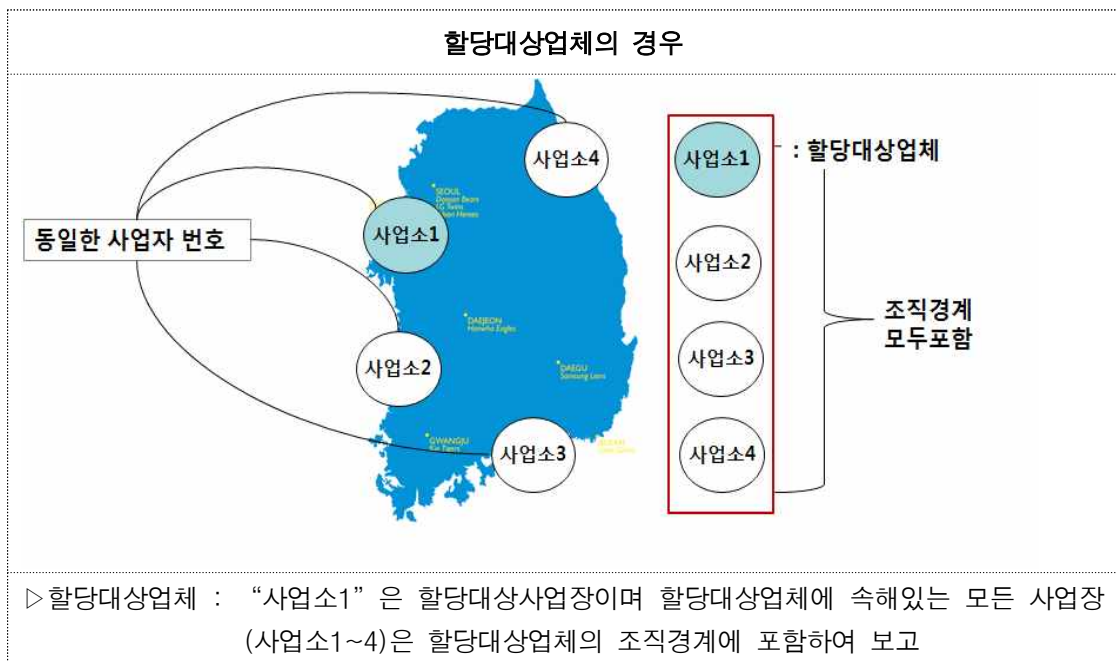
※ 교통 및 건설분야의 경우, 개별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업자의 배출시설로 포함





○ [참고] 배출권거래제(할당대상업체)

- 할당대상업체에 속해있는 모든 사업장은 조직경계에 포함한다.



2.3 관리업체 지정 방법

2.3.1 관리업체 지정 절차 및 시기



지침 제17조(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 등의 제출시기) 등

□ 지침 제17조(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 등의 제출시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6조의 목록 및 산정근거 자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전자적 방식 등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침 제18조(적절성 등 확인)

①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관리업체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② (생략)

□ 지침 제19조(확인결과 보완 등)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8조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확인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업체의 목록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②~③ (생략)

□ 지침 제20조(관리업체의 지정·고시)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소관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⑤ (생략)

□ 지침 제21조(이의신청서 작성 등)

①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지정·고시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지침 제22조(관리업체 재심사)

① ~⑥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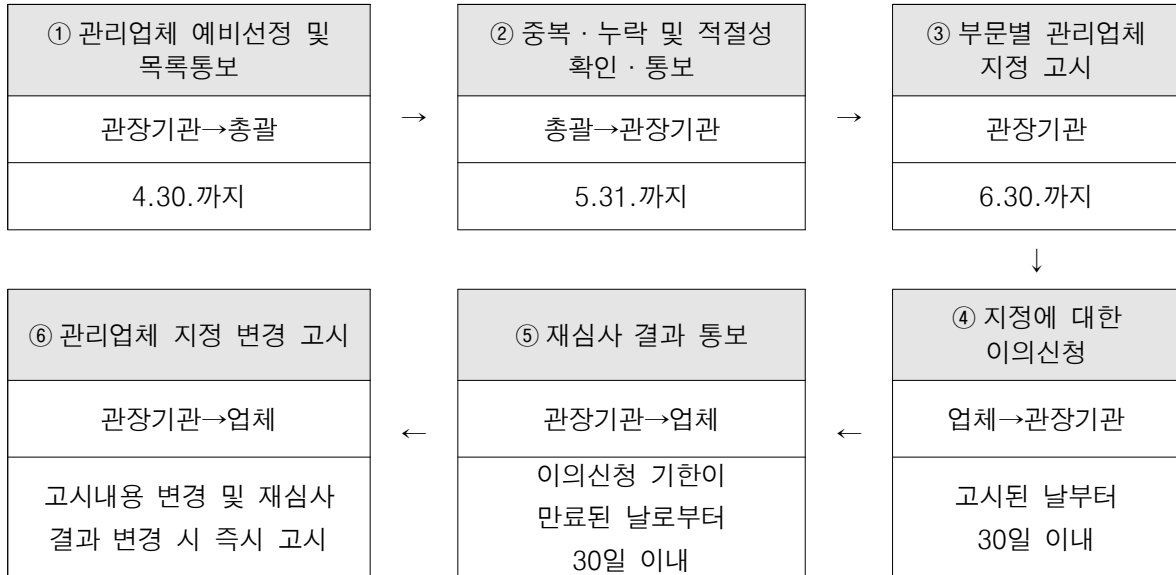
⑦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이의신청 업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 당초 고시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즉시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해 설

○ 관리업체 지정 절차



- ① **관리업체 예비선정 및 목록통보** : 매년 4월 30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은 총괄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업체 예비선정 목록 및 산정근거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복·누락 및 적절성 확인·통보** : 총괄기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리업체 예비선정 목록을 기준으로 중복·누락 및 적절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확인·통보하여야 한다.
- ③ **부문별 관리업체 지정 고시** : 부문별 관장기관은 총괄기관의 확인결과를 반영하여 6월 30일까지 소관 관리업체에 대해 지정 고시하며 신규 지정 관리업체 및 사업장에 개별통보를 하여야 한다.
-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는 7월 31일까지이며, 지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 결과 할당대상 지정 취소 업체 중 관리업체 지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음
- ④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 지정을 받은 관리업체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 등을 통해 부문별 관장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재심사 결과 통보** :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관장기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관리업체 지정 변경 고시** : 재심사 결과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관장기관은 업체에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즉시 변경 고시하여야 한다.

2.3.2 관리업체 예비선정 및 목록 통보



지침 제10조(관리업체 지정대상 선정 등)

- ① 예비관리업체와 기존 관리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출되는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자료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4.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예비관리업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업체 지정 활동자료 조사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법인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은 제2편제2장의 작성 방법 등의 기준에 따른다.

해 설

○ (제1항, 제2항)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활용자료

- (기존 관리업체)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 및 명세서
- (예비 관리업체) 명세서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 다음의 자료를 활용한다.

부문	활용자료	사이트
폐기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	http://airemiss.nier.go.kr
산업·발전 (공통)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 / 에너지사용량신고	http://netis.kemco.or.kr http://netis.kemco.or.kr/EngyUseRpt
교통	운수행정시스템(ITAS) /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 자동차검사통합전산시스템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	—
건물	건물에너지정보공개시스템	http://open.greentogether.go.kr/ifm/cmm/selectMain.do
건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s://www.kiscon.net
해운	선박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em.go.kr



- (제3항, 제4항)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업체 선정을 할 수 없을 경우(위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별지 제1호 서식 관리업체 지정 활동자료 조사표를 활용하거나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법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법인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업체 지정 활동자료 조사표(별지 제1호 서식) 관련

구분		세부내용
공통 서식	1. 총괄표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활동자료 조사표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 법인 일반현황과 사업장명, 소재지 등 사업장 목록을 조사
	2. 사업장 일반정보	각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규모, 작성자 정보 등 사업장 일반정보를 조사
	3. 에너지 사용량 및 첨가제 사용량	지정연도별 경유, 유연탄, 코크스, 도시가스, 기타연료 등 에너지 사용량 및 첨가제 사용량을 조사
개별 서식	4. 공정배출	
	1) 광물산업	시멘트 - 시멘트업종의 클링커 생산량을 조사 석회 - 석회업종의 고칼슘석회, 경소백운석(고토석회), 수경성석회의 생산량을 조사 유리 - Float, Container 등 제품 유형별 생산량과 재활용유리 사용비율을 조사
	2) 화학산업	암모니아 - 암모니아 생산량과 공정형식을 조사 질산 - 질산 생산량과 공정형식을 조사 아디프산 - 아디프산의 생산량을 조사 카바이드 - 카바이드 생산량을 조사 카프로락탐 - 카프로락탐 생산량을 조사 이산화티타늄 - 합성루틸 생산량과 루틸형 TiO_2 생산량을 조사

구분	세부내용
	소다회 - 소다회 생산량과 트로나 투입량을 조사 에틸렌 - 에틸렌 생산량을 조사 염화에틸렌(EDC)/염화비닐모노머(VCM) - 염화에틸렌, 염화비닐모노머의 생산량과 공정형식을 조사 에틸렌옥사이드 - 에틸렌옥사이드 생산량과 공정형식을 조사 아크릴로니트릴 - 아크릴로니트릴 생산량과 공정형식을 조사 카본블랙 - 카본블랙 생산량과 공정형식을 조사
3) 금속산업	철강 - 철강업종의 소결물, 조강, 펠렛 등 제품 생산량과, 코크스의 생산량 /소비량, 코크스로의 가스생산량 /사용량을 조사 합금철 - 합금철업종의 합금철, 망간철, 실리콘 등의 생산량과 석탄, 코크스 등 환원제의 사용량을 조사 알루미늄 - 알루미늄 생산량과 생산공정, 생산기술을 조사 마그네슘 - 마그네슘 생산량과 돌로마이트, 마그네사이트의 사용량을 조사 납 - 직접제련한 납의 생산량과, 제련용 용광로에서의 생산량, 2차 원료물질에 의한 생산량을 조사 아연 - 아연 생산량과 생산공정을 조사
4) 전자산업	불소화합물 생산 - HCFC_s-22와 기타 불소화합물의 생산량을 조사 전자산업 - 반도체, TFT-FPD, PV-cell의 생산량을 조사
5. 간접배출	- 구매 전력과 구매 열(스팀)의 양을 조사



지침 제16조(지정대상 관리업체의 목록 작성)

-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관리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목록의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근거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해설

○ 지정대상 관리업체의 목록

- (제1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영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목록을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관리업체 지정대상 목록(제16조제1항 관련)

별지서식											세부내용																																																																																								
[별지 제2호 서식] 관리업체 지정대상 목록(제16조제1항 관련) <table><tr><th>일련 번호</th><th>구분</th><th>업체명</th><th>대표자</th><th>소재지</th><th>업종</th><th>온실가스 배출량 (tCO₂e-yr)</th><th>업체 내 사업장 수</th><th>기준업체 여부</th><th>관리업체 일련번호</th><th>비고</th></tr><tr><td>1</td><td>제1호</td><td></td><td></td><td>업체 본사주소</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2</td><td>제2호</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3</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일련 번호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yr)	업체 내 사업장 수	기준업체 여부	관리업체 일련번호	비고	1	제1호			업체 본사주소							2	제2호			...							3											...																																												- 구분은 제1호와 제2호로 나누어 작성 * 제1호: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0ktCO₂eq 이상인 업체 * 제2호: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5k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법인의 업종 기재하며, 다수의 사업장일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업종을 기재 - 관리업체 일련번호는 신규일 경우 ‘신규’ 로 기재
일련 번호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yr)	업체 내 사업장 수	기준업체 여부	관리업체 일련번호	비고																																																																																									
1	제1호			업체 본사주소																																																																																															
2	제2호			...																																																																																															
3																																																																																																			
...																																																																																																			

- (제2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지정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근거를 아래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관리업체 지정 산정근거

[illegible]



지침 제17조(지정대상 관리업체 목록 등의 제출시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6조의 목록 및 산정근거 자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전자적 방식 등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 관리업체 목록 제출시기

-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총괄기관에게 전자적 방식 등으로 관리업체 예비선정 목록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침 제18조(적절성 등 확인)

- ①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관리업체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지정대상 관리업체의 중복·누락 또는 규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 (제1항, 제2항)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관리업체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는 센터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매년 5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3.3 관리업체 지정 고시



지침 제20조(관리업체의 지정·고시)

-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소관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관리업체를 고시할 때에는 관리업체명,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적용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관 관리업체를 고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리업체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고시한 관리업체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 ⑤ 관리업체를 고시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변경하여 고시하고 이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업체로 지정 고시한 관리업체의 업종, 상호명,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2. 관리업체 적용기준이 제8조제2항제1호에서 제2호로 변경되거나 제2호에서 제1호로 변경된 경우
 3. 제8조에 따라 관리업체 지정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
 4. 관리업체 지정 고시 이후 분할·합병 또는 영업·자산 양수도로 인하여 관리업체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6. 기타 당초 관리업체 지정 고시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 설

- (제1항~제3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부문의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관리업체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당초 관리업체 지정 고시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변경 고시하고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3.4 관리업체 지정 확인방법

확인 경로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	➡	검색하기	➡	‘관리업체’ 검색

대한민국 전자관보

[로그인](#) | [회원가입](#) | [메뉴열기](#)

관보보기
검색하기
발행예고보기
마이페이지
관보소개
☰

🏠 관보보기 > 호수별 > 기본검색
[-] 글자크기
[+]
🔗 url 복사
🖨 인쇄

기본 검색

입력한 키워드에 대해 메타 및 본문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목

관리업체

🔍
검색

↺
초기화

목차

고시

총 210건
더보기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43호(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중 정정)
- 환경부고시제2022-159호(2022년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48호(2022년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고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16호(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17호(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2.3.5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지침 제21조(이의신청서 작성 등)

- ①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지정·고시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등 사업현황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4.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 또는 측정 방법
 5. 그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③ 관리업체가 제2항 각 호를 작성할 때에는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 설

- (제1항)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서식		세부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처리기간 30일</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청자</td> <td>① 업체명</td> <td>② 법인등록번호</td> </tr> <tr> <td>③ 대표자</td> <td>④ 전 화 번 호</td> </tr> <tr> <td colspan="2">⑤ 주 소</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이의신청</td> <td colspan="2">⑥ 사업장 현황</td> </tr> <tr> <td colspan="2">⑦ 관리업체 지정내역</td> </tr> <tr> <td colspan="2">⑧ 이의신청 사유</td> </tr> <tr> <td colspan="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업체 지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td> </tr> <tr> <td colspan="3"> ※ 구비서류 1. 소명자료 </td> </tr> </table>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 업체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이의신청	⑥ 사업장 현황		⑦ 관리업체 지정내역		⑧ 이의신청 사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업체 지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소명자료			－ 지정된 관리업체의 업체명, 주소, 법인 등록번호 등 업체현황 정보 － 관리업체 지정내역과,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정보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 업체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이의신청	⑥ 사업장 현황																								
	⑦ 관리업체 지정내역																								
	⑧ 이의신청 사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업체 지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소명자료																									



○ (제2항) 관리업체가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사유	제출 서류 예시
합병 및 인수	- 법인등기부등본, 합병 및 인수 계약서 등
폐업	- 폐업 증명서, 사업장 폐쇄 확인서 등
업종변경	- 사업자 등록증(업종 명시) -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공정 소명자료(명세서 등) 등
상호명, 소재지 변경	- 변경 전후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지정기준 (업체/사업장) 변경	- 지정기준이 변경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정 소명자료(일부 사업장 폐쇄 확인서 및 일부 사업장 인수 확인서 등) 등 -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공정 소명자료(사업장별 에너지원 사용 고지서 및 명세서 등) 등



지침 제22조(관리업체 재심사)

- ① 관장기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 및 검토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관리업체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1조의 이의신청 내용 검토 등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 중 이의신청 관리업체의 검증을 수행한 검증기관 소속 검증심사원 등은 관계 전문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의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재확인하고 즉시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 ⑦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이의신청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과 당초 고시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즉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 이의신청 기한이 초과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
-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공정관련 소명자료 이외에 회사 내부 자료(수기 데이터 등) 및 가공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객관적인 재심사가 불가하므로 이의신청 사유에 적합한 공정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해 설
○ 관리업체 재심사

- 관리업체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절차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서 검토결과 보고서

별지서식		세부내용																																																														
[별지 제5호 서식] <table border="1"> <caption>이의신청서 검토결과 보고서</caption> <tr> <td>① 부문별 관장기관</td> <td colspan="3"></td> <td>② 검토자</td> <td>소속</td> <td>직위 (직급)</td> <td>성명</td> <td>(인)</td> </tr> <tr> <td></td> <td colspan="3"></td> <td>③ 확인자</td> <td>소속</td> <td>직위 (직급)</td> <td>성명</td> <td>(인)</td> </tr> <tr> <td rowspan="2">이의신청</td> <td colspan="2">④ 업체명</td> <td colspan="2">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2">⑤ 이의신청 내역</td> <td colspan="6"></td> </tr> <tr> <td rowspan="2">검토결과</td> <td colspan="2">⑥ 검토 결과</td> <td colspan="6"></td> </tr> <tr> <td colspan="2">⑦ 결정 사유</td> <td colspan="6"></td> </tr> <tr> <td colspan="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 검토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 장 기 관 장 (직인) 환경부장관 귀하 ※ 붙임 : 세부 검토내역 </td> </tr> </table>		① 부문별 관장기관				② 검토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③ 확인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이의신청	④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이의신청 내역								검토결과	⑥ 검토 결과								⑦ 결정 사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 검토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 장 기 관 장 (직인) 환경부장관 귀하 ※ 붙임 : 세부 검토내역									–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검토기관, 검토자 등의 기본정보 – 이의신청한 업체명과 내역, 사업자등록번호의 정보 – 검토결과와 결정 사유에 대한 정보	
① 부문별 관장기관				② 검토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③ 확인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이의신청	④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 이의신청 내역																																																															
검토결과	⑥ 검토 결과																																																															
	⑦ 결정 사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 검토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 장 기 관 장 (직인) 환경부장관 귀하 ※ 붙임 : 세부 검토내역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

별지서식		세부내용																						
[별지 제6호 서식] <table border="1"> <caption>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caption> <tr> <td rowspan="3">이의신청</td> <td>① 업체명</td> <td colspan="2">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td> </tr> <tr> <td>③ 제출일자</td> <td colspan="2">④ 제출인</td> </tr> <tr> <td colspan="3">⑤ 이의신청 내역</td> </tr> <tr> <td rowspan="2">검토결과</td> <td colspan="3">⑥ 검토 결과</td> </tr> <tr> <td colspan="3">⑦ 결정 사유</td> </tr> <tr> <td colspan="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귀사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관 장 기 관 장 (직인) 귀하 </td> </tr> </table>		이의신청	① 업체명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제출일자	④ 제출인		⑤ 이의신청 내역			검토결과	⑥ 검토 결과			⑦ 결정 사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귀사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관 장 기 관 장 (직인) 귀하				– 이의신청을 한 업체명, 제출일자, 내역 등 업체의 기본 정보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결정 사유에 대한 정보	
이의신청	① 업체명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제출일자		④ 제출인																					
	⑤ 이의신청 내역																							
검토결과	⑥ 검토 결과																							
	⑦ 결정 사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귀사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관 장 기 관 장 (직인) 귀하																								

○ 이의신청 결과 확인

- 이의신청 결과는 변경고시 당일 개별 서면 통보하고 있으나 지정취소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도 지정 변경된 고시 확인이 가능하다.

- 전자관보

확인 경로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	➡	검색하기	➡ '관리업체' 검색

대한민국 전자관보

[로그인](#) | [회원가입](#) | [매뉴얼](#)

관보보기
검색하기
발행예고보기
마이페이지
관보소개

🏠 관보보기 > 호수별 > 기본검색

[-] 글자크기
[+]
📄 url복사
🖨 인쇄

기본 검색

입력한 키워드에 대해 메타 및 본문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목 ▼

관리업체

🔍 검색

↺ 초기화

목차

고시

총 210건

더보기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43호(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중 지정)
- 환경부고시제2022-159호(2022년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48호(2022년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고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16호(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17호(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2.4 권리와 의무 승계

2.4.1 조직경계 변경 시 유의사항



지침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 ① 관리업체가 합병·분할하거나 업체 내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임대하는 경우에는 합병·분할 이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 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속하게 되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속하게 되는 해당 업체에게 법과 시행령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양수·임차 등으로 해당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는 업체가 관리업체가 아닌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이후 해당업체의 최근 3년간(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온실가스 배출량(이전받은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총량이 5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이 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관리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관리업체가 존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해야 하며, 권리와 의무 승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는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업체 및 승계 받은 업체 모두 제출해야 한다.

해설

○ 관리업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 승계 등

- (제1항) 관리업체가 업체를 양도, 합병, 임대, 분할, 흡수한 경우 존속하는 업체나 설립되는 업체 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속하게 되는 업체에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승계하는 업체가 관리업체가 아닐 경우 승계받은 업체의 최근 3년간(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개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미만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항)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시 그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문별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승계 후 승계한 업체가 존립하지 않는 경우 승계받은 업체가 보고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승계한 업체와 승계받은 업체 모두 제출해야 한다.

● 용어정의

- ‘합병’이란 상법상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는 것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회사법 상의 법률사실을 의미한다.
- ‘분할’이란 하나의 회사 영업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면서 그 영업에 관해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신설회사에 승계시키는 것 또는 하나의 회사 영업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면서 그 영업에 관해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승계 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양수·양도’란 회사의 자산을 매매하거나营业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양도관리업체의 권리·의무는 양수 관리업체에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 ‘영업’이란 일정한 영리목적에 제공된 재산의 총체 또는 총괄적인 재산적 조직체로, 각개의 권리 · 의무의 단순한 집합체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그와 같은 이유로 일체적인 영업의 양도·임대차 등이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 ‘인수’란 회사(또는 개인)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2.4.2 권리와 의무의 승계

○ 관리업체가 사업장이나 업체를 양도, 합병, 분할한 경우 관리업체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합 병

- 상법상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는 것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회사법 상의 법률사실을 의미한다.
- 흡수합병 : A회사가 그대로 존속하고 B회사가 소멸하면서 B회사의 자산·부채를 모두 A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
- 신설합병 : A회사와 B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인 C가 A회사와 B회사의 자산·부채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
- 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유형별 권리·의무 승계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형	권리 · 의무 승계
흡수합병	A(업체, 사업장)+B(업체, 사업장) →A(업체, 사업장)	B(업체, 사업장)의 권리 · 의무를 A(업체, 사업장)이 승계
	A(업체, 사업장)+B(업체, 사업장) →B(업체, 사업장)	A(업체, 사업장)의 권리 · 의무를 B(업체, 사업장)이 승계
	A(업체, 사업장)+B(비관리) →A(업체, 사업장)	해당 없음
	A(업체, 사업장)+B(비관리) →B(업체, 사업장)	A(업체, 사업장)의 권리 · 의무를 B(비관리)에 승계
신설합병	A(관리업체, 폐업)+B(관리업체, 폐업) →C(업체, 사업장)	A와 B의 권리 · 의무를 C에게 승계

○ 양수 · 양도

- 회사의 자산을 매매하거나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양도 관리업체의 권리 · 의무는 양수 관리업체에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 회사의 양수·양도에 따른 유형별 권리·의무 승계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형	권리·의무 승계
양수 · 양도	A(관리)가 B(관리) 시설 양수	A(관리)가 B(관리) 시설의 권리 · 의무 승계
	A(관리)가 B(비관리) 시설 양수	A(관리)가 B(비관리) 시설의 권리 · 의무 승계
	A(관리)가 시설양도 후 비관리업체로 변경	권리 · 의무가 별도로 문제되지 않음
	A(비관리)가 B(관리) 시설양수 후 관리업체 지정	A(비관리)가 B(관리) 시설의 권리 · 의무 승계
	A(비관리)가 B(비관리) 시설 양수 후 관리업체 지정	해당 없음

○ 분 할

- 하나의 회사 영업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면서 그 영업에 관해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신설회사에 승계시키는 것 또는 하나의 회사 영업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면서 그 영업에 관해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승계 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단순분할 : 회사의 일부가 분할되어 타 회사가 신설되는 경우
- 분할합병 : 회사의 일부가 분할되어 타 회사에 흡수되는 경우
- 회사의 분할에 따른 유형별 권리 · 의무 승계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형	권리·의무 승계
분할	A(업체, 사업장) → A(업체, 사업장)+B(업체, 사업장)	A(업체, 사업장) 권리 · 의무의 일부가 B(업체, 사업장)에 승계 A(업체, 사업장) 권리 · 의무 조정
	A(업체, 사업장) → A(업체, 사업장)+B(비관리)	A(업체, 사업장) 권리 · 의무 조정 B(비관리) 해당 없음
	A(업체, 사업장) → B(비관리)+C(비관리)	B(비관리), C(비관리) 해당 없음

제 3 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등

3.1 명세서 작성 개요

3.2 명세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3.3 명세서 검증 및 제출

3.4 명세서 공개 및 비공개 신청

제3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등



본 장에서는 명세서 제출 절차 및 시기, 명세서 검증을 위한 절차 및 대응 방안, 제출된 명세서에 대한 비공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알아본다.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한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및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며, 명세서 검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온실가스배출량 검증매뉴얼 및 세부검증가이드라인(국립환경과학원)」을 참조하도록 한다.

3.1 명세서 작성 개요

3.1.1 명세서 및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



지침 제36조(명세서의 작성 및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체계)

관리업체는 이 지침 제2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는 [별표 4]와 같다.

해설

- (제36조)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지정받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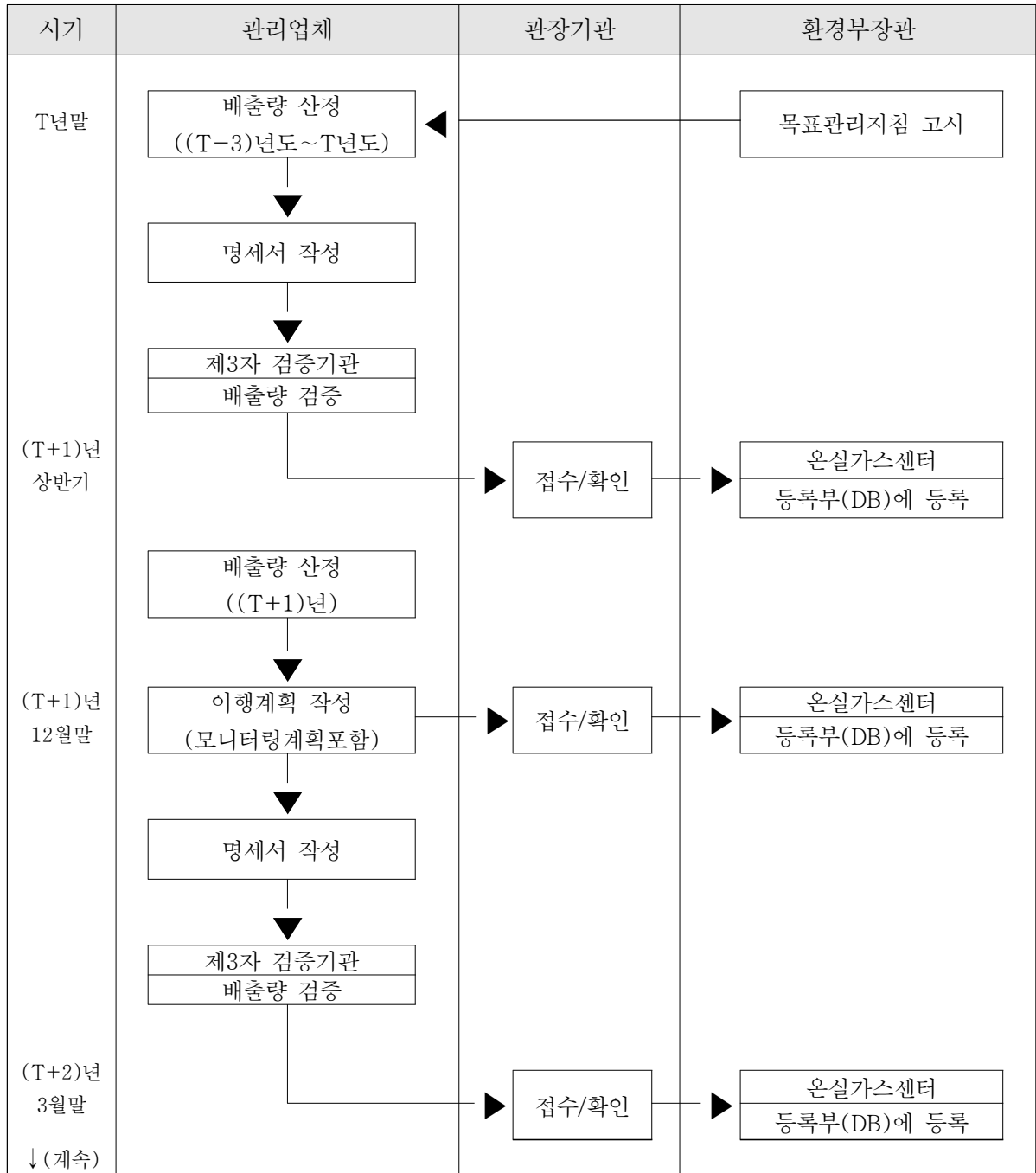


- 신규 관리업체인 경우, 지정된 최초 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보고하여야 한다.

(예시) 2022년도 신규관리업체는 2019~22년까지 총 4개년도 명세서 제출(2023년 제출)

- 관리업체의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는 아래와 같다.

[별표 4] 목표관리제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



※ T년 : 관리업체 최초 지정연도

3.2 명세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3.2.1 명세서의 구성

○ 명세서는 다음의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 관리업체 총괄정보”

- 일반정보, 사업장 목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주요항목) 소량배출사업장 여부, 할당대상 여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등

② “2. 사업장 일반정보”

- 사업장 일반 정보 및 배출량 산정·보고를 위한 조직경계
- (주요항목) 사업장 정보, 사업장 조직경계(사진, 시설배치도, 전체공정도 및 공정배출 공정도), 조직경계 관련 설명 등

③ “3.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 (주요항목) 배출시설별 시설용량, 세부시설 용량, 가동일수·시간, 부하율, 자체배출 시설명, 배출활동, 활동자료 등

④ “4. 사업장 배출량 현황”

-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 (주요항목) 사업장 온실가스·에너지 배출량 총괄 현황,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산정 제외 배출량, 사업장 CDM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배출시설·산정방법 변동현황 등

⑤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산정방법, 매개변수 등 세부 현황
- (주요항목) 배출활동별 세부 배출량 현황, 배출활동, 활동자료, 매개변수 값, 적용Tier, 불확도, 온실가스별 배출량, Tier 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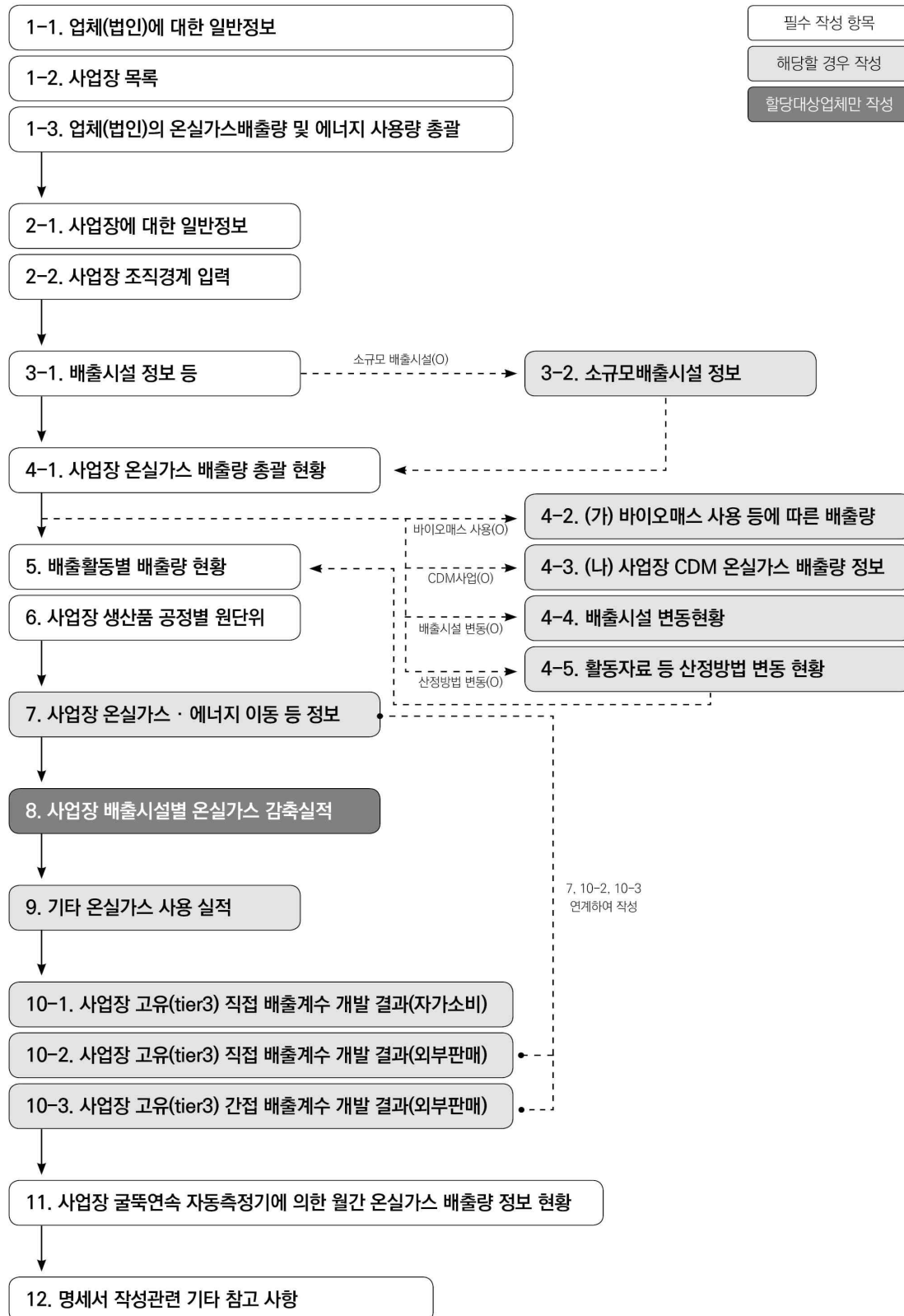
⑥ “6.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 (주요항목) 공정·생산품명,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연간 생산량, 원단위 등



- ⑦ “7. 사업장 온실가스·에너지 이동 등 정보”
 - 온실가스·에너지에 대한 구매, 판매, 이동 등
 - (주요항목) 온실가스 종류, 공급 및 수급 대상업체명(할당대상업체, 관리업체, 비관리업체), 발열량, 배출계수 등
 - ⑧ “8.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 (주요항목) 감축실적, 사업현황, 감축효과, 투자실적, 기술공정도 첨부 등
 - (참고사항) 관리업체 중 해당연도 감축이행 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작성
 - ⑨ “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현황
 - (주요항목) 활동자료 종류, 사용 목적, 활동자료, 계산계수, 온실가스 배출량 등
 - ⑩ “10. 사업장 고유(Tier3) 배출계수 개발 결과”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의 결과
(직접(자가소비), 직접(외부판매), 간접(외부판매))
 - (주요항목) 매개변수명, 시료채취지점·규격, 계수 산정 방법론, 계수 값, 계수산정식, 세부 분석 항목, 분석 기준, 측정 항목, 증빙자료 등
 - ⑪ “11. 사업장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현황”
 - 사업장 굴뚝의 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주요항목) 배출구(굴뚝)번호·자체관리번호, 월별 측정값, 엑셀 자료 등
 - ⑫ “12. 명세서 작성관련 기타 참고 사항”
 - “1.” ~ “11.” 서식 이외의 기타 사항 및 추가 설명
 - (주요항목) 해당 명세서 서식 명, 추가 설명 내용, 첨부파일 등
 - (참고사항) 해당 명세서 서식을 선택하여 추가 설명 작성 및 파일 첨부, 기존 이행실적 보고서 양식의 삭제로 인해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12.” 서식에 이행여부 작성
- 명세서 항목별 작성 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명세서 작성 시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자료는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서 명세서의 작성 화면(서식) 구현 시 ‘자동기입’ 되는 항목은 업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입력된 사항으로 반드시 세부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명세서 작성 흐름도 (8번 서식의 경우 해당 시 작성)





3.2.2 명세서 작성방법



지침 제63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 ① 관리업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② 관리업체는 이 지침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모든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업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과 관련된 요소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④ 관리업체는 배출량 등을 과대 또는 과소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한다.
- ⑤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된 방법론, 관련 자료와 출처 및 적용된 가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침 제64조(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 ①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배출량 인증지침”이라 한다)제8조, 제10조~제2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관리업체”로,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본다.
 1.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
 2. 조직경계 결정방법
 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4. 활동자료의 수집방법
 5. 불확도 관리기준 및 방법
 6. 배출계수 활용 및 개발
 7.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
 8. 바이오매스 등에 관한 사항
 9. 적용 특례 등에 관한 사항
 10. 모니터링 계획 작성 방법
 11. 품질관리 및 보증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의 명세서 작성 서식에 관한 사항은 배출량 인증지침 제86조를 따른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정방법 및 배출계수 산정등급 3(Tier 3)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또는 공정 단위의 산정방법 또는 고유 배출계수의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해 설

○ (제1항) 배출량 산정 원칙 및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구성 세부 목차 및 목표관리제와의 연계성

구 분	목 차	주요 내용	목표관리제 연계
제1장	일반사항	1.1 정의 ~ 1.4 운영 체계	-
		1.5 용어 정의	○
		1.6 주요사항	○
제2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절차	2.1 명세서 작성 개요	△ (증빙자료 관련부문 연계)
		2.2 조직경계 결정방법	○
		2.3 배출활동의 확인 및 구분	○
		2.4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배출량 산정 기준	○
		2.5 온실가스 배출계수 적용 및 선택	○
		2.6 명세서 제출 방법	△ (검증 관련부문 연계)
		2.7 명세서의 공개	-
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3.1 할당대상업체 총괄 정보 ~ 3.12 명세서 작성 관련 기타 참고사항	○
		3.13 첨부1. 업체(법인)의 사업장 배출량 및 할당시 기준을 적용한 인증량 총괄	-
		3.14 첨부2. 할당시 기준을 적용한 사업장 배출량 현황	-
		3.15 첨부3. 배출효율 기준 적용방식 사업장의 BM 활동자료량 및 배출시설 현황	-
제4장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	4.1 고정연소(고체연료) ~ 4.41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	○
제5장	주요업종의 명세서 작성 예시	5.1 교통 및 발전에너지 ~ 5.7 폐기물	○

※ 소량배출사업장 및 소규모배출시설의 구분에 관하여는 본 지침 해설서 3.2.3 소량배출사업장, 3.2.4 소규모배출시설 내용을 따른다.

※ 관리업체의 사업장 고유(Tier3) 배출계수 승인·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의 다음 내용을 따른다.



-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Tier3 산정방법 및 배출계수에 대해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또는 공정 단위의 산정방법 또는 고유 배출계수의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5]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승인·통보 절차

1단계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계획 제출
관리업체는 제63조제3항에 따른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할 경우,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계획이 포함된 제38조에 따른 이행계획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한다.	
▼	
2단계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 및 근거 제출
관리업체는 기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결과를 다음 연도 명세서에 포함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한다.	
▼	
3단계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토 및 환경부장관에게 검토결과 통보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출한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결과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4단계	환경부장관의 확인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확인결과 통보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의 검토 결과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의한 국가 배출계수 개발결과와의 정합성과 부문간 유사시설에 대한 배출계수의 등가성 및 정확성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한다.	
▼	
5단계	관리업체에게 확인결과 통보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관리업체에 통보한다.	

※ 2024년부터 환경부장관의 확인 및 관장기관에 확인결과 통보절차 삭제
(사유: 관리업체 명세서 제출(5월말) 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행실적 심의(6월말)로 총괄 기관(환경부)의 명세서 점검·평가(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포함) 미실시)

3.2.3 소량배출사업장 여부



지침 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 ① 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업체 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ext{tCO}_2\text{-eq}$)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소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에는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의 신설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최초 가동연도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소량배출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합은 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의 10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고 제1항의 기준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일부를 포함시키거나 제외하여서는 안된다.

해 설

- (제1항) 관리업체 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text{tCO}_2\text{eq}$ 미만인 경우 소량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일부 규정은 지침 제39조(이행계획 수립의 적용 특례)를 참조한다.
-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연평균 총량을 기준으로 한다.
 - 신설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시 최초 가동연도를 포함한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참 고 사 항

-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소량배출사업장 기준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 46. “소량배출사업장”이란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ext{tCO}_2\text{-eq}$)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 (제2항) 소량배출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은 업체 내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의 10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고, 소량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소량배출사업장 예시

- F업체는 5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업체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56,400 tCO₂-eq 이다. 각 사업장마다 세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와 같다.(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임)

구 분	사업장 1	사업장 2	사업장 3	사업장 4	사업장 5
온실가스 배출량 (tCO ₂ -eq)	25,000	22,000	4,000	2,500	2,900
온실가스 배출 비율 (%)	44.33%	39.01%	7.09%	4.43%	5.14%

기준 구분	조 건	해당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tCO ₂ -eq 미만	사업장 4, 사업장 5
배출총량 비율 기준	소량배출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업체 내 모든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5% 미만	사업장 4 (2,820 tCO ₂ -eq미만)

- ▷ F업체의 5개 사업장 중 소량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과 배출총량 비율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사업장은 “사업장 4” 이다. 따라서 F업체의 “사업장 4” 가 소량배출사업장이다.

3.2.4 소규모배출시설 여부



지침 제65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① ~ ④ (생략)

- ⑤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이 1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ext{tCO}_2\text{-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해 설

-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 $\text{tCO}_2\text{-eq}$ 미만일 경우 소규모배출시설로 기입
 - (예시) 명세서 제출 시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100 $\text{tCO}_2\text{-eq}$ 미만을 소규모배출시설로 봄
 ※ 매해 사업장 총 배출량에 따라 소규모배출시설이 달라질 수 있음

참 고 사 항

○ 배출권거래제에서의 소규모 배출시설 기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9조(배출량 등의 산정범위)

- ⑤ 보고 대상 배출시설 중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 tCO_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3.3 명세서 검증 및 제출



지침 제37조(명세서의 제출) 등

□ 지침 제37조(명세서의 제출)

- ① 관리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관리업체로 지정받은 다음해부터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연도 명세서를 수정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1항의 해당 연도 명세서와 함께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4. (생략)
- ③ 관리업체는 제4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항목이 수정되는 경우 제3자 검증을 거친 후 재 제출해야 한다.

□ 지침 제40조(명세서의 확인)

-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37조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2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누락 및 검증기관의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② ~④ (생략)

□ 지침 제41조(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검증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을 준용한다.

해 설

- (제37조, 제40조제1항) 관리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3월 31일까지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명세서를 제출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출된 명세서의 누락, 오류, 검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37조제2항) 명세서를 재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 타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편입되는 업체의 전체년도 명세서를 전부 반영하여 과거년도까지 소급하여 적용
(단, 편입되는 업체의 지정연도가 주체가 되는 업체의 지정연도보다 과거일 경우에는 주체가 되는 업체의 명세서 시작년도를 기준으로 함)

- 조직경계 내·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배출원 또는 흡수원이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
 -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에 변경이 유발된 경우
 - 해당 방법론이 적용된 시점부터 적용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를 지침 제64조제3항에 따라 검토·확인을 받거나, 그 값이 변경된 경우
 - 검토·확인을 처음 받는 경우, 주무관청(관장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과거년도를 포함하여 명세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과거에 이미 주무관청(관장기관)으로부터 검토·확인을 받아 시정했을 경우 소급하지 않는다.)
- (제37조제3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명세서의 누락, 오류, 검증여부 등을 확인하여,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관리업체에게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시정 요청을 받은 관리업체는 시정 요구 사항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명세서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제3자 검증기관의 약식검증을 거친 후 명세서를 재 제출해야 한다.
- 명세서의 약식검증은 관리업체가 자발적으로 명세서의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도 실시한다.
- (제41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검증에 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이하 “검증지침”이라 함)을 준용한다. 단, 이때 “할당대상업체”는 “관리업체”로 본다.
- 명세서 검증 절차 및 방법, 온실가스 검증기관, 온실가스 검증기관 확인방법, 명세서 검증 소요일수 산정방법은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 용어정의



- 일반적으로 명세서 등을 제출하기 전 실시하는 검증을 “본검증”이라하며, 제출 후 관장기관 또는 총괄기관의 시정·보완요청 등에 의해 제출 문서의 수정이 발생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약식검증”이라 한다.



3.4 명세서 공개 및 비공개 신청

3.4.1 명세서 공개 및 비공개 신청



지침 제67조(명세서의 공개)

- ① 명세서 공개에 관하여는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① ~ ③.(생략)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명세서를 바탕으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그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 ~ ⑦.(생략)
- ⑧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지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3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명세서의 제출·수정·보완, 제4항에 따른 등록부의 관리, 정보 공개의 범위·방법, 비공개 요청의 방법,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공개 여부의 결정,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달성 여부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명칭 및 업종
 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5.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 기관
 6.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②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등의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할 때 비공개신청서에 비공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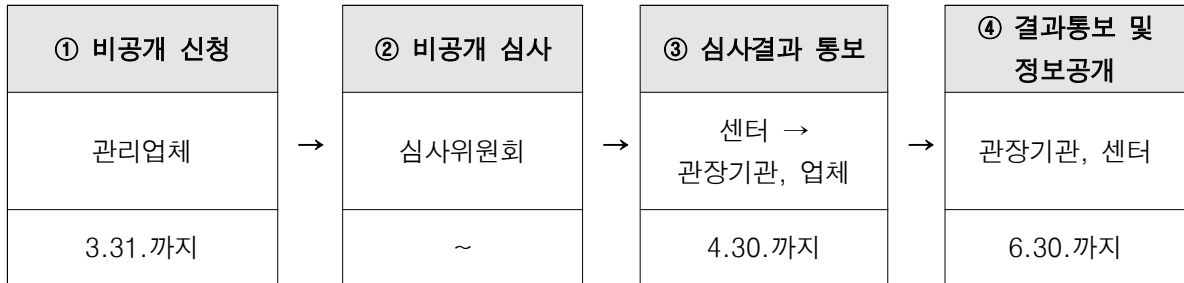
해 설

- (법 제27조제4항) 관리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그 관리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다.
- *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07호) 참조
- 명세서 주요정보 중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항목
- 관리업체의 상호·명칭 및 업종
 - 관리업체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 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수행기관
- 비공개 결정 및 부분 비공개 결정을 한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
-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 관리업체의 규모
 -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
- (시행령 제23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부문별 관장기관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지침 제67조) 명세서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3.4.2 명세서 비공개 신청 절차 및 방법

○ 명세서 비공개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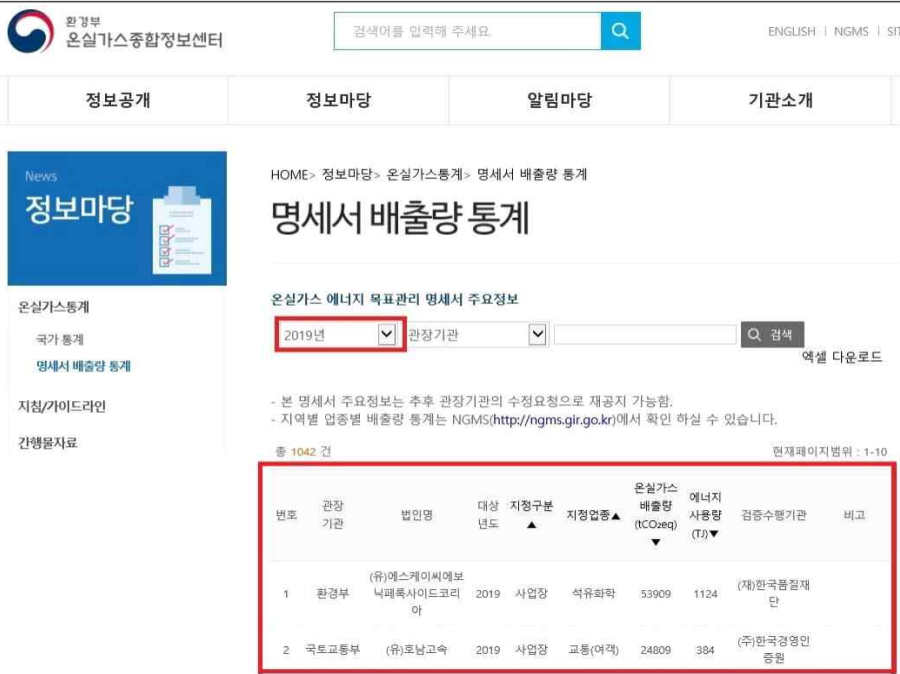
- ① 비공개 신청 : 관리업체는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비공개 신청 및 관련자료를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비공개 심사 : 센터는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관리업체의 비공개 항목과 사유서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심사결과 통보 : 센터는 4월 30일까지 해당 관리업체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심사위원회의 공개 심사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단, 공개를 결의한 경우 이유를 명시)
- ④ 결과통보 및 정보공개 :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심사결과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명세서의 주요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명세서 비공개 신청 방법

확인 경로	홈페이지
NGMS (https://ngms.gir.go.kr)	
↓	
명세서 제출	
↓	
명세서 비공개 신청	
↓	
신청사유 작성 및 저장	

3.4.3 명세서 주요 정보 확인방법

○ 명세서 주요 정보 확인방법(관리업체별 명세서 배출량 통계 등)

확인 경로	홈페이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http://www.gir.go.kr)	
↓	
정보마당	
↓	
온실가스 통계	
↓	
명세서 배출량 통계	

제 4 장

감축목표 설정 등

- 4.1 감축목표 설정 개요
- 4.2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 및 재산정
- 4.3 감축목표의 설정
- 4.4 감축목표의 재설정
- 4.5 이의신청

제4장

감축목표 설정 등



본 장에서는 목표관리를 위한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 목표설정 체계, 감축목표 설정 방법 및 목표 이행에 따른 감축목표 재설정과 배출량 조정방법을 확인한다.
또한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및 결과 확인에 대하여 알아본다.

4.1 감축목표 설정 개요

4.1.1 감축목표 설정 및 정의



지침 제24조(기준연도 배출량) 등

□ 지침 제24조(기준연도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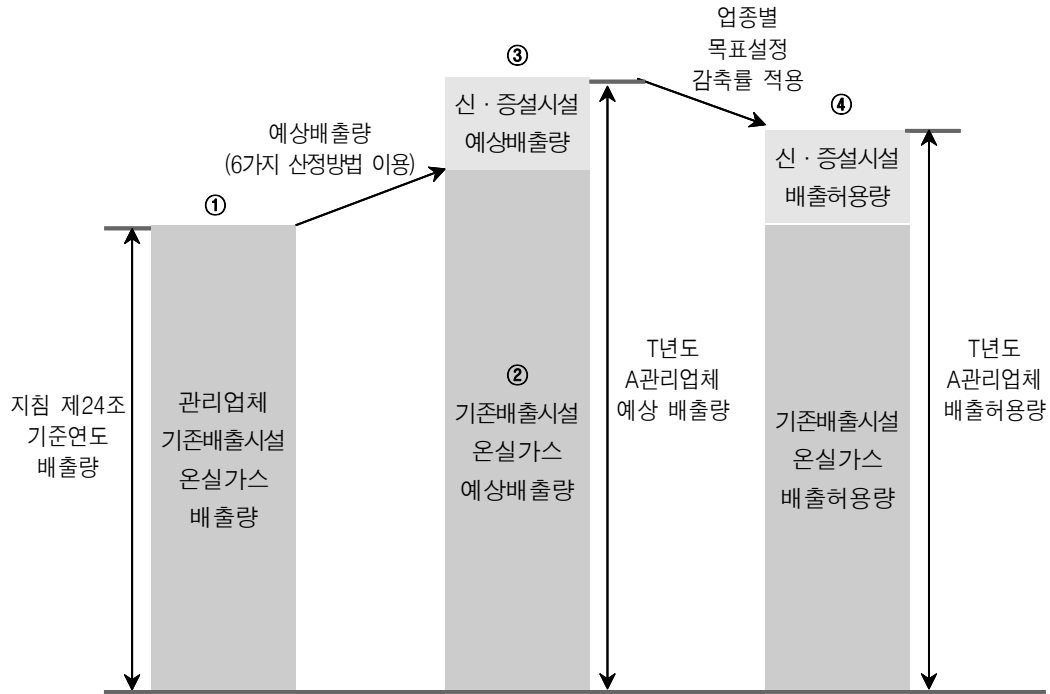
- ①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도는 관리업체가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으로 하며, 이 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한다.
- ② 제1항에서 기준연도 중 신·증설(건물의 신·증축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신·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서 관리업체의 최근 3개년 배출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 지침 제28조(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생략)



○ 감축목표 설정 방법



※ T년 : 관리업체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이행연도)

- ① A관리업체의 기존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침 제24조에 따른 기준연도 배출량(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으로 T-3 ~ T-1년 데이터 사용)을 적용한다.
- ② 지침 제27조제2항의 6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대비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예상배출량을 산정한다.
- ③ A관리업체에 신·증설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시설의 설계용량, 가동시간, 부하율 (또는 가동률) 등을 이용하여 신·증설시설의 예상배출량을 산정한다.
- ④ 산정된 기존시설의 예상배출량과 신·증설시설의 예상배출량을 합산한 뒤, 업종별 감축률을 반영하여 A관리업체의 T년도 배출허용량을 확정한다.

감축목표 설정 방법

○ 예상배출량에 업종별 감축률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 및 감축목표를 설정

－ 업체별 배출허용량 = 기존시설 배출허용량 + 신·증설시설 배출허용량

・ 기존시설 배출허용량 = 예상배출량(6가지 산정방법 이용) × 감축률

・ 신·증설시설 배출허용량 = 설계용량 × 부하율 × 가동일수 × 활동자료당 평균배출량 × 감축률

참 고 사 항

소량배출사업장의 적용 예외

-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연평균 총량이 3,000 tCO₂-eq 미만인 소량배출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총합의 1000분의 50미만인 경우,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침 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에 의거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8항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량배출사업장의 경우 관리업체의 목표협의 시 목표협의 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소량배출사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 시 그 감축분을 인정해준다. 다만, 소량배출사업장의 감축이 발생하여 이를 이행실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 시 소량배출사업장도 감축목표를 부여받고 이행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4.1.2 목표 설정 체계

- 부문별 관장기관과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협의·설정하기 위한 체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지침 제23조(목표설정의 원칙) 등

□ 지침 제23조(목표설정의 원칙)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관리목표(이하 “목표”라 한다)를 협의·설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1.~5. (생략)
6. 관리업체의 목표는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범위 이내에서 설정해야 한다.

□ 지침 제26조(목표관리 계획기간)

- ① 관리업체의 목표관리 계획기간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목표를 설정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해당 연도에 새로이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업체별 목표 설정 이후 합병·분할 또는 영업·자산 양수도 등 권리와 의무의 승계로 인하여 목표관리를 받게 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는 다음해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목표관리 계획기간으로 한다.



□ 지침 제27조(목표설정의 기준 및 절차)

- ① 관리업체의 예상배출량은 기존 배출시설(공정, 건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예상배출량과 신·증설 시설(건물의 신·증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예상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배출시설의 예상배출량 산정은 제24조제1항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 1.~6. (생략) 하단 참조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예상배출량에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수립 시 설정한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을 산정한다.
- ④ 각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목표를 부여받는 신규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제23조에 의한 목표 협의 시 파악한 감축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의한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탄소중립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관리업체별 예상배출량 설정방법 및 감축률 적용에 관한 사항
 2. 관리업체의 목표가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축 목표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목표설정 및 관리 특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장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5항의 심의사항을 계획기간 전년도 8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이 취합한 안건을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계획기간 전년도 9월30일까지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고, 목표설정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예상배출량 산정 방법 (지침 제27조제2항)

- ① 기준연도 배출시설 배출량의 선형 증감 추세
- ② 기준연도 배출시설 배출량의 증감률
- ③ 배출시설의 단위 활동자료(연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원료 사용량, 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 연면적 등을 말한다)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 ④ 기준연도 배출시설의 단위 활동자료와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상관 관계식을 이용한 배출량
- ⑤ 기준연도 배출시설 평균 배출량
- ⑥ 최근연도 배출시설 배출량

예상배출량 산정방법(기준시설) 예시

① 기준연도 배출시설 배출량의 선형 증감 추세

－ A업체 (T년: 지정연도)

구분	T-3년	T-2년	T-1년	T년		T+2(이행연도)
기준시설	50,000	52,000	54,000	56,000	⇒	60,000

- 과거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값을 이용하여 Excel의 “trend” 함수로 이행연도의 예상배출량 산정

※ 연도별 배출량에 일정한 경향성이 없을 경우, 산정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

② 기준연도 배출시설 배출량의 증감률

－ A업체 (T년: 지정연도)

구분	T-3년	T-2년	T-1년	T년		T+2(이행연도)
기준시설	50,000	52,000	54,000	54,000	⇒	60,395

- 기준연도 최초연도부터 최근연도까지 연평균 증감률(%) 산정 후 예상배출량 산정

： 연평균 증감률(%) = $[\{ \text{최근연도 배출량} / \text{최초연도 배출량} \}^{1/(\text{최근연도} - \text{최초연도})}] - 1$

： 예상배출량 = 최근연도 배출량 + (최근연도 배출량 × 연평균 증감률)

※ 최초연도와 최근연도의 배출량 차이에 따라 과대 혹은 과소 산정될 수 있음

③ 배출시설의 단위 활동자료 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 A업체 (T년: 지정연도)

구분	T-3년	T-2년	T-1년	T년		T+2(이행연도)
기준시설 (tCO ₂ eq)	50,000	52,000	54,000	56,000	⇒	65,250
처리(생산)량 (m ³)	3,100,000	3,500,000	3,300,000	4,000,000	⇒	4,350,000 (선형추세 분석)
원단위 (tCO ₂ eq/m ³)	0.016	0.015	0.016	0.014	⇒	0.015

- 원단위(생산량(처리량) 당 발생하는 배출량)을 이용하여 분석

- 해당시설의 연도별 활동자료를 기준으로 평균원단위를 산정하여 목표연도 예상 배출량 산정

： 평균원단위 = 연도별 원단위 합 / 연도 수

： 예상배출량 = 평균원단위 × 과거연도 고려하여 추정된 생산량(처리량)

- 하수유입량, 폐기물매립량 등 처리량(또는 제품 등 생산량) Data는 선형추세 분석을 적용하여 예상 처리(생산)량 산정

- BOD농도, 폐기물 매립성상 등 성상별 Data는 과거연도 평균값을 적용하여 예상 생산량 산정

※ 활동자료의 과거 데이터 수가 부족하거나 경향성이 없을 시, 산정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



예상배출량 산정방법(기존시설) 예시

④ 회귀 분석

－ A업체 (T년: 지정연도)

구분	T-3년	T-2년	T-1년	T년		T+2(이행연도)
기존시설	50,000	52,000	54,000	56,000	⇒	60,000

- 온실가스배출량(Y)과 활동자료(X)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후, 회귀식 도출
 - * [엑셀활용] 데이터 메뉴 내 데이터분석 기능(상관분석)
- $Y=AX+B$ 회귀식 도출 후, X에 활동자료 예상량(선형추세) 넣고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산정
 - * [엑셀활용] 데이터 메뉴 내 데이터분석 기능(회귀분석)

⑤ 기준연도 배출시설 평균 배출량

－ A업체 (T년: 지정연도)

구분	T-3년	T-2년	T-1년	T년		T+2(이행연도)
기존시설 (tCO ₂ eq)	50,000	52,000	54,000	56,000	⇒	53,000

- 과거연도 배출량 평균값으로 목표연도 예상배출량 산정
- 배출량이 미미한 공정 외 배출시설(소규모보일러, 비상발전기, 차량 등) 등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세나 증감률을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과거 일정연도간의 평균값으로 예상배출량을 산정

⑥ 최근연도 배출시설 배출량

－ A업체 (T년: 지정연도)

구분	T-3년	T-2년	T-1년	T년		T+2(이행연도)
기존시설	－	－	54,000	54,000	⇒	54,000

- 최근연도 배출량 적용하여 목표연도 예상배출량 산정
- 배출시설의 신설 등 과거연도의 유의미한 추세 파악이나 평균값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최근연도 배출량을 적용하여 예상배출량을 산정

해 설

- (제27조제1항) 관리업체 목표는 기존 배출시설과 신·증설 시설의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내용은 본 해설서 4.3 감축목표의 설정을 따른다.
- 업체별 총 배출허용량은 제1항에서 설정한 총 예상배출량에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연도별 감축률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400만큼 감축하기 위해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제시된 연도별 업종별 감축률을 적용한다.
 - 관장기관과 관리업체간 목표설정 협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예시)로 진행될 수 있다.
 - * 기존시설, 신·증설 시설 운영 및 예상성장률 관련 서면조사
 - * 신·증설시설 사업추진 경과(준공일자, 설비용량, 가동시간 등) 및 일시중지·폐쇄시설 확인 등의 서면·현장조사
 - * 관장기관과 관리업체간 감축목표 협의·설정
- (제27조제4항) 신규 관리업체의 감축 이행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초 목표 설정 시 정책협의회의 의견 수렴 또는 심의를 통해 별도의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다.
- (제27조제5항, 제6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별 협의한 배출허용량에 대하여 심의안을 작성하여 계획기간 전년도 8월 31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계획기간 전년도 9월 30일까지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 및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탄소중립위원회 심의사항
 - 관리업체별 예상배출량 설정방법 및 감축률 적용에 관한 사항
 - 관리업체의 목표가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축목표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 제31조에 따른 목표설정 및 관리 특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장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2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 및 재산정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 방법과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준연도 배출량 재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4.2.1 기준연도 배출량 등



지침 제24조(기준연도 배출량)

- ①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도는 관리업체가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으로 하며, 이 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한다.
- ② 제1항에서 기준연도 중 신·증설(건물의 신·증축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신·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서 관리업체의 최근 3개년 배출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설

○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 방법

- (제1항) 기준연도 배출량은 업체가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 평균 배출량(22년 지정된 업체의 경우 '19~'21년 평균)을 말한다. 이 경우 최근 3개년 배출량 자료는 자료의 신뢰도, 시계열적 일관성 등이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 (제2항) 기준연도 기간 중 신·증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신·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활용 가능한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신·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정상운영 기간 등을 고려한 자료의 신뢰도, 시계열적 일관성 등이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연도 기간 중 폐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연도 배출량에서 제외한다.
- 제2항의 '기준연도 기간 중 신·증설'이란 사업장에 기준연도 첫 해(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도가 '19~'21년인 경우 '19년)의 배출시설과는 별도로 새로 설치된 시설이나 설비 또는 기준연도 첫 해의 배출시설에 시설용량 등이 추가된 시설이나 설비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항) 신설법인 등의 경우 최근 3개년 배출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한다. 관리업체의 최근 3개년 배출량 자료가 신뢰도가 낮거나 시계열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기간의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방법 예시(1)

- A관리업체는 기준연도 기간 중 신·증설 및 폐쇄가 발생하였다. 기존시설은 기준연도 3개년 동안 정상가동되어 3개년 평균으로 산정하였고, 신·증설시설은 정상운영된 2021년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하였다. 또한 폐쇄시설은 기준연도 배출량에서 제외하였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연도
기존시설	50,000	52,000	54,000	⇒	52,000
신·증설시설 (기준연도 기간 중)	—	1,000	5,000	⇒	5,000
폐쇄시설	5,000	3,000	—	⇒	0
배출량	55,000	56,000	59,000		57,000

- ▷ A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기존시설의 3개년 연평균 배출량과 2021년 단년도 신·증설시설 배출량을 합하여 57,000 tCO₂-eq로 산정한다.

기준연도 배출량 산정방법 예시(2)

- B관리업체 기존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정상가동, 자료의 신뢰도, 시계열적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기존시설(A)는 3개년 평균, 기존시설(B)는 2019년 및 2020년 평균(비정상 가동기간 2021년 제외), 기존시설(C)는 2019년 및 2021년 2개년 평균(일시 정지된 2020년 제외)으로 한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연도
기존시설(A)	38,500	38,700	38,700	⇒	38,633
기존시설(B)	15,000	16,000	2,500	⇒	15,500
기존시설(C)	11,000	—	13,000	⇒	12,000
배출량	64,500	54,700	54,200		66,133

- ▷ B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자료의 신뢰도 및 시계열적 일관성 등을 고려한 66,133 tCO₂-eq이 된다.

※ 기존시설(B)와 기존시설(C)는 유지보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출량이 감소하였으며 시설의 용량 변화는 없음



4.2.2 기준연도 배출량의 재산정



지침 제25조(기준연도 배출량의 재산정)

- ①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기준연도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수정하되, 변경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한 수정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업체의 합병·분할 또는 영업·자산 양수도 등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직 경계 내·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이 변경된 경우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의해 기준연도 배출량이 재산정된 경우 변경사유 접수 30일 이내에 배출허용량 등 목표를 수정하여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준연도 배출량을 수정한 관리업체는 재산정 이유와 근거 및 세부절차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 기준연도 배출량의 재산정 방법

- (제1항1호) 법인 등이 사업장이나 업체를 양도하거나 소멸한 경우 또는 합병 등의 경우에는 기준연도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A관리업체가 B관리업체에 “가”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가” 사업장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B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승계된다. 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다양한 유형은 2.4.2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참조한다.
- (제1항2호) 조직경계 내의 배출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배출원 또는 흡수원이 변경된 경우 기준연도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수정한다.
- (제1항3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이 변경된 경우 기준연도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수정한다.
- (기타) 제25조1항1호 내지 3호 외에 배출량 산정등급이 바뀌었을 때에는 기 적용한 산정등급 중 가장 높은 산정등급으로 기준연도 배출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4.3 감축목표의 설정

관리업체의 목표는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과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이 있으며, 본 해설서에서는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으로만 구성하였다.

4.3.1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지침 제28조(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 ②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 이전에 정상 가동한 기존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제27조의제1항에 따른 예상배출량
 2.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 대상 연도 감축률
- ③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신·증설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한다.
 1. 해당 신·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및 부하율(또는 가동률)
 2. 해당 신·증설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예상 가동시간
 3. 해당 신·증설 시설에 대한 활동자료 당 평균 배출량
 4.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 대상연도 감축률
- ④ 제3항에 따라 목표가 설정된 신·증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1년 단위의 실제 배출량을 산정·보고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연도의 실제 배출량으로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적인 목표설정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해 설

○ 기존 배출시설 배출허용량 설정

- (제28조제2항) 기존 배출시설이란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 이전에 정상 가동한 배출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정상 가동이란 활동자료의 신뢰도 및 시계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전상황을 말한다.

○ 신·증설시설 배출허용량 설정

- (제28조제3항) 신·증설 시설이란 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부터 가동을 개시하는



신·증설 배출시설을 말하며, 기준연도의 배출시설과는 별도로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배출시설에 시설용량 등을 추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 신·증설시설의 인정범위

- 목표관리제의 경우 관리업체가 신·증설 시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 배출시설 준공서류, 가동개시일 포함하는 증빙서류, 설치확인서 등

- 신·증설 배출시설 배출허용량 산정방법

- 제28조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다음 수식을 활용하여 목표량을 산정한다.

$$EA_{new_inst_{i,j,k}} = C_{i,j,k} \times D_{i,j,k} \times t_M \times EV_{i,j,k} \times CF_i$$

$EA_{new_inst_{i,j,k}}$: i 업종, j 업체, k 신·증설시설의 y 년도 목표량(tCO_2/yr)

$C_{i,j,k}$: i 업종, j 업체, k 신·증설시설의 설계용량(MW, t/hr)

$D_{i,j,k}$: i 업종, j 업체, k 신·증설시설의 부하율(부하율은 설계용량 대비 평균 사용용량을 의미)

t_M : i 업종, j 업체, k 신·증설시설의 y 년도 예상 가동시간 (hr/yr)

$EV_{i,j,k}$: i 업종, j 업체, k 신·증설시설의 최근 과거연도에 해당하는 활동자료 당 평균 배출량(tCO_2/t)

CF_i : i 업종의 y 년도 감축률(%)

- 부하율은 시공 시 사용한 실시설계 보고서(기본·실시설계 보고서 포함) 또는 준공보고서 상의 배출시설 설계용량 대비 동일업종, 유사 배출시설의 평균 예상사용량을 의미한다.

4.3.2 감축목표 설정 방법 예외 업종



지침 제31조(목표의 설정 및 관리 특례)

-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국제적 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와의 연계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기여도, 전력수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부문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배출량의 산정, 목표의 설정방법 등은 제24조부터 제29조를 준용한다.

1. 발전
2. 철도(지하철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또는 배출시설

- ② (생략)

해 설

○ 목표의 설정 특례

- (제1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 철도(지하철 포함), 그 외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또는 배출시설에 대해 기본 감축목표 설정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참 고 사 항

목표설정 시 관리업체의 사전 준비사항

- 업종별 특성반영으로 관리업체의 목표협상을 위한 기초자료(준비사항)가 일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관리업체는 각 관장기관의 요청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 관리업체의 공통 자료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음
- 기준배출량
 - － 기준연도 대상 3년 명세서 자료
 - － 기준연도 대상 3년 생산량 등 연간 기초운영 현황 자료
- 예상배출량 (신·증설시설 해당 시)
 - － 목표설정연도 신·증설시설 설치 및 계획, 예상 생산량(기준, 신·증설시설) 등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등의 증감을 예상 데이터

유 형	자 료	비 고
기 설치 및 목표설정 기한 내 준공	사업 준공내역서 및 착수계 설비 사양서 및 전기사용 계약서(계약전력) 사업 입찰안내서 및 설계보고서 설비 증설에 따른 전력사용량 검토보고서	감축목표협상 전 가동 가능한 시설
사업계획서	목표설정연도 사업계획서 목표설정연도 예산반영 증빙자료	이사회 결의, 대표 최종결재 필한 서류
기타	기타 증빙 가능한 자료	－

목표설정 오류 예시

- B업체 “나” 사업장은 ‘ 13년 7월 20일부터 열병합 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연료로는 연료용 유연탄, 코크스, 프로판, B-C유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B업체의 신·증설시설 목표설정 자료에 의하면 연료용 유연탄을 열병합 발전시설의 단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보고하였다.
- ▷ 열병합 발전시설에 투입되는 연료는 연료용 유연탄, 코크스, B-C유, 프로판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신·증설시설 목표설정 시 연료용 유연탄만을 단일연료로 산정·보고 하는 것은 신·증설시설의 예상배출량을 과다하게 산정할 수 있으므로, 투입되는 각각의 연료 사용량을 고려하여 예상배출량을 산정한다.

4.4 감축목표의 재설정

본 장은 목표달성 평가에 앞서 감축목표 재설정 및 배출량 조정 관련 내용을 구성하였다.



지침 제33조(목표 달성의 평가 등)

- ① (생략)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에 앞서 관리업체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설정한 온실가스관리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존 배출시설을 일정기간 이상 미가동하거나 폐쇄한 경우 실제 가동에 따른 배출량 산정
 2. 목표설정 시 고려했던 신·증설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실질 가동일수 및 가동시간, 가동률을 고려하여 배출량을 산정
 3. 합병·분할 또는 영업·자산 양수도, 조직경계 변경 등으로 전체 배출량이 변동된 경우 당초 목표가 설정된 부분에 한정하여 변경된 조직경계로 구분하여 배출량을 산정
 - 4.~9. (생략)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연도별 온실가스관리목표 설정 시 고려하지 않은 시설(신·증설 등을 말한다)에 대한 배출량을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목표 조정결과와 최종 목표 달성여부 평가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그 사유와 결과를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하고 관련 근거자료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목표와 배출량 조정결과와 사유, 목표달성여부 평가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받은 센터는 이를 제6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지체 없이 반영하고 그 이력을 관리한다.
- ⑥ (생략)

해 설

○ 목표의 재설정

- (제2항, 제3항)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27조(목표설정의 기준 및 절차)에서 정한 관리업체 온실가스 관리목표를 재조정할 수 있다.
 - (제27조) 관리업체의 예상배출량은 기존배출시설의 예상배출량과 신·증설시설의 예상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제4항, 제5항) 관장기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따라 당초 설정한 업체별 배출허용량 및 예상배출량을 재산정하여 온실가스 관리목표를 재설정한다.

· 업체별 목표 재설정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업체별 배출허용량(재산정) = 업체별 예상배출량(재산정) × 확정된 감축률(당초)

* 업체별 예상배출량(재산정) = 업체별 예상배출량(당초) - 배출량 변동분

○ 감축목표 재설정 방안

- 기존시설 배출량 재설정 방안

조정 항목 구분	조정 방안
인수 · 합병	해당 배출시설(사업장) 기준연도 배출량 제외 또는 추가 반영
매각 · 분리	
폐쇄	해당 폐쇄시설 목표 '0' 으로 산정
부분폐쇄	해당 배출시설 배출량 산정지표 비율 등을 반영하여 차감
일시중지	해당 배출시설 중지기간 비율 감산하여 차감
CDM시설	CDM 관련시설 배출량 기준연도 제외
명세서수정	명세서 수정사항 반영하여 기준연도 재산정

- 신 · 증설시설 배출량 재설정 방안

조정 항목 구분	조정 방안
신증설 미설치	- 목표협의 시 신증설 시설에 부여된 배출허용량을 제외
신증설 가동 변경	사용용량 변경 - 목표협의 시 협의된 사용용량 대비 실제 사용용량 비율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 재산정
	가동시간 및 가동일수 변경 - 목표협의 시 설정한 일일 가동시간 및 연간 가동일수 대비 이행연도 실제 연간 가동시간 및 가동일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 조정

○ 감축목표 재설정 유의사항

- 관리업체는 최초로 부여받은 목표가 아닌 이행연도 이후 목표 재설정을 통해 도출된 수치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설정된 목표 값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 관리업체는 이행연도별 목표 설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5 이의신청



지침 제32조(이의신청)

- ①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목표설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목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문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1.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과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 ③ (생략)

해 설

- (제1항) 관리업체는 목표설정 및 재설정 결과에 따라 부여받은 배출허용량에 대해 이의사항 발생 시 목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이의신청서 예시를 참고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목표 설정 이의신청서 예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3년 목표설정 이의신청서(예시)

1. 업체 일반정보

업체명	주식회사 00000	법인등록번호	110111-0000000
대표자	김아무개	업체 전화번호	02-0000-0000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XXX로 000-00		
담당부서	공무팀	담당자명(연락처)	홍길동 과장(02-0000-0000)

2. 목표협상 결과

(단위: tCO₂eq)

①업체 예상배출량 제시(안)	②관장기관 예상배출량 제시(안)	③차이(①-②)
40,235	38,500	1,735

3. 감축목표 통보량

(단위: tCO₂eq, %)

23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온실가스 감축률
37,253	3.24

4. 감축목표 이의신청

(단위: tCO₂eq)

지정 단위	단위명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업체	본사	38,500

이의신청 내역

세부 이의신청 내용 기재

5. 목표설정 이의신청 근거자료

항목	자료명	상세내역
		이의신청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기재

* 근거사유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세증빙자료 첨부

※ 양식은 관장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제2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의 보고결과 문서(예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단, 부득이하게 14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시 7일을 연장 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감축목표설정예 따른 관장기관의 이의신청 검토결과 문서 예시

[관장기관 자체개발 양식]

<첨부>

'00년도 목표설정 이의신청 검토결과

(주)

□ '00년도 목표설정 통보내역

구분	예상배출량			감축률* (%)	배출허용량
	기준시점	산정시점	합계		
온실가스 (tCO ₂ e)					
에너지 (TJ)					

* 업체별 '00년 건물부문 감축률 적용

□ 이의신청 검토내역

구분	이의신청		검토결과
	기준연도 (tCO ₂ e)	예상배출량 (%)	
목표설정	기준시점 (tCO ₂ e)		
	산정시점 (tCO ₂ e)		
	예상배출량 (tCO ₂ e)		
	감축률 (%)		

□ 종합검토의견

○ 이의신청 검토결과 : □인정 , □부분 인정 , ■불인정

[지침 별지 제6호 활용]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① 업체명	주식회사 OOOOO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10111-0000000 (102-00-00000)	
③ 제출일자	2022.10.02	④ 제출인	김아무개	
이의신청 ⑤ 이의신청 내역	이 의 신 청 내 용 요 약			
검토결과 ⑥ 검토 결과	수용 / 불수용 / 일부수용			
⑦ 결정 사유	세 부 결 정 사 유 기 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귀사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22 년 10 월 10 일 관 장 기 관 장 (직인) 주식회사 OOOOO 귀하				

※ 양식은 관장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관리업체의 이의신청에 따라 14일 이내에 '00년 목표설정 통보내역, 관리업체의 이의신청 검토내역, 종합검토의견 및 결과를 문서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과 관리업체에 통보

제 5 장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5.1 이행계획서 개요

5.2 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5.3 관장기관의 이행계획 시정요청 및 개선명령

제 5 장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본 장에서는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이행계획서의 개요와 작성 항목, 제출 절차 및 시기, 유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각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에 대하여,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에 따른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활동자료의 불확도 수준, 시료의 채취 및 분석방법, 시료채취 빈도 등에 관한 사항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세부적인 작성 예시의 경우 별첨 1.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공통)를 확인하도록 한다.

5.1 이행계획서 개요

5.1.1 이행계획서 정의 및 목적

○ 정의

- 이행계획서는 관리업체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문서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내부 역량을 검토하고 향후 시설 투자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한다.

○ 작성 목적

- 관리업체의 수준, 업종별 목표 이행 계획에 대한 점검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등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5.2 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5.2.1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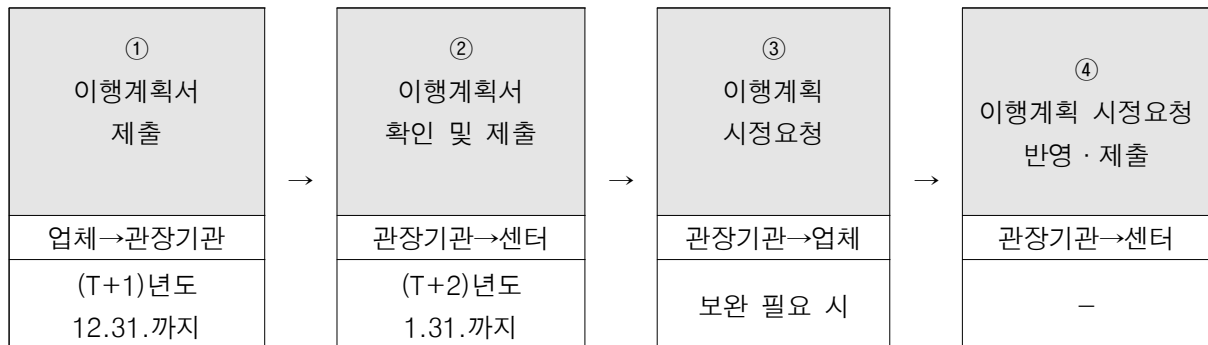


지침 제38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①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다음 계획기간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계획기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계획기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③ (생략)
-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관리업체의 이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하생략)

해 설

○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 T년 : 관리업체 지정연도

- ① **이행계획서 제출** : 다음 연도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행계획서 확인 및 제출** :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 이행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차년도 1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행계획 시정요청** : 관장기관이 적절성 확인 시 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관리업체에 시정 요청이 가능하다.
- ④ **이행계획 시정요청 반영 · 제출** : 관장기관은 시정된 이행계획 확인 즉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5.2.2 이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제38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① (생략)
-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연도를 시작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계획 수립의 세부적인 작성양식 및 방법 등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1. 사업장의 조직경계에 대한 세부내용(사업장의 위치, 조직도, 시설배치도 등을 포함한다. 다만, 동일한 형태의 시설이 다수인 경우 대표 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의 목록과 세부 내용
 3. 각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계산방식 또는 측정방식) 및 산정등급(Tier)의 적용현황과 이와 관련된 내용
 4.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와 관련된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의 내용
 5. 활동자료의 설명 및 수집방법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
 6.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과 관련하여 활동자료의 불확도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설명
 7.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8.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 또는 적용하여야 하는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계획 또는 개발방법, 시험 분석 기준 등에 관한 설명
 9. 연속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시기,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적용시기 등에 관한 설명
 10. 조직경계, 배출활동, 배출시설,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산정등급(Tier) 등과 관련하여 이전 방법론 대비 변동사항에 대한 비교·설명, 사업장별 온실가스관리목표 및 관리범위
- ④ (생략)

해 설

○ (제3항) 이행계획서의 작성

- 이행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본 해설서 별첨 1.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공통)를 참고한다.
- 이행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조직경계, 배출활동, 활동자료 수집방법, 불확도,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 활동 등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22.2)」을 준용한다.



5.2.3 이행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



지침 제39조(이행계획 수립의 적용 특례)

- ① 관리업체는 이행계획을 제출함에 있어 제11조의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각 호의 내용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관리업체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목표를 해당 소량배출사업장도 포함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이행계획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제1항)** 이행계획 제출 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 외의 내용을 생략 할 수 있다.
 -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영 제21조제2항제3호)
 -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사용량(영 제21조제2항제4호)
- **(제2항)**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감축목표를 소량배출사업장에도 포함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영 제21조제2항) 이행계획 작성 시 포함사항
 - 업체의 사업장 현황 등 일반정보
 - 사업장별 온실가스관리목표 및 관리범위
 -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사용량
 - * 지침 별지 제7호서식(이행계획서) ‘2-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내 간접 배출량에 포함하여 작성
 -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3 관장기관의 이행계획 시정요청 및 개선명령



지침 제38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

□ 지침 제38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③ (생략)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소관 관리업체의 이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한 이후에도 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업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된 이행계획을 받는 즉시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제35조(개선명령)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연도 이행계획에 개선계획을 반영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38조제4항) 관장기관의 시정요청

- 관장기관에서 이행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업체에게 시정요청을 내릴 수 있다. 관장기관의 이행계획 확인 및 평가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장의 조직경계에 대한 세부내용(사업장의 위치, 조직도, 시설배치도 등을 포함)
 -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의 목록과 세부 내용
 - 각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계산방식 또는 측정방식) 및 산정등급(Tier)의 적용현황과 이와 관련된 내용
 -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와 관련된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의 내용
 - 활동자료의 설명 및 수집방법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
 -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과 관련하여 활동자료의 불확도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설명
 -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 또는 적용하여야 하는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계획 또는 개발방법, 시험 분석 기준 등에 관한 설명
 - 연속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시기,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적용시기 등에 관한 설명
 - 조직경계, 배출활동, 배출시설,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산정등급(Tier) 등과 관련하여 이전 방법론 대비 변동사항에 대한 비교·설명, 사업장별 온실가스관리목표 및 관리범위

○ (제35조제2항) 관리업체의 개선명령 반영

-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이행실적이 측정·보고·검증 방법의 적용 기준이 미흡한 경우에는 관리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개선명령 이행연도 이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행실적 확인 및 행정처분

- 6.1 이행실적 확인 개요
- 6.2 이행실적 확인
- 6.3 이행실적 확인에 따른 개선명령

제 6 장

이행실적 확인 및 행정처분



본 장에서는 관리업체가 목표이행연도의 배출저감 활동을 수행한 이후 이행실적 확인에 대한 개요, 관리업체별 확인방법, 확인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알아본다.

6.1 이행실적 확인 개요

6.1.1 이행실적 확인 정의 및 목적

○ 정의

- 이행실적 확인은 관리업체가 이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이행계획에 대해 목표 이행 후 지침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관장기관이 최종 목표 달성여부 등을 평가한다.
- 관장기관은 관리업체별 최종 이행실적 확인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그 사유와 결과를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하고 관련 근거자료 등을 관리한다.
- 관리업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관장기관의 개선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센터에 제출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6.2 이행실적 확인

6.2.1 이행실적 확인을 위한 배출허용량 재조정(해당 시)



지침 제33조(목표 달성의 평가 등)

-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에 앞서 관리업체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설정한 온실가스관리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존 배출시설을 일정기간 이상 미가동하거나 폐쇄한 경우 실제 가동에 따른 배출량 산정
 2. 목표설정 시 고려했던 신·증설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실질 가동일수 및 가동시간, 가동률을 고려하여 배출량을 산정
 3. 합병·분할 또는 영업·자산 양수도, 조직경계 변경 등으로 전체 배출량이 변동된 경우 당초 목표가 설정된 부분에 한정하여 변경된 조직경계로 구분하여 배출량 산정
 - 4.~10. (생략)
- ③~⑥ (생략)

해설

○ 온실가스 관리목표 조정 대상

- (제2항제1호) 배출시설을 일시 중지한 경우

- 배출시설의 일시중지는 목표설정 당시의 기준연도 배출량 5,000톤 이상인 배출시설이 이행연도 내 시설 또는 설비군의 일부가 일정기간(연속으로 30일 이상)동안 가동이 중지된 경우를 말한다.
- 단, 업종 특성에 따라 관장기관에서 배출량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평가방안

○ 기준연도 배출시설 가동기간에서 중지기간 비율을 반영하여 배출허용량을 조정한다.
다만, 설비군의 경우 “폐쇄”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한다.

배출시설이 일정기간 가동이 중지된 경우 예시

- A관리업체의 배출시설(1)은 배출허용량이 20,000톤으로 설비점검으로 인해 이행연도 내 연속 30일 동안 가동이 중지되었다. 이때 조정 배출허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기준연도 가동일수	일시중지 기간	배출허용량(tCO ₂ -eq)
300일	2014.03.25. ~ 04.24. (30일)	20,000

$$20,000 - \{20,000 \times (30/300)\} = 18,000$$

- ▷ 배출시설(1)은 기준연도 가동기간과 중지기간의 비율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배출허용량을 18,000톤으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설비군으로 보고된 배출시설이 일정기간 가동이 중지된 경우 예시

- B관리업체의 배출시설 중 배출시설 a, b, c는 시설군으로 배출시설(2)로 보고를 한다. 2022년도에 각 배출시설에 대해 부분설비로 각 연속 5일, 연속 33일, 비연속 30일 동안 가동 중지 하였다. 이 경우 조정 배출허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부분 시설	기준연도 생산량	배출허용량 (tCO ₂ -eq)	이행연도내 가동중지기간	기준연도 가동기간	비고
a	500	$20,000 \times (500/1000) = 10,000$	연속 5일	360일	—
b	200	$20,000 \times (200/1000) = 4,000$	연속 33일	300일	일시 중지
c	300	$20,000 \times (300/1000) = 6,000$	비연속 30일	300일	—

$$20,000 - (4,000 \times (33/300)) = 19,560$$

- ▷ 배출시설(2)의 해당 부분설비 중 연속 33일 가동중지한 배출시설b만 일시중지에 해당하며, 기준연도 설비별 생산량 비율을 토대로 배출허용량을 할당한 후 중지된 가동 일수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배출허용량을 19,560톤으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 배출시설의 일시중지 제외 사항

- 특정시기 또는 특정상황에만 간헐적으로 가동되는 예비시설 등은 일시중지에 따른 배출허용량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예비시설 증빙을 위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준년도 가동시간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한다.
 - 시설예시) 피크부하 보일러, 비상발전기, 보조보일러 등
- 일시중지 시설 또는 부분 일시중지 설비의 배출량이 기존시설에 전가됨을 증빙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일시중지 시설 또는 부분 일시중지 설비의 배출허용량은 감산에서 제외한다.
 - 제출자료) 기존 일시중지 시설의 부하자료와 일시중지 후 증가된 기존시설의 부하에 대한 증빙자료
- 감축활동으로 인한 시설 또는 부분설비의 일시중지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일시중지 시설 또는 부분 일시중지 설비의 배출허용량은 감산에서 제외한다.
 - 제출자료) 기존시설의 일시중지가 감축활동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 문서 및 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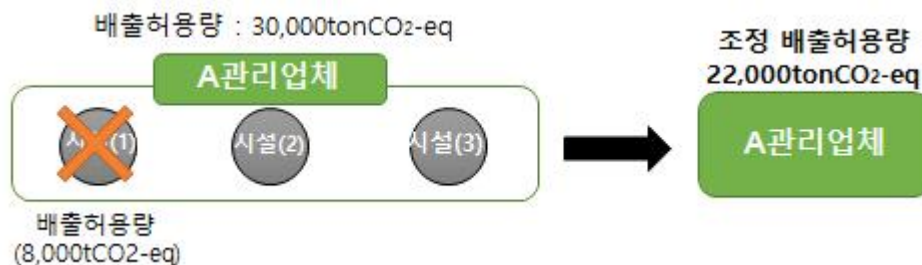
- (제2항제1호) 배출시설을 폐쇄한 경우

- 배출시설의 폐쇄는 관리업체의 이행연도 내 배출시설 또는 설비군의 일부가 물리적으로 제외되거나 폐쇄신고가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 평가방안

- 배출시설 폐쇄의 경우 기존 관리업체 이행연도 배출허용량에서 폐쇄가 발생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을 감산한다.

배출시설 폐쇄에 따른 배출허용량 조정 예시

- A관리업체는 배출허용량이 30,000톤인 관리업체로 이행연도에 배출허용량이 8,000톤인 배출시설(1)을 폐쇄하였다. 이 경우 조정 배출허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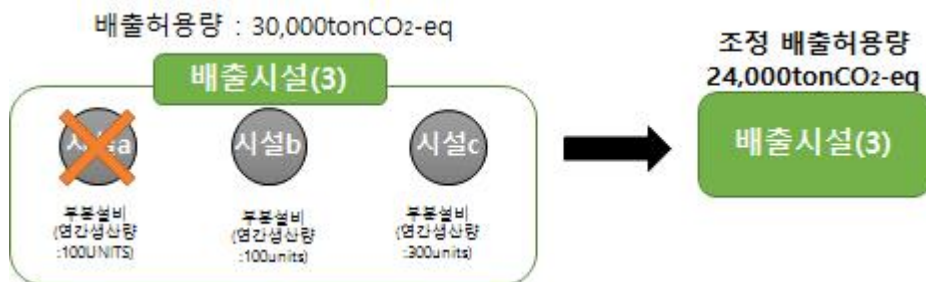


- ▷ A관리업체는 당초 배출허용량 30,000톤에서 폐쇄된 배출시설(1)의 배출허용량 8,000톤을 차감한 22,000톤으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 설비군 일부 폐쇄의 경우 기준연도 설비군 배출량 산정지표에서 이행연도 지표 비율을 반영하여 배출허용량을 감산한다.

설비군의 일부가 폐쇄된 경우 배출허용량 조정 예시

- B관리업체는 배출허용량이 30,000톤인 설비군으로 보고된 배출시설(3)을 가지고 있다. 이 배출시설의 부분설비 중 부분설비(a)를 폐쇄할 경우 조정 배출허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부분시설	기준연도 생산량	배출허용량(tCO ₂ -eq)
a	100	$30,000 \times (100/500) = 6,000$
b	100	$30,000 \times (100/500) = 6,000$
c	300	$30,000 \times (300/500) = 18,000$

- ▷ A관리업체는 배출시설(3)의 당초 배출허용량 30,000톤에서 폐쇄된 시설a의 배출허용량을 기준연도 생산량 비율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재산정한 6,000톤을 차감하고 24,000톤으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 배출시설의 폐쇄 제외 사항

- 폐쇄시설 또는 부분폐쇄설비의 배출량이 기존시설에 전가됨을 증빙할 수 있을 경우, 해당 폐쇄시설 또는 부분폐쇄설비의 배출허용량은 감산에서 제외한다.
- 제출자료) 기존 폐쇄시설의 부하자료와 폐쇄 후 증가된 기존시설의 부하에 대한 증빙자료
- 감축활동으로 인한 시설 또는 부분설비의 폐쇄를 증빙할 수 있을 경우, 해당 폐쇄시설 또는 부분폐쇄설비의 배출허용량은 감산에서 제외한다.
- 제출자료) 기존시설의 폐쇄가 감축활동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 문서 및 분석자료



- (제2항제2호) 계획된 신·증설 시설을 신·증설하지 않거나 이행이 변경된 경우

· 신·증설을 하지 않은 경우 : 신·증설을 하지 않은 경우는 목표설정 당시와 다르게 이행연도 내 물리적으로 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가동계획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평가방안

- 목표설정 당시 배출시설에 부여된 배출허용량을 제외하여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을 재산정한다.

신·증설 시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시

- A관리업체의 감축목표는 신·증설 시설을 반영하여 100,000톤을 받았다. 하지만 신설 예정이던 배출시설(1)에 대해 배출허용량을 50,000톤으로 부여받았으나, 기업의 투자계획 변동으로 인해 이행연도에 설치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조정 배출허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구 분	가동개시일	배출허용량(tCO ₂ -eq)	비 고
조정 전	14.05.01	100,000	-
조정 후	(미설치)	50,000	-50,000

- ▷ 배출시설(1)에 대해 배출허용량을 받았지만 이행되지 못해 총 배출허용량 100,000톤에서 미설치한 배출시설(1)에 대한 배출허용량 50,000톤을 삭감한 50,000톤으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 연간 가동시간 변경 : 연간 가동시간 변경은 신·증설 시설이 목표설정 당시 계획한 연간 가동시간보다 실제 연간 가동시간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평가방안은 아래와 같다.

- 신·증설시설의 목표설정 협의 시 설정한 연간 가동시간 대비 이행연도 실제 연간 가동시간의 비율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을 조정한다.

연간 가동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예시

- A관리업체는 목표협의 시 신설시설(1)에 대하여 2,000hr/yr로 예상하고 배출허용량을 75,000톤을 부여받았으나 투자 계획의 변경으로 실제 가동시간이 2,500hr/yr로 변경되었을 경우 조정 배출허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구 분	설계용량	연간가동시간 (hr/yr)	배출허용량 (tCO ₂ -eq)	비 고
조정 전	100t/h	2,000	75,000	-
조정 후		2,500	93,750	+18,750

$$75,000 \times (2,500 / 2,000) = 93,750$$

- ▷ A관리업체는 신설시설(1)의 연간가동시간 증가로 배출량이 18,750톤 증가하여 배출허용량을 93,750톤으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연간 가동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예시

- A관리업체는 목표협의 시 신설시설(2)에 대하여 1,500hr/yr로 예상하고 배출허용량을 32,000톤을 부여받았으나 투자 계획의 변경으로 실제 가동시간이 900hr/yr로 변경되었을 경우 조정 배출허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구 분	설계용량	연간가동시간 (hr/yr)	배출허용량 (tCO ₂ -eq)	비 고
조정 전	100t/h	1,500	32,000	—
조정 후		900	19,200	-12,800

$$32,000 \times (900 / 1,500) = 19,200$$

- ▷ A관리업체는 신설시설(2)의 연간 가동시간 감소로 배출량이 12,800톤이 감소하여 배출허용량을 19,200톤으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 사용용량* 변경 : 신·증설시설의 사용용량 변경은 신·증설시설의 목표설정 시 고려된 사용용량 대비 실제 사용용량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평가방안은 아래와 같다.

* 사용용량 = 설계용량 × 부하율(설계용량 대비 평균 사용용량)

- 목표설정 시 협의된 사용용량 대비 실제 사용용량 비율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을 재산정한다.

사용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예시

- A관리업체는 중장기 생산계획 변동으로 인해 목표설정 시 고려된 사용용량 대비 30% 감소된 용량으로 신설시설(1)이 설치되었다. 이 경우 조정 배출허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구 분	사용용량	연간가동시간 (hr/yr)	배출허용량 (tCO ₂ -eq)	비 고
조정 전	100t/h	900	45,000	—
조정 후	70t/h	900	31,500	-13,500

$$45,000 \times (70 / 100) = 31,500$$

- ▷ A관리업체의 신설시설(1)이 사용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13,500톤 감소되어 배출허용량을 31,500톤으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사용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예시

- A관리업체는 중장기 생산계획 변동으로 인해 목표설정 시 고려된 사용용량 대비 50% 증가된 용량으로 신설시설(2)이 설치되었다. 이 경우 조정 배출허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구 분	사용용량	연간가동시간 (hr/yr)	배출허용량 (tCO ₂ -eq)	비 고
조정 전	100t/h	900	45,000	—
조정 후	150t/h	900	67,500	+22,500

$$45,000 \times (150 / 100) = 67,500$$

- ▷ A관리업체의 신설시설(2)이 사용용량 증가로 배출량이 22,500톤이 증가하여 배출허용량을 67,500톤으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 신·증설시설 조정항목 제외 사항

- 생산량 원단위를 통해 예상배출량을 산정한 업체는 생산실적 변경이 신·증설시설을 수반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신·증설시설 용량 비율만큼 배출허용량에서 조정한다.

- (제2항제3호) 기존시설 조정항목

- 인수 및 합병 : 관리업체가 이행연도 내 타 관리업체, 비 관리업체의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비 관리업체가 이행연도 내 타 관리업체의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조직경계 변동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평가방안은 아래와 같다.

- 관리업체가 다른 관리업체의 사업장, 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해당 연도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에 피인수 사업장,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을 가산하여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관리업체가 다른 관리업체의 사업장, 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예시

- A관리업체는 이행연도에 B관리업체를 인수하였다. A관리업체는 배출허용량이 50,000 tCO₂-eq이고 B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은 60,000 tCO₂-eq이다. 이 경우 A관리업체의 조정 배출허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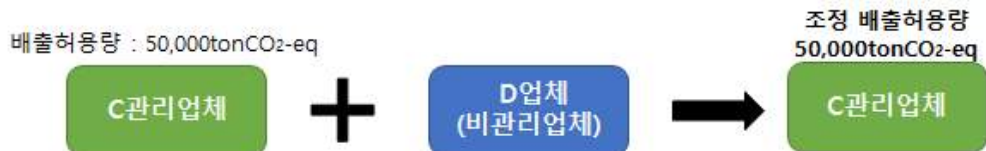


- ▷ 목표관리제 권리·의무가 승계됨에 따라 B관리업체가 부여받았던 배출허용량 60,000톤 전량을 A관리업체로 이관하고, A관리업체는 당초 50,000톤에 이관 받은 60,000톤을 합산한 배출허용량 110,000톤으로 조정하여 평가받는다.

- 관리업체가 비 관리업체의 사업장, 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배출허용량 조정은 없으며, 인수한 비 관리업체 사업장 및 배출시설은 차년도 업체 목표설정 이후 평가 대상에 반영한다.

관리업체가 비 관리업체의 사업장, 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예시

- C관리업체는 이행연도에 비 관리업체인 D업체를 인수하였다. C관리업체의 당초 배출허용량이 50,000 tCO₂-eq이었을 경우 C관리업체의 조정 배출허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 ▷ D업체는 비관리업체이므로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C관리업체는 당초 배출허용량 50,000톤 이행에 대해서만 평가받는다.

- 비 관리업체가 관리업체의 사업장, 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피인수 관리업체 해당분만 평가하고 비 관리업체 해당 분은 차년도 업체목표설정 이후 평가한다.

비 관리업체가 관리업체의 사업장, 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예시

- 비 관리업체인 E업체는 이행연도에 F관리업체를 인수하였다. F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이 35,000 tCO₂-eq일 경우 E업체의 조정 배출허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 ▷ F관리업체에 부여된 목표관리제 권리·의무가 E업체로 승계됨에 따라 부여받았던 배출허용량 35,000톤이 이관되었으며, E업체는 인수한 F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 35,000톤 이행에 대해서 평가받는다.

- 매각 및 분리 : 매각 및 분리는 관리업체가 이행연도 내 사업장, 배출시설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법적으로 분리하여 조직경계 변동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평가방안은 다음과 같다.

- 관리업체가 타 관리업체 또는 비 관리업체에 사업장, 배출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에서 매각·분리대상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이행연도 배출허용량을 감산하여 평가한다.



관리업체가 타 관리업체에 사업장, 배출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예시

- A관리업체는 이행연도에 사업장(1)을 타 관리업체에 매각하였다. A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은 60,000톤이고 사업장(1)의 배출허용량이 10,000톤일 경우 A관리업체의 조정 배출허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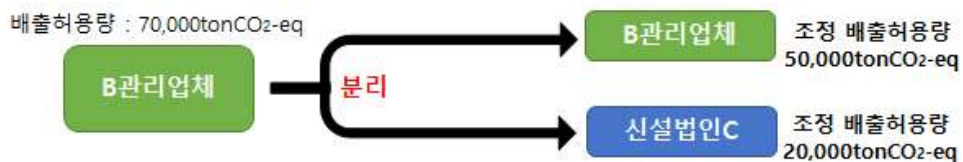


- ▷ A관리업체는 당초 배출허용량 60,000톤에서 매각한 사업장(1)의 배출허용량 10,000톤을 제외한 50,000톤으로 조정하여 평가받는다.

- 관리업체가 법인을 분리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분리된 업체별로 배출허용량을 재설정하여 각각 평가한다.

관리업체가 법인을 분리하는 경우 예시

- B관리업체는 사업장을 분리하여 신설 법인 C를 설립하였다. B관리업체의 당초 배출허용량은 70,000톤이고 신설 법인 C업체의 배출허용량이 20,000톤 일 때 B관리업체의 조정 배출허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 ▷ B관리업체의 목표관리제 권리·의무가 승계됨에 따라 C업체는 당초 B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 20,000톤 이행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B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은 분리된 C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제외한 50,000톤으로 조정하여 평가받는다.

6.2.2 목표달성 평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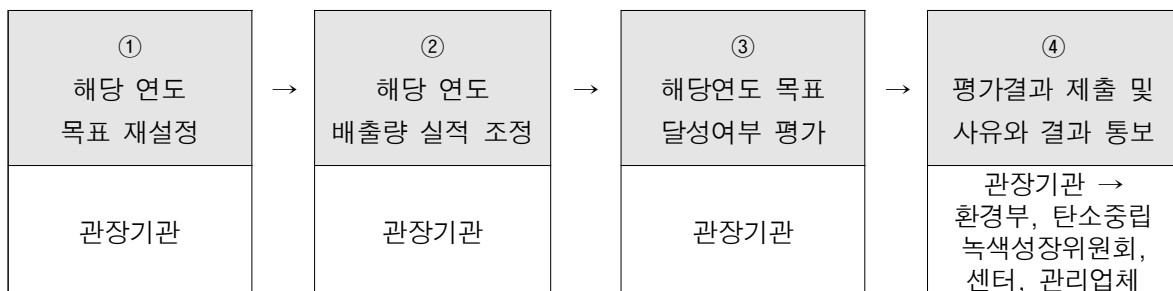


지침 제33조(목표 달성의 평가 등)

-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 ② (생략)
-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연도별 온실가스관리목표 설정 시 고려하지 않은 시설(신·증설 등을 말한다)에 대한 배출량을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목표 조정결과와 최종 목표 달성여부 평가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그 사유와 결과를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하고 관련 근거자료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목표와 배출량 조정결과와 사유, 목표 달성여부 평가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받은 센터는 이를 제6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지체 없이 반영하고 그 이력을 관리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목표 달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해 설

○ 이행실적 평가 절차



- ① **해당 연도 목표(배출허용량) 재설정** : 목표달성 평가 전 관리업체별로 조정대상 배출량을 확정하여 감축목표 협의 시 확정된 목표에서 가감한 후 해당 연도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과 목표 이행연도 배출량을 비교하여 목표설정 이후 이행기간 동안의 배출량 변동사항(일정기간 미가동, 폐쇄, 신·증설 이행여부 및 변동사항, 합병·분할, 조직경계 변경 등)을 조정대상 배출량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② 해당 연도 배출량 실적 조정 : 관리업체의 배출량 실적에서 예외사항(신재생 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평가 특례 등)을 반영하여 해당 연도 배출량 실적(이행실적)을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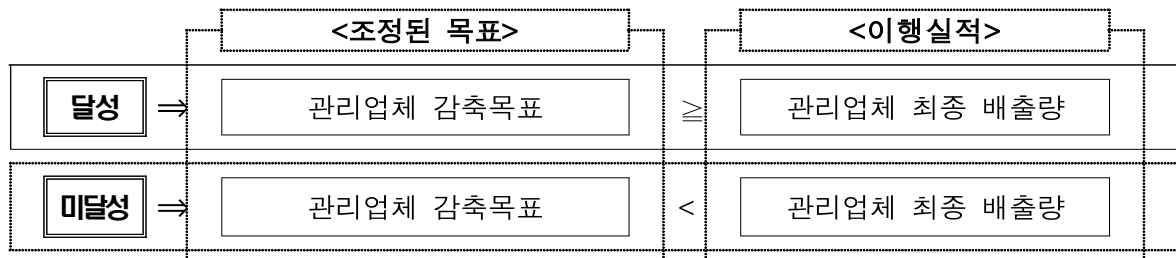
③ 해당 연도 목표 달성여부 평가 : 해당 연도 최종 목표 재설정 값(조정된 배출허용량)과 조정된 배출량 실적(이행실적)을 비교하여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한다.

④ 평가결과 제출 및 사유와 결과 통보 : 해당 연도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이 취합한 안전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와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와 관리업체에 통보한다.

○ 이행실적 평가 방법

① 평가방법

- 관리업체의 최종확정된 배출량이 조정된 배출허용량 이하일 경우 목표달성으로 평가한다.



- 조정된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이 최종 이행실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목표달성으로 평가한다.
- 조정된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이 최종 이행실적보다 작을 경우 목표 미달성으로 평가한다.
- 목표설정과 이행실적의 산정방법은 시계열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매개변수(발열량, 배출계수 등)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목표설정 시와 이행연도 명세서 배출량 산정방법이 변경된 경우, 목표설정 시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실적을 조정한다.
 - 목표설정 시와 이행연도 명세서 배출량 산정 매개변수가 변경된 경우, 이행실적은 변경된 최신의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실적을 평가한다.
 - * 지침개정으로 인해 적용되는 배출계수의 산정등급(Tier)이 변경되는 경우 당시 활용한 명세서 상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이행연도 실적을 평가한다.

② 신재생 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평가 특례

- 이행년도 감축목표 미달성 업체 중 조직경계 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자체 전력 및 열 공급 시 감축실적은 가중치(10%)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중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가중치 부여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 감축량은 인정하지 않는다.

[감축실적 이행평가 가중치 부여 여부(에너지원별)]

분 류	화석연료 포함여부	가중치 부여여부
태양에너지	X	○
바이오에너지	X	△
풍력	X	○
수력	X	○
연료전지	△	X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	X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	X
해양에너지	X	○
폐기물에너지	△	△
지열에너지	X	○
수소에너지	○	X

- ※ 석유제품 등 화석연료와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 에너지의 경우 생물유기체분만 바이오에너지로 간주한다.
- ※ 석유제품 등 화석연료와 혼합되어 있는 폐기물 에너지의 경우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 폐기물에너지로 간주한다.
- ※ 수소에너지의 경우 화석연료가 포함되지 않은 그린수소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한다.
- ※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에너지의 경우 화석연료 포함여부 등을 총괄·관장기관이 검토·협의하여 가중치 부여 기준 마련 후 적용한다.

신재생 에너지 특례 예시

- A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은 100,000톤, 배출량은 101,000톤으로 감축 목표를 미달성 하였으나 2014년 3월 가동을 개시한 3MW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연간 약 15,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실적이 있다. 이 부분을 적용한 이행실적은 어떻게 조정 평가되는가?

$$(\text{신재생 에너지 사용실적 가중치 적용값}) \quad 15,000 \times 0.1 = 1,500$$

$$(\text{이행실적 평가}) \quad 100,000 - (101,000 - 1,000) = 0$$

- ▷ A관리업체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실적을 인정한 가중치 10% 적용 값은 1,500톤임
- ▷ 다만, 신재생 에너지 가중치 부여로 발생한 초과감축량(500톤)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행실적 평가 시에는 1,000톤만 인정

③ 목표 설정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신·증설 시설

-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증설에 따른 실적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이 해당연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실적은 이행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청정개발체제사업(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의 경우 해당 청정개발체제사업의 유형, 적용범위, 감축량 등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목표설정 시 제외될 경우, 이행실적 평가에서도 제외한다.

* 지침 제31조제2항



6.2.3 이행실적 확인



지침 제34조(이행실적의 확인)

-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36조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이행실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여부
 2.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기준 준수여부
 3. 제33조에 따른 목표 달성 평가
 4. 개선명령의 이행여부
 5.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여부 등
-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리업체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4조제1항의 확인결과 계획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이 취합한 안건을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해설

○ (제1항) 부문별 관장기관의 이행실적 확인 사항

- (제1호) 이행실적의 확인은 먼저 작성된 이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감축활동을 수행한 후 작성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서에 작성된 내용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측정방법, 산정등급의 적용, 품질관리/품질보증 활동 등이 연계되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제2호) 이행실적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산정방법론을 사용하였는지, 매개변수를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 등의 산정·보고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다.
- (제3호) 감축 이행년도 동안 감축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4호) 이행계획에 작성된 개선명령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다.

6.3 이행실적 확인에 따른 개선명령

6.3.1 개선명령



지침 제35조(개선명령)

-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시행령 제21조제9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관리업체의 실적이 연도별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개선기간이 이행연도와 중복되는 업체에게는 개선을 명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연도 이행계획에 개선계획을 반영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 등 관리업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해 설

- **(제1항)** 부문별 관장기관은 아래와 같은 관리업체에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행연도 최종확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조정된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관리업체
 - 이행실적의 측정·보고·검증 방법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적용 기준에 미흡한 관리업체
- **(제2항)** 제1항과 같이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다음연도 이행계획에 개선명령 사항을 반영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서의 개선명령 반영 예시

- A관리업체는 2021년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에 대해서 2022년에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행계획에 개선명령을 반영하고자 할 때 몇 년도의 이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는가?
- ▷ 2021년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에 대하여 2022년에 개선명령을 받았을 시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연도(2023년)에 대한 이행계획서에 개선명령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고 해당연도(2023년)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2024년 제출)에 관장기관의 개선명령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시

[사례①]

이행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평가결과	미달성	미달성	미달성	미달성	미달성
개선명령 이행기간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22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기간	'23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기간	'24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2차 개선명령 이행기간
행정조치 (이행기간)	개선명령 (‘24.1.1~12.31)	개선명령 (‘25.1.1~12.31)	과태료부과 및 2차 개선명령 (‘26.1.1~12.31)	과태료부과 및 2차 개선명령 (‘27.1.1~12.31)	2차 과태료 및 3차 개선명령 (‘28.1.1~12.31)

[사례②]

이행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평가결과	미달성	미달성	달성	미달성	미달성
개선명령 이행기간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22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기간	'23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기간	해당없음
행정조치 (이행기간)	개선명령 (‘24.1.1~12.31)	개선명령 (‘25.1.1~12.31)	－	과태료부과 및 2차 개선명령 (‘27.1.1~12.31)	개선명령 (‘28.1.1~12.31)

○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에너지 미달성의 경우)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20년 에너지 절약목표 미달성(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가 개선명령 이행연도(2022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성인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으로 처분한다.

－ 목표 미달성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에너지 절약목표가 미달성인 경우 모두 적용한다.

이행연도	2019		2020		2021	2022
평가결과	온실가스	에너지	온실가스	에너지	온실가스	온실가스
	달성	미달성	달성	미달성	미달성	달성
개선명령 이행기간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19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기간	'20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기간
행정조치 (이행기간)	개선명령 (‘21.1.1~12.31)		개선명령 (‘22.1.1~12.31)		과태료부과 및 2차 개선명령 (‘23.1.1~12.31)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해설서

별첨 1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 (공통)



지침 제38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이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시를 작성하여 모든 업종에서 참조 가능한 이행계획서 작성방법을 제시한다.

1. 관리업체 총괄정보 작성 예시

- “(주)환경에너지”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방에 4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각 사업장은 발전, 폐기물, 철강, 석유화학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다. (주)환경에너지의 업체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53,349 tCO₂-eq으로 2021년에 업체단위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되었다.

－ 사업장 현황





○ 관리업체 총괄정보 기입 [별지 제7호 서식]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서

(제38조제3항관련)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당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보고인 (주)환경에너지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장관

귀하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1 관리업체 총괄 정보

1-1.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정보																		
(1)	법 인 명	(주)환경에너지										(2)	대표자	***		(3)	대상년도	2023
(4)	법인등록번호	0	0	0	0	0	0	-	0	0	0	0	0	0	(5)	지정업종 (대표업종)	****	
(6)	법인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										(7)	법인 전화번호	02-000-****				
(8)	법인담당부서	공무팀			(9)	법인 담당자		홍길동				(10)	직 급	차장				
(11)	담 당 자 전화번호	02-000-****			(12)	담당자 휴대폰		010-1234-****				(13)	담당자 이메일	hong@xxx.com				
(14)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철강, 석유제품, 전기, 폐기물처리			(15)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철강 : ***톤 석유제품 : *** liter 전기 : *** MWh 하수처리 : *** 톤				(16)	상 시 종업원 수	650명				
(17)	당해연도 매 출 액 (백만원)	***백만원			(18)	당해연도 에너지비용 (백만원)		***백만원				(19)	자본금 (백만원)	***백만원				
(20)	중소기업여부	N			(21)	관리업체 지정구분												

[Point]

-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은 사업장 업종분류에 따른 주요 생산제품을 기입. 단, 폐기물부문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항목을 기입
- 이행계획서 보고연도가 2022년이면 (15)~(20)항목도 2022년 기준으로 해당사항을 기입

[작성방법]

- (1), (2) 관리업체 일반정보 : 관리업체, 본사 법인 정식 명칭 및 법인 대표자명을 기입
- (3) 대상연도 : 보고대상연도 기입
- (4) 법인등록번호 : 해당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기입
- (5) 지정업종(대표업종)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해당 법인의 지정업종 기입
- (6) 법인 소재지 : 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기입, 본사가 별도로 없을 시, 업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대표 사업장의 도로명 기준 주소를 기입
- (7) 법인 전화번호 : 법인의 본사 대표전화번호를 기입
- (8)~(13) 법인 담당자 정보 : 법인 담당자 정보 기입
- (14) 주요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 법인 업종분류에 따른 주요 생산제품을 기입 (단, 폐기물부문은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항목을 기입)
- (15)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 주 생산제품(처리물질)에 따른 연간 생산량(처리량)을 기입
- (16) 상시 종업원수 : 해당연도 법인 상시종업원 수 기입
- (17) 당해연도 매출액 : 해당 법인의 매출량 산정 조직경계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모두 합산한 명세서 보고 당해연도 매출액(개별 재무제표를 따름) 기입
- (18) 당해연도 에너지비용 : 해당 법인의 매출량 산정 조직경계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모두 합산한 명세서 보고 당해연도 에너지비(원료구입비는 제외)를 기입



- (19) 자본금 : 법인의 당해연도 자본금 기입
- (20) 중소기업여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대한 중소기업이면 Y, 중소기업이 아니면 N을 기입
- (21) 관리업체 지정구분 : 관리업체 지정기준에 대해 지침 제8조제2항을 참고하여 ‘제1호’ 또는 ‘제2호’로 기입
 - 제1호: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0ktCO₂-eq 이상인 업체
 - 제2호: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5k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1-2. 사업장 목록						
(1)	(2)	(3)	(4)	(5)	(6)	(7)
사업장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대표자	사업장 업종	사업장 소재지	소량배출사업장 여부
001	본사	504-00-1****	김동완	xxx	서울 ***	Y
002	사업장1	504-00-2****	신혜성	발전전기업	충남 ***	N
003	사업장2	504-00-3****	전진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전남 ***	N
004	사업장3	504-00-4****	이민우	제철제강 및 합금철제조업	경북 ***	N
005	사업장4	504-00-5****	이순신	지정 외 폐기물처리업	강원 ***	N

※ 관리업체 지정구분이 단일 사업장으로 제2호에 따라 지정된 경우, 1-2. 사업장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작성방법]

- (1)~(6) 사업장 일반정보 : 사업장별 일련번호, 법인 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명,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도로명 기준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입
- (7) 소량배출사업장 여부
 -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3,000 tCO₂-eq 미만인 해당 사업장의 경우 Y를 기입
 - 지침 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제2항에 따라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 소량배출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은 업체 내 모든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의 1000분의 50미만이어야 함

2 사업장별 연차별 목표

2-1.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11)신·증설을 반영한 기준배출량(tCO ₂ -eq)		
												53,499.333		
(1)	(2)	(3)	(4) 기준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tCO ₂ -eq)									(5)		
일련 번호	사업장명	소량배출 사업장 여부	관리업체 지정연도-3 (2018 년)			관리업체 지정연도-2 (2019 년)			관리업체 지정연도-1 (2020 년)			기준연도 배출량 (tCO ₂ -eq)		
			직접 배출	간접 배출	합계	직접 배출	간접 배출	합계	직접 배출	간접 배출	합계	직접 배출	간접 배출	합계
관리업체 합계 (사업장 배출량 합계)			50,283	2,416	52,699	50,899	2,492	53,391	51,436	2,522	53,958	50,872	2,477	53,349
001	본사	Y	72	22	94	75	28	103	76	25	101	74	25	99
002	사업장1	N	17,185	450	17,635	17,206	461	17,667	17,212	466	17,678	17,201	459	17,660
003	사업장2	N	23,899	480	24,379	24,205	485	24,690	24,457	490	24,947	24,187	485	24,672
004	사업장3	N	6,952	1,254	8,206	7,235	1,305	8,540	7,509	1,322	8,831	7,232	1,294	8,526
005	사업장4	N	2,175	210	2,385	2,178	213	2,391	2,182	219	2,401	2,178	214	2,392

(6)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업체의 기타목표 [제31조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재]		
	(7)	(8)	(9)	(10)	
목표관리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tCO ₂ -eq)	[기타목표명 1] (단위)	[기타목표명 2] (단위)	환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tCO ₂ -eq)	
2023	52,282	발전원단위 감축 (tCO ₂ -eq/MWh)	-	1,500	



[Point]

- 관리업체의 지정연도의 직전 3개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배출량,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기입
- 기 제출 명세서를 참고하여 작성 가능
- 소량배출사업장 기준(지침 제11조 관련)
 -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3,000 tCO₂-eq 미만인 사업장
 - 신설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시 최초 가동연도를 포함한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소량배출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은 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의 1000분의 50미만이어야 함

[작성방법]

- (1)~(3) 사업장일련번호, 사업장명, 소량배출사업장 여부 기입
- (4), (5)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기입(관장기관 협의 및 조정 결과)
- (6) 목표관리 계획기간 : 제26조(목표관리 계획기간)에 따른 목표관리 계획기간을 기입
- (7)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 관리업체의 감축목표에 따른 배출허용량을 기입
- (8), (9) 관리업체의 기타 목표명 : 제31조(목표의 설정 및 관리 특례)에 따라 설정된 관리업체의 기타 목표명 기입
- (10) 환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 기타 목표를 온실가스 배출허용량(tCO₂-eq)으로 환산한 값 기입
- (11) 신·증설을 반영한 기준배출량 : 신·증설을 반영하여 관장기관과 협상에 따라 설정한 기준배출량 항목을 기입

2-2. 사업장별 연차별 목표

						(5) 신·증설을 반영한 기준배출량 (tCO ₂ -eq)	
						53,499.333	
(1)	(2)	(3)	(4)				
일련번호	사업장명	기준연도 배출량 (tCO ₂ -eq)	온실가스 감축목표(tCO ₂ -eq)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관리업체(대표법인) 감축목표		53,349	52,282	51,236	50,212	49,207	48,223
001	본사	99					
002	사업장1	17,660	17,342	17,002	16,666	16,335	16,007
003	사업장2	24,672	24,228	23,731	23,251	22,789	22,333
004	사업장3	8,526	8,373	8,210	8,047	7,880	7,724
005	사업장4	2,392	2,339	2,293	2,248	2,203	2,159

[Point]

- 관리업체의 사업장별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기입. (2차년도 ~ 5차년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업체의 자발적 감축목표 기입)

[작성방법]

- (1), (2) 사업장일련번호, 사업장명 기입
- (3) 기준연도 배출량 :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기입(“2-1.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현황” (5) 동일)
- (4) 온실가스 감축목표 : 관리업체의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제28조, 제29조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량)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기입
- (5) 신·증설을 반영한 기준배출량 : 신·증설을 반영하여 관장기관과 협상에 따라 설정한 기준배출량 항목을 기입



2. 사업장 일반정보 작성

- 관리업체인 (주)환경에너지의 본사 및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사업장 일반정보’를 작성한다.
- 조직경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장 약도, 사진, 시설배치도, 배출시설별 공정도를 기입한다.
필요시 조직경계 설정과 관련된 추가설명을 첨부한다.
- 사업장 일반정보 기입 [별지 제7호 서식]

3 사업장 일반정보

3-1.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1)	사업장명	사업장1										(2)	대표자	신혜성	(3)	사업장 일련번호	002		
(4)	사업자등록번호	5	0	4	0	0	2	*	*	*	*	(5)	업 종	발전기업					
(6)	사업장 소재지	충남 보령시 ****										(7)	사업장 전화번호	042-323-****					
(8)	사업장 담당부서	환경정책팀						(9)	사업장 담당자	홍루몽			(10)	직 급	과장				
(11)	담당자 전화번호	042-323-****						(12)	담당자 휴대폰	010-3864-****			(13)	담당자 이메일	korea2@korea.co.kr				
(14)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전기						(15)	연간생산량 또는처리량	*** MWh			(16)	상 시 종업원수	90명				
(17)	당해 연도매출액	****						(18)	당해연도 에너지비용	*** 백만원			(19)	자본금	****				

[Point]

- 위 양식은 관리업체 내 사업장 수만큼 각각 작성해야 함
-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은 사업장 업종분류에 따른 주요 생산제품을 기입. 단, 폐기물부문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항목을 기입
- 이행계획서 보고연도가 2022년이면 (15)~(20)항목도 2022년 기준으로 해당사항을 기입

[작성 방법]

- (1)~(7) 사업장 일반정보 : 관리업체 내의 사업장 일반정보 기입
- (8)~(13) 사업장 담당자 정보 :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을 관리하는 담당자 정보 기입
- (14) 주요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정보 : 사업장 업종분류에 따른 주요 생산제품을 기입 (단, 폐기물부문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항목을 기입)
- (15)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 주 생산제품의 연간 생산량을 기입 (단, 폐기물부문은 처리량을 기입)
- (16) 상시 종업원수 : 해당연도 사업장 내 상시종업원 수 기입
- (17) 당해연도 매출액 : 해당 사업장의 해당연도 매출액(개별 재무제표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입
- (18) 당해연도 에너지비용 : 해당 사업장의 해당연도의 에너지비용을 기입 (단, 원료구입비는 에너지비용에서 제외)
- (19) 자본금 : 사업장 해당연도 자본금 기입



3-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사업장의 사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출처 및 다운로드 날짜 - 구글어스 이용하여 2022.11.20. 다운로드 2) 기타 - 해당없음	

[Point]

- 사진은 사업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위성사진(예 : 구글어스)을 다운받아 첨부하며 다운받은 사진은 날짜를 표시하여야 함
- 위성사진보다 더 정확하고 최신 날짜로 업데이트된 사진이 있을 경우 해당 사진 첨부 가능
- 사진에는 사업장의 조직경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관리업체 소유가 아닌 배출시설이 조직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별도 표시하고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에 자세히 기입하여야 함

3-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사업장의 시설배치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 - 해당 없음 2) 타 법인 배출시설의 조직경계 포함에 대한 설명 - 사업장1의 사업장 부지 내 모든 시설은 사업장1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받음 3) 신설 시설에 대한 설명 - 신설시설 없음 4) 증설 시설에 대한 설명 - 증설시설 없음 5) 폐쇄(부분폐쇄) 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6) CD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7) 신규산정방법론 적용 배출시설 - 해당사항 없음 8) B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9) 할당을 받지 않은 배출시설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 시설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호기성처리이므로 배출시설 보고 대상에서 제외함



[Point]

- 조직경계에 포함되는 배출시설과 제외되는 배출시설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타 법인의 배출시설이 보고대상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연관되어 조직경계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
 - 운영통제 범위 내에 있을 때
 - 타 법인이 배출시설과 연관된 배출시설의 활동자료의 합산 값만이 모니터링 되며, 타 법인 배출시설의 활동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없을 때
- 타 법인의 배출시설이 보고대상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연관되어 있으나 조직경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운영통제 범위 밖의 배출시설이고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활동자료가 모니터링 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보고대상 사업장의 조직경계에서 제외하여야 함. 해당 사업장은 운영통제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조직경계에서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에 대한 법인 정보와 해당사유 등을 “(2)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에 자세히 기입하여야 함
- 조직경계 결정 방법은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조직경계 결정방법 참고
- 건설 업종의 경우, 다수 건설 현장(사이트)을 한 사업장으로 묶어서 보고 할 수 있으나 건설현장리스트 파일을 시설배치도 항목에 첨부하고 대표 공정도 또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건축·토목·플랜트 등 공사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온실가스 흐름 및 에너지 흐름이 상이할 경우 공정도를 구분하여 작성·첨부하여야 함

3-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사업장의 공정도(온실가스 및 에너지 흐름도 포함)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공정설명 - 화력발전시설은 LNG를 연소시켜 발전과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 2) 온실가스 흐름 - 화력발전시설에 투입된 LNG의 연소에 의해 온실가스가 발생함 - 발생된 온실가스는 굴뚝으로 전량배출 - 온실가스 흐름 파란선으로 표기 3) 에너지 흐름 - 열(스팀)의 흐름은 점선으로 표기 - 에너지 흐름은 초록색 점선으로 표기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Point]

- 에너지 흐름에는 연료·열 및 전기를 포함하여 작성
 - ※ 석유, 가스, 석탄 및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 소량배출사업장의 경우 : 사업장들의 배출활동 구성이 동일하다면 공정도 중에 대표로 1개에 대해서만 제시 가능
(단, 대표공정도를 제시한 소량배출사업장 외 소량배출사업장은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작성 시 공정도를 미첨부하기 때문에 ‘대표공정도를 제시한 소량배출사업장(사업장명 기입)’의 공정도 참조’ 등과 같은 사유를 기입하여야 함)
 - 예 : 소형건물형태 대리점, 통신기지국, 주유소 등
- 공정배출 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정배출 공정도를 추가로 첨부해야 함
- 공정배출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의 공정은 식별되어야 하며, 공정배출이 발생하는 과정(반응식 및 배출 프로세스 (투입 → 대기 중 배출과정))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함



3. 배출시설별 활동자료 측정지점 및 활동자료 모니터링 방법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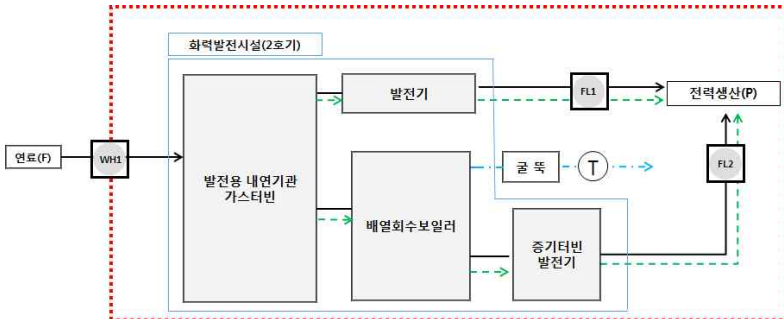
- 관리업체인 (주)환경에너지의 본사 및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하여 각각 ‘활동자료 측정지점’ 및 ‘활동자료 모니터링 측정 방법’ 정보를 작성한다.
- 배출시설별 활동자료 측정지점 확인 및 활동자료 모니터링 측정 방법의 확인 세부절차는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도록 한다.
- 관리업체 배출시설 일반정보

배출시설명	활동자료명	연간 사용량	단위	용도
사업장단위 전력시설	전기	6,000	kWh	건물 가동
화력발전시설(1호기)	B-C유	200,000	liter	발전/판매
화력발전시설(2호기)	LNG	2,500,000	Nm ³	발전/판매
화력발전시설(3호기)	LNG	2,500,000	Nm ³	발전/판매
비상발전기	LNG	1,500,000	Nm ³	비상발전
일반보일러1	LNG	110	Nm ³	난방용
일반보일러2	LNG	120	Nm ³	난방용
승용자동차(3대)	휘발유	1,000	liter	사무용 이동
승합자동차(5대)	경유	20,000	liter	사무용 이동

- 위 관리업체 배출시설 일반정보는 아래 작성 예시의 모든 양식에 해당한다.
- 또한 아래 모든 예시는 사업장1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사업장2, 사업장3, 사업장4도 모두 같은 기준 및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등 기입 [별지 제7호 서식]

4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등

(1) 사업장정보										(2) 배출시설정보			(3) 변동정보		(5) 배출활동		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포인트										
일련 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코드	배출시설명		일련 번호	구분	변경일		코드	배출 활동명	(6)	(7)	(8)	(9)	(10)	(11)			
																			일련번호	세부시설 및 장치 (unit)	온실가스 배출 지점 및 설명	세부장치별 연료·원료 등 활동자료 흐름	측정지점 기호	모니터링 유형			
002		사업장1		5	0	4	0	0	2	*	*	*	0082	화력발전시설		001			unit1	화력 발전시설 (2호기)	굴뚝으로 배출	도시가스(LNG) (F)	WH1	A-1			
(4) 배출시설의 공정도																											
																											
(12) 활동자료 구체적인 수집방법 설명																											
1 0 0 2 기체 연료 연소																											
unit1 화력 발전시설 (2호기) 굴뚝으로 배출 도시가스(LNG) (F) WH1 A-1																											

[작성방법]

- (1), (2) 사업장, 배출시설 정보 :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해당 배출시설의 코드[참고 2]와 배출시설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기입
- (3) 변동정보 : 배출시설의 변동정보와 변경일을 기입(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기존 배출시설인 경우 ‘증설’ 또는 ‘폐쇄예상’ 여부를 구분하여 변경일(가동일 기준)과 기입
 - 신규 배출시설인 경우 ‘신설’로 구분하여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배출시설의 신설일 기입



- (4) 배출시설의 공정도 :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공정도(Block Diagram 등 활용)를 기입(각 배출시설별로 작성)
 - 배출시설(공정)의 조직 경계(boundary), 원료 및 연료, 제품의 흐름, 세부시설의 명칭, 활동자료에 대한 측정지점(모니터링 포인트)의 위치와 기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7)~(10)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호 등으로 표현한다
- (5) 배출활동명 : 배출활동 코드[참고1]와 배출활동명을 기입
- (6) 일련번호 : 세부시설 및 장치(unit)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일련번호는 unit 1, unit 2 순으로 기입한다)
- (7) 세부시설 및 장치(units) : 해당 배출시설(공정)의 조직 경계 내에 있는 세부 장치·기계·설비(unit)에 대한 리스트를 기입
- (8) 온실가스 배출지점 및 설명 : 해당 세부 장치·기계(unit)에서 온실가스가 실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배출구(굴뚝)과 배출형태를 간략하게 서술
- (9) 세부시설별 연료·원료 등 활동자료 흐름의 종류 : 각 세부장치(unit)별로 연료·원료·제품 등 활동자료 흐름(activity stream)를 구분하여 그 종류와 기호를 부여
 - 천연가스(F1), 경유(F2) 등 실제 투입되는 연료명칭을 세부적으로 기입
 - 기호는 연료의 경우 “F”(Fuel), 원료의 경우 “R”(Raw material), 제품의 경우 “P”(Product)로 구분함
- (10) 측정지점 기호 : 각 세부시설별, 활동자료 흐름별 활동자료에 대한 측정기기의 기호를 기입함
 - 측정기기의 종류는 “WH”, “FL”, “(FL)”로 구분함
- (11) 모니터링 유형 :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8]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에 제시된 모니터링 유형을 각 측정지점(모니터링 포인트)별로 구분하여 해당 유형의 기호를 기입
 - 예 : A-1, A-2, A-3, B, C-1, C-2, C-3, C-4 등
- (12) 활동자료의 구체적인 수집방법 설명 : 활동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측정지점, 측정방법과 관련된 특이사항 또는 세부적인 설명 기입

○ 활동자료의 모니터링(측정) 방법 기입 [별지 제7호 서식]

5 활동자료의 모니터링(측정) 방법

5-1.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방법 개요

(1) 사업장 정보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2) 배출시설 정보	일련번호	시설코드	배출시설명	시설규모
	002	사업장1	5	0	4	—	0	0	—	2	*	*		*	*	001	0 0 8 2

(3) 활동자료 흐름 종류	(4) 측정지점 기호	(5) 모니터링 유형	(6) 측정기기 이름	(7) 측정기기 고유번호	(8) 측정기기의 검사 등				(9) 불확도 (+/- %)	(10) 측정값의 표준상태 보정여부 (온도, 압력 등)
					형식승인 유무	정도검사 유무	최근 정도검사일 (정도검사 주기)	최근 일반시험 등 실시일		
도시가스(LNG)	WH1	A-1	유량계	76075238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2022.05.05 (연 1회)		±0.3	☒ 예 / ☐ 아니오

[Point]

- 배출시설 정보의 시설규모는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5]에서 제시한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A, B, C)에 해당되는 등급을 기재

[작성방법]

- (1), (2) 사업장, 배출시설 정보 : 해당 배출시설의 사업장 정보와 배출시설 정보 기입
- (3), (4), (5) 활동자료 흐름 종류, 측정지점 기호, 모니터링 유형 : “4.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등”의 (9)~(11) 내용 기입
- (6) 측정기기 이름 : 측정지점 기호에 따라 해당 활동자료를 측정하는 측정기기 이름을 기입하며,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설치’라 기입
(단, 측정기기의 이름 및 종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량기 종류 등을 참조)
- (7) 측정기기 고유번호 : 측정기기별로 제품 일련번호, 자체 관리번호 등 고유번호를 기입하며,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작성하지 않음
- (8) 측정기기 검사 :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여부, 정보검사 여부, 최근 정도검사 실시일, 일반시험 실시일 등을 기입하며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작성하지 않음
(단, 최근 정도검사 실시일에 정도검사 주기를 괄호로 (연 1회) 등 같은 방식으로 기입)
- (9) 불확도 : 정도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측정기기의 불확도를 기입 (단, 정도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불확도를 직접계산하거나 계산하지 못할 경우 ‘불가’로 기입)
- (10) 표준상태 보정여부 : 측정기기의 표준상태(273.15K, 1기압) 보정여부를 체크



5-2. 정도검사 미 실시 측정기기의 실시계획 등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1) 사업장 정보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2) 배출시설 정보	일련번호	시설코드	배출시설명	시설규모
	002	사업장1	5	0	4	0	0	2	*	*	*	*		004	0055	일반 보일러시설	A

(3)	(4)	(5)	(6)	(7)	(8)		(9)	
활동자료 흐름 종류	측정기기 현황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등 관리계획			
	측정지점 기호	모니터링 유형	측정기기 이름	측정기기 고유번호	측정기기의 신규 설치 계획	소요액(천원)	기 설치된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실시계획	소요액(천원)
도시가스(LNG)	(FL)1	C-1	유량계	852369	-	-	2023년 3월 20일	100
도시가스(LNG)	(FL)2	C-1	유량계	852370	-	-	2023년 3월 20일	100

[Point]

- 정도검사를 미 실시한 측정기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도검사 실시계획을 작성하되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함
- 배출시설 정보의 시설규모는 시설규모는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5]에서 제시한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A, B, C)에 해당되는 등급을 기재

[작성방법]

- (1), (2) 사업장, 배출시설 정보 : 해당 배출시설의 사업장 정보와 배출시설 정보 기입
- (3), (4), (5) 활동자료 흐름 종류, 측정지점 기호, 모니터링 유형 : “4.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등”의 (9)~(11) 내용 기입
- (6) 측정기기 이름 : 측정지점 기호에 따라 해당 활동자료를 측정하는 측정기기 이름을 기입하며,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설치’라 기입
(단, 측정기기의 이름 및 종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량기 종류 등을 참조)
- (7) 측정기기 고유번호 : 측정기기별로 제품 일련번호, 자체 관리번호 등 고유번호를 기입하며,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작성하지 않음
- (8) 측정기기 신규 설치계획 : 해당 측정지점에 대한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규설치 예정일, 측정기기의 이름 및 종류와 소요액(천원)을 기입
(단, 복수의 측정기기일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
- (9) 기 설치된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실시계획 : 해당 측정지점에 설치된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등 실시계획, 소요액(천원)을 기입

4. 외부 에너지 유입 및 판매 계획 작성

- 관리업체인 (주)환경에너지의 본사 및 사업장에 대하여 외부 에너지의 구매 및 판매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
- 관리업체 에너지 이동 일반정보
 - － 사업장1은 근처 들리산업에게 열(스팀)을 판매하고 있으며, 근처 길동산업으로부터 열(온수)를 구매하고 있다.
 - － 또한 들리산업과 길동산업은 확인 결과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구분되어 매년 배출량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 에너지 외부 유입 및 구매 계획 기입 [별지 제7호 서식]



6 에너지 외부 유입 및 구매 계획

(1) 사업장 정보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002	사업장1	5	0	4	0	0	2	*	*	*	*	*	*

(2) 번호	(3) 에너지의 종류	(4) 공급 업체명	(4) 공급 사업장명	(5) 업체 분류	(6) 공급사업장 소재지
1	열(온수)	길동산업	길동1사업장	☐ 할당대상업체 ☒ 관리업체 ☐ 비관리업체	충남 보령시 ***

[Point]

- 외부로부터 열(스팀), 열(온수), 부생가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 작성

[작성방법]

- (1) 사업장 정보 : 사업장별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입
- (2) 번호 : 구매한 에너지원 번호 기입(자동생성)
- (3) 에너지의 종류 : 해당 사업장의 외부에서 구매하는 에너지원의 종류 기입
- 예 : 열(스팀), 열(온수), 부생가스 등
- (4) 공급 업체명, 사업장명 : 외부 구매 에너지의 공급 업체명과 사업장명을 기입
- (5) 업체 분류 : 공급사업장의 할당대상업체, 관리업체, 비관리업체 경우를 분류하여 기입
- (6) 공급사업장 소재지 : 공급사업장 주소를 도로명 기준으로 기입

○ 사업장 고유(Tier 3) 배출계수 등 개발 계획 기입 [별지 제7호 서식]

7-1 사업장 고유(Tier 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계획 (자가소비)

(1) 사업장 정보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2) 배출시설 정보	일련번호	시설코드	배출시설명	시설규모	(3) 배출활동 정보	코드	배출활동명
	002	사업장1	5	0	4	0	0	2	*	*	*	*		003	0082	화력발전시설	A		1002	기체연료연소

번호	(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개발 대상 (활동자료명)	분석 항목	시험·분석 규격	시험·분석기관		분석기준 (베이스)	분석 주기	시료채 취지점	시료채취 규격	계수 산정 방법론	계수 산정식	특이사항	증빙첨부 (KOLAS 인증 등)
				외부기관명/ 자체실험실	공인여부/자체 실험실 적합 여부								
1	LNG	가스 성분별 함량	KS I ISO 6974	OOO시험기관	KOLAS 인증	인수식	월1회	A가스관 중간 지점	KS I ISO 10715	배출량 인증지침의 Tier 3 기체연료연소 산정방법론			분석기관 KOLAS 인증서, 검량선 작성기록, 분석기록지 , 배출계수 산정시트
		발열량	KS I ISO 6976										
		(5) 매개변수명							CO ₂ 배출계수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시 적용 예정인 시료채취·분석 규격, 시험·분석기관 증빙자료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Point]

• Tier 3 개발 대상

- ① 배출시설 규모가 C그룹(50만 톤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 ② 배출시설 규모가 A, B그룹에 해당되나, 배출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Tier3 계수를 개발·적용
- ③ 지침에 Tier1 계수 또는 Tier2 계수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장 자체적으로 Tier3 계수를 개발·적용
- ④ 타 사업장에 열을 공급함에 따라 열 간접 배출계수인 Tier3 계수를 개발·적용
- ⑤ 공급업체가 개발·제공한 시험성적서 등으로 Tier3 계수를 개발·적용
- ⑥ 기타 필요한 경우

• Tier 3 배출계수 개발 예외

- 배출시설에서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연료별 사용에 따른 배출량의 총합으로 배출시설규모 및 산정등급 (Tier)을 결정함. 단, 초기가동·착화연료 등 소량으로 사용하는 보조연료의 배출량이 시설 총 배출량의 5% 미만일 경우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이때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하는 배출시설 보조연료의 배출량 총합은 25,000 tCO₂-eq 미만이어야 함

• Tier 3 배출계수 미적용 배출활동

배출활동	관련근거
1. 이동연소(항공, 도로, 철도, 선박)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2. 석회생산	
3. 탄산염의 기타 공정 사용	
4. 유리 생산	
5. 암모니아 생산	
6. 질산 생산	
7. 카바이드 생산	
8. 소다회 생산	
9. 전자 산업(반도체 / LCD / PV)	
10.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11. 고형폐기물 매립	
12.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13. 하수처리	
14. 폐수처리	
15. 외부전기 사용	

[작성방법]

- (1) 사업장 정보 : “1-2. 사업장 목록”의 사업장별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입 (자동기입)
- (2) 배출시설 정보 : “4.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등”에 기입한 배출시설 정보와 일련번호를 기입 (자동기입)
 - 시설규모는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5]에서 제시한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A, B, C)에 해당되는 등급을 기재
- (3) 배출활동 정보 :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활동 이름과 코드[참고1]를 기입 (자동기입)
- (4) 개발 대상(활동자료명) : 개발대상 활동자료의 대분류_중분류_연료/원료/생산물명 기입
- (5) 매개변수명 : 개발대상 매개변수명(CO₂ 배출계수 등) 기입
- (6) 분석 항목 : 분석이 필요한 항목(발열량, 원소분석, 공업분석, 밀도 등) 기입
- (7) 시험·분석규격 :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14]를 참고하여 분석항목별 시험·분석규격 기입
- (8) 시험·분석기관 : 분석을 실시할 시험기관의 이름과 공인여부 선택 및 기입
 - 분석기관(외부위탁기관, 자체실험실) 선택하고 외부위탁기관일 경우 기관명 기입
 - 외부위탁기관의 공인여부(공인, 미공인) 선택 또는 사업장 자체실험실의 체크리스트 적합성여부(적합/부적합) 선택
- (9) 분석기준(베이스) : 고체연료의 분석기준(기건식, 인수식, 건식, 무수무회식) 선택
- (10) 분석주기 :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13]에 따라 계수 항목별 시료채취 및 분석 주기, 횟수를 기입
 - 예 : 월1회, 일일, 반기1회
- (11) 시료채취지점 : 시료 채취 지점 기입
- (12) 시료채취규격 :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14]를 참고하여 계수 항목별 시료 채취 규격 기입
- (13) 계수 산정 방법론 : 매개변수의 산정 시 적용할 방법론 선택
 - 예 : 배출량 인증지침의 Tier 3 산정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고체연료연소 산정방법론’을 선택, 자체 개발식을 적용할 경우 ‘자체 개발식’을 선택
- (14) 계수 산정식 : 자체 개발식일 경우 직접 입력
- (15) 특이사항 : 기타 특이사항 기입
 - 예 : 시험 분석기관이 변경될 예정인 경우 관련 내용 기입
- (16) 증빙첨부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시 적용 예정인 시료채취 규격, 시험·분석 규격, 시험·분석기관 증빙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



7-2 사업장 고유(Tier 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계획 (외부판매)

(1) 사업장 정보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개발 대상 (활동자료명)	분석 항목	시험·분석 규격	시험·분석기관		분석기준 (베이스)	분석 주기	시료채 취지점	시료채취 규격	계수 산정 방법론	계수 산정식	특이사항	증빙첨부 (KOLAS 인증 등)
				외부기관명/ 자체실험실	공인여부/자체 실험실 적합 여부								
1													
		(3) 매개변수명					CO ₂ 배출계수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시 적용 예정인 시료채취·분석 규격, 시험·분석기관 증빙자료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작성방법]

- (1)~(14) : “7-1. 사업장 고유(Tier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계획(자가소비)” 내용 참고하여 기입

7-3 사업장 고유(Tier 3) 간접 배출계수 개발 계획 (외부판매)

(1) 사업장 정보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002	사업장1	5	0	4	0	0	2	*	*	*	*

번 호	(2) 개발 대상 (활동자료명)	(3) 생산유형	(4) 생산주체	(5) 시설일련번호	(6) 배출시설명	(7) 자체시설명	(8) 사용연료	(9) 측정항목	(10) 측정지점	(11) 특이사항	(12) 증빙첨부
1	열(스팀)	열병합 생산열	자체생산	***	화력발전시설	제2호기 보일러	LNG	온도/압력	열교환기 전/후		배출계수 개발 관련 자료 일체

[Point]

- 배출량 인증지침 제19조(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에 따라 외부에서 열(스팀)을 관리업체에 공급하는 공급업체는 간접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함.
간접배출계수 개발 및 제공업체는 아래와 같음
 - 열전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 열병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 외부수열(폐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단, 비관리업체가 공급할 경우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배출계수 적용이 가능함)
- 배출량 인증지침 제21조(기타부생연료 발생 시설에서 외부 기타 부생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활용)에 따라 관리업체가 기타부생연료(부생가스, 부생오일, 재생유 등) 등의 발생시설에서 기타 부생연료 등을 회수하여 조직경계 외부로 공급할 경우 기타부생연료의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관리업체에게 제공해야 함



[작성방법]

- (1) 사업장 정보 : “1-2. 사업장 목록”의 사업장별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입 (자동기입)
- (2) 개발 대상(활동자료명) : 개발대상 활동자료의 대분류_중분류_연료/원료/생산물명 기입
- (3) 생산유형 : 열 생산 유형(열전용 생산열, 열병합 생산열, 공정폐열, 폐기물 소각열) 기입
- (4) 생산주체 : 열 생산 주체를 선택(자체생산, 외부유입 중 택일)
 - 외부유입된 열을 사용한 경우 “6. 에너지 외부 유입 및 구매 계획” 양식의 해당 에너지원 번호 기입
- (5)~(7) 시설일련번호 및 시설명 : 해당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자체시설명 기입
- (8) 사용연료 : 해당 시설에서 사용한 연료명 기입
- (9) 측정항목 : 열량 산출을 위해 측정한 항목 선택(온도 또는 온도·압력 중 택일)
- (10) 측정지점 : 측정항목의 측정을 수행한 지점 기입
- (11) 특이사항 : 기타 특이사항 기입
- (12) 증빙첨부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5. 배출활동별 산정등급 적용계획 작성

- 관리업체인 (주)환경에너지의 본사 및 사업장 각각 배출활동에 대하여 산정등급(Tier) 적용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 단, 각 사업장 배출활동별 매개변수를 모두 작성하여 한 눈에 파악 가능하여야 한다.
 - 또한 산정등급 선정 시 지침을 참고하여 최상위 Tier를 적용하며 이를 양식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 관리업체 배출활동별 산정등급 일반정보
 - 사업장1의 화력발전시설은 연료로 LNG를 사용하며 시설 규모가 지침 상 'A'로 구분됨에 따라 이에 따른 매개변수 산정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당 배출활동에 적용예정인 산정등급(Tier) 현황		연료사용량	배출계수			순발열량	총발열량	산화계수
구 분	적용예정 산정등급		CO ₂	CH ₄	N ₂ O			
적용예정 산정등급		1	1	1	1	2	2	1

- 단, '7-1. 사업장 고유(Tier 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계획(자가소비)'에서 LNG 사용에 따른 CO₂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CO₂ 배출계수의 산정등급(Tier)은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Tier 3)를 적용한다.



○ 배출활동별 산정등급 적용계획 기입 [별지 제 7호 서식]

8 배출활동별 산정등급 적용계획

8-1. 산정등급 적용 계획 총괄

(1) 사업장 정보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2) 배출시설 정보	일련번호	시설코드	배출시설명	시설규모			
	002	사업장1	5	0	4	0	0	2	*	*		*	*	001	0	0	8	2

(3) 배출활동 정보		(4) 활동자료 흐름 정보	해당 배출활동에 적용예정인 산정등급(Tier) 현황		(10) 예상 배출량 (tCO ₂ -eq)	(11) 배출시설 총 배출량 중 차지비중(%)	(12) 최상위 Tier 적용여부
코드	배출활동명		구 분	적용예정 산정등급			
1 0 0 2	기체연료연소	도시가스(LNG)	(5) 산정방법론	1	5,539.246	31.36%	□ 예 / ☑ 아니오
1 0 0 2	기체연료연소	도시가스(LNG)	(6) 활동자료	1			
1 0 0 2	기체연료연소	도시가스(LNG)	(7) 순발열량	2			
1 0 0 2	기체연료연소	도시가스(LNG)	(7) 총발열량	2			
1 0 0 2	기체연료연소	도시가스(LNG)	(8) 산화계수	1			
1 0 0 2	기체연료연소	도시가스(LNG)	(9) CO ₂ 배출계수	3			
1 0 0 2	기체연료연소	도시가스(LNG)	(9) CH ₄ 배출계수	1			
1 0 0 2	기체연료연소	도시가스(LNG)	(9) N ₂ O 배출계수	1			

[작성방법]

- (1) 사업장 정보 : “1-2. 사업장 목록”에서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 (2) 배출시설 정보 : “4.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등”에 기입한 배출시설 정보와 일련번호를 기입
 - 비고 : 시설규모는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5]에서 제시한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A, B, C)에 해당되는 등급을 기입
- (3), (4)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 흐름 정보 : “4.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등”의 (5), (9) 내용 기입
- (5) 산정방법론 : 해당 연료 또는 원료 등에 대하여 적용 예정인 산정방법론의 산정등급(Tier)을 기입
- (6) 활동자료(사용량) : 해당 연료 또는 원료 등에 대하여 적용 예정인 불확도 관리기준에 따른 산정등급(Tier)을 기입
- (7) 열량계수(순발열량, 총발열량) : 해당 연료 또는 원료 등에 대하여 적용 예정인 발열량의 산정등급(Tier)을 기입
- (8) 산화계수 : 해당 연료 또는 원료 등에 대하여 적용 예정인 산화계수의 산정등급(Tier)을 기입
- (9) 배출계수 : 해당 연료 또는 원료 등에 대하여 적용 예정인 배출계수의 산정등급(Tier)을 기입
 - 배출량 산정방법론에 따라 배출계수가 복수인 경우 “배출계수2~배출계수 N”까지 기입한다 (원료 등 탄소함량 분석항목도 포함)
- ※ (5)~(9)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5, 별표 6 참조하여 작성
- (10) 예상배출량 : 해당 활동자료에 대한 예상배출량을 기입하며 배출량을 예상할 수 없을 경우 최근년도 과거 배출량을 기입함(과거 배출량 기입시 배출량 뒤에 괄호로 연도 표시)
 - 예 : 5,300 (2021)
- (11) 배출시설 총 배출량 중 차지비중(%) : 해당 활동자료에 기입한 예상 배출량이 배출시설 중 총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입
- (12) 최상급 Tier 적용여부 : 최상위 Tier 적용여부는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6의 각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에서 제시하는 산정등급(Tier) 중 최상위 등급(Tier) 적용 시 ‘예’로 체크

6.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 활동 계획 작성 예시

- 관리업체 총괄 및 하위 사업장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각각의 담당자별 세부 역할을 자유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활동 기입 [별지 제7호 서식]

9 품질관리/품질보증(QA/QC) 활동

9-1. 해당 조직의 경영시스템 인증현황

(1)	(2)	(3)	(4)		(5)		(6)	
일련 번호	사업장 명	소량 배출 사업장 여부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인정 여부		환경경영시스템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인정 여부		___ 경영시스템 인정여부	
			인정받은 규격의 이름 (ISO 9001 등)		인정받은 규격의 이름 (EMAS, ISO 14001 등)		인정받은 규격의 이름	
002	사업장1	N	Y	ISO 9001	Y	ISO 14001		

[작성방법]

- (1), (2) 일련번호, 사업장명 : “1-2. 사업장 목록”에서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을 기입
- (3) 소량배출 사업장 여부 : 제11조에 의한 소량배출 사업장 여부 기입
 -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1)~(3) 항목만을 기입할 수 있다
 - 소량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Y”로 표기
- (4) 품질경영시스템 인정여부 : 해당 조직(사업장 또는 관리업체 전체)의 품질경영시스템 인정여부를 표시
 - 가능하다면 인정받은 규격 이름을 기입, ISO 9001 등
- (5) 환경경영시스템 인정여부 : 해당 조직(사업장 또는 관리업체 전체)의 환경경영시스템 인정여부를 표시
 - 가능하다면 인정받은 규격 이름을 기입, ISO 14001 등
- (6) 기타경영시스템 인정여부 : 해당 조직(사업장 또는 관리업체 전체)의 기타경영시스템 인정여부를 표시
 - 가능하다면 인정받은 규격 이름을 기입



9-2. 해당 조직의 배출량 산정·보고 등 담당자 현황

(1)	(2)	(3)	(4)	(5)	(6)	(7)
일련 번호	사업장 명	소량 배출 사업장 여부	소속 부서	담당자 (직책)	담당자별 역할	문서화된 근거자료
관리업체 총괄(법인)			기획경영처	홍길동(팀장)	총괄관리, 내부검증담당, 품질관리 및 보증절차 및 문서보관 등	(주)환경에너지_근거자료. hwp
002	사업장 1	N	환경정책팀	홍루몽(과장)	사업장 총괄	
			환경정책팀	이순신(차장)	내부검증	
			환경정책팀	이승기(대리)	배출량 산정 보고	
			환경정책팀	김기훈(사원)	계측기 관리	
			환경정책팀	성룡(사원)	활동데이터 수집 및 관리	기초 고지서 등
003	사업장 2	N	환경에너지팀	원빈(팀장)	사업장 총괄	
			환경에너지팀	정우성(대리)	내부검증	
			환경에너지팀	고수(대리)	배출량 산정 보고	
			환경에너지팀	전지현(사원)	활동데이터 수집 및 관리	
			환경에너지팀	공효진(사원)	계측기 관리	기초 고지서 등
004	사업장 3	N	환경정책팀	장동건(팀장)	사업장 총괄	
			환경정책팀	차태현(과장)	내부검증	
			환경정책팀	김수현(대리)	배출량 산정 보고	
			환경정책팀	아이유(대리)	활동데이터 수집 및 관리	
			환경정책팀	이경규(사원)	계측기 관리	기초 고지서 등
005	사업장 4	N	환경관리팀	이병현(팀장)	사업장 총괄	
			환경관리팀	송혜교(과장)	내부검증	
			환경관리팀	김사랑(대리)	배출량 산정 보고	
			환경관리팀	남상미(대리)	활동데이터 수집 및 관리	
			환경관리팀	주윤발(사원)	계측기 관리	기초 고지서 등

[Point]

- 담당자별 세부역할은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19]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 활동의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 업무의 세부 항목을 참고하여 기입
 - 가능할 경우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19] 각 항목에 대한 하위레벨의 세부 항목을 자유롭게 서술
 - ① 기초자료의 수집 및 정리 담당자
 - ② 배출량 산정 과정의 적절성 확인 담당자
 - ③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절성 확인 담당자
 - ④ 배출량 보고의 적절성 확인 담당자
 - ⑤ 내부 감사(internal audit) 담당자
 - ⑥ 배출량 산정업무를 위탁한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담당자 (정보화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 ⑦ 품질보증 절차시 발견된 문제점, 리스크 등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업무 담당자
 - ⑧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자료의 기록관리 업무 담당자

[작성방법]

- (1), (2) 일련번호, 사업장명 : “1-2. 사업장 목록”에서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을 기입
- (3) 소량배출 사업장 여부 : 제11조에 의한 소량배출 사업장 여부 기입
 -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1)~(3) 항목만을 기입할 수 있다
 - 소량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Y”로 표기
- (4), (5) 소속부서, 담당자 : 배출량 산정·보고 담당자 이름(직책)과 소속부서를 기입
 - 관리업체는 총괄 책임자, 사업장 수준에서는 각 사업장 담당자를 기입
- (6) 담당자별 역할 : 배출량 산정, 보고 담당자별 세부 역할을 자유롭게 서술하되 세부역할은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19]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 업무의 세부 항목을 참고하여 기입할 수 있음 (단, 가능할 경우 각 항목에 대한 하위레벨의 세부 항목을 자유롭게 서술)
- (7) 문서화된 근거자료 :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화된 자료명을 기입하고, 이행계획 제출 시 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함

9-3. 품질관리(QC)/품질보증(QA) 업무 실시 계획

(1)	(2)	(3)	(4)	(5)
일련 번호	사업장 명	소량 배출 사업장 여부	품질관리(QC) 활동	품질보증(QA) 활동
관리업체 총괄(법인)				
001	본사	Y	본사_QC_품질관리 실시계획.hwp	본사_QA_품질관리 실시계획.hwp
002	사업장1	N	사업장1_QC_품질관리 실시계획.hwp	사업장1_QA_품질관리 실시계획.hwp
003	사업장2	N	사업장2_QC_품질관리 실시계획.hwp	사업장2_QA_품질관리 실시계획.hwp
004	사업장3	N	사업장3_QC_품질관리 실시계획.hwp	사업장3_QA_품질관리 실시계획.hwp
005	사업장4	N	사업장4_QC_품질관리 실시계획.hwp	사업장4_QA_품질관리 실시계획.hwp

[Point]

- 각 사업장의 QA/QC 업무 계획 및 일정을 간략히 작성하거나, 별도로 작성된 근거자료를 첨부함

[작성방법]

- (1), (2) 일련번호, 사업장명 : “1-2. 사업장 목록”에서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을 기입
- (3) 소량배출 사업장 여부 : 제11조에 의한 소량배출 사업장 여부 기입
 -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1)~(3) 항목만을 기입할 수 있다
 - 소량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Y”로 표기
- (4) 품질관리 활동 :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19]에 해당하는 품질관리(QC) 업무 실시 계획 간략하게 기입(해당 월/분기 등)
- (5) 품질보증 활동 :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19]에 해당하는 품질보증(QA) 업무 실시 계획 간략하게 기입(해당 월/분기 등)



7. 사업장 운영계획 및 감축목표 이행계획 작성

- 기존 배출시설의 가동률 등의 운영계획 등 기입 [별지 제7호 서식]

10 기존 배출시설의 가동률 등의 운영계획 등

(1) 사업장 정보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2) 업종 정보	표준산업 분류코드	해당 사업장의 부문 또는 업종	해당 부문·업종 감축계수(CFI)
	002	사업장1	5	0	4	—	0	0	—	2	*	*		*	*	0 0 0 0 0 0

(3)						(4)	(5)						
배출시설 코드				배출시설명	배출시설 규모	성장률 지표 (업종별 해당 지표만 선택)	기준연도(평균) 현황	(목표관리 계획기간-1)	증감 (%)	(목표관리 계획기간)	증감 (%)	(목표관리 계획기간+1)	증감 (%)
0	0	5	5	일반보일러시설	A	가동률	80%	75%	-5%	70%	-5%	65%	-5%
0	0	0	7	기타(식당연료)	A	연료사용량	100ton	95ton	-5ton	90ton	-5ton	85ton	-5ton
0	0	0	7	기타(비상발전기)	A	가동시간	10 hr/yr	9 hr/yr	-1hr	8 hr/yr	-1hr	7 hr/yr	-1hr

[작성방법]

- (1) 사업장 정보 : “1-2. 사업장 목록”에서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 (2) 업종 정보 : 제28조 규정에 따른 목표설정시 분류된 부문 또는 업종이름, 표준산업분류코드 및 해당 부문·업종의 감축계수를 기입
 - 제29조 규정을 적용받은 배출시설 또는 업종에 해당할 경우 인정계수(Ratio₀)를 기입
- (3) 배출시설명 등 : 해당 배출시설이름과 배출시설코드[참고2],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5]에 따라 분류된 배출시설 규모 (A, B, C)를 기입
- (4) 성장률 지표 : 지침 제28조 또는 제29조 규정에 따라 목표협의·설정 시 분류된 해당 업종단위의 성장률 지표(예상값) 등을 기입 (단, 세부 근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 첨부 가능)
- (5) 기준연도 및 목표관리계획기간 : 해당 업종단위의 성장률 지표를 기준연도 평균(과거실적)과 목표관리계획기간-1, 목표관리계획기간, 목표관리계획기간+1에 해당하는 예상값을 기입 (단, 세부 근거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 첨부 가능)

○ 배출시설의 신설 및 증설 계획 기입 [별지 제7호 서식]

11 배출시설의 신설 및 증설 계획

11-1. 배출시설의 신설 및 증설계획

(1) 사업장 정보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2) 업종 정보	표준산업 분류코드						해당 사업장의 부문 또는 업종			해당 부문·업종 감축계수(CF)
	002	사업장1	5	0	4	0	0	2	*	*		*	*	0	0	0	0	0	0	환경	

(3)			(4)	(5)	(6)	(7)	(8)	(9)			(10)									(11)		
배출시설 코드	신·증설 예정인 배출시설명	배출시설 규모	가동개시 예정일	배출시설 용량 (단위 기재)	세부 시설용량 (단위 기재)	일일 가동시간 (h/d)	목표관리 계획기간 가동일수 (days)	방지시설 (선택)			투입량 및 생산량 정보											
								대상 가스	시설 이름	처리 효율 (%)	투입 연료 및 원료			생산 제품			기타					
명칭	계획기간 예상값	단위 [참고5]	명칭	계획기간 예상값	단위 [참고5]	명칭	계획기간 예상값				단위 [참고5]	명칭	계획기간 예상값	단위 [참고5]								
0037	승용자동차	A	2022.6.5	1572	CC	10	326				경유	980										

[작성방법]

- (1) 사업장 정보 : “1-2. 사업장 목록”에서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 (2) 업종 정보 : 제28조 규정에 따른 목표설정시 분류된 부문 또는 업종이름, 표준산업분류코드 및 해당 부문·업종의 감축계수를 기입
 - 제29조 규정을 적용받은 배출시설 또는 업종에 해당할 경우 인정계수(Ratio_i)를 기입
- (3) 배출시설명 등 : 해당 배출시설이름과 배출시설코드[참고2],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5]에 따라 분류된 배출시설 규모 (A,B,C)를 기입
- (4) 가동개시 예정일 : 해당 신·증설 시설의 가동개시 예정일을 기입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참조)
- (5) 배출시설의 용량 : 연료의 최대 투입량, 발전용량, 제품생산용량 등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등 설계된 시설용량을 기입, 단 매립은 매립용량을 기입 (단위 포함)
- (6) 세부 시설용량 : 연료명(코크스, 무연탄 등)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등에 기입된 추가적인 시설용량정보를 기입 (선택사항)
- (7) 일일 가동시간 : 신·증설 예정인 배출시설의 설계상 일일 가동시간을 기입
- (8) 목표관리 계획기간 가동일수 : 해당 신증설 시설의 목표관리 계획기간에 연말까지 운영예정인 연간 가동일수를 기입
- (9) 방지시설 정보(선택) : 해당 신증설 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처리하는 온실가스의 종류(CO₂, CH₄, N₂O, [참고3]의 불소계 온실가스 명을 기입), 세부방지시설 이름과 처리효율(%)을 기입
- (10) 투입량 및 생산량 정보 : 해당 신증설 시설의 투입원료 및 연료, 생산제품, 기타(폐기물 처리예상량, 연면적, 주행거리 등) 등의 계획기간 예상값을 기입, 단위는 [참고5]를 참조
- (11) 배출구(굴뚝) 번호 : Tier 4(연속측정방법)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신증설 배출시설과 연결된 배출구(굴뚝) 번호를 기입



11-2. 배출시설의 폐쇄계획

(1)			(2)	(3)	(4)	(5)	(6)	(7)			(8)									(9)
배출시설 코드	폐쇄 배출시설명	배출 규모	폐쇄 예정일	배출시설 용량 (단위 기재)	세부 시설용량 (단위 기재)	일일 가동시간 (h/d)	목표관리 계획기간 가동일수 (days)	방지시설 (선택)			투입량 및 생산량 정보									배출구 (굴뚝) 번호
								대상 가스	시설 이름	처리 효율 (%)	투입 연료 및 원료			생산 제품			기타			
											명칭	계획기간 예상값	단위 [참고5]	명칭	계획기간 예상값	단위 [참고5]	명칭	계획기간 예상값	단위 [참고5]	

[작성방법]

- (1) 폐쇄 배출시설명 등 : 해당 배출시설이름과 배출시설코드[참고2],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5]에 따라 분류된 배출시설 규모 (A,B,C)를 기입
- (2) 폐쇄 예정일 : 해당 시설의 폐쇄 예정일을 기입
- (3) 배출시설의 용량 : 연료의 최대 투입량, 발전용량, 제품생산용량 등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등 설계된 시설용량을 기입, 단 매립은 매립용량을 기입 (단위 포함)
- (4) 세부 시설용량 : 연료명(코크스, 무연탄 등)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등에 기입된 추가적인 시설용량정보를 기입 (선택사항)
- (5) 일일 가동시간 : 폐쇄 예정인 배출시설의 설계상 일일 가동시간을 기입
- (6) 목표관리 계획기간 가동일수 : 해당 폐쇄 시설의 목표관리 계획기간에 연말까지 운영예정인 연간 가동일수를 기입
- (7) 방지시설 정보(선택) : 해당 폐쇄 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처리하는 온실가스의 종류(CO₂, CH₄, N₂O, [참고3]의 불소계 온실가스 명을 기입), 세부방지시설 이름과 처리효율(%)을 기입
- (8) 투입량 및 생산량 정보 : 해당 폐쇄 시설의 투입원료 및 연료, 생산제품, 기타(폐기물 처리량, 연면적, 주행거리 등) 등의 계획기간 예상값을 기입, 단위는 [참고5]를 참조
- (9) 배출구(굴뚝) 번호 : Tier 4(연속측정방법)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폐쇄 배출시설과 연결된 배출구(굴뚝) 번호를 기입

○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이행계획 기입 [별지 제7호 서식]

12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1) 사업장정보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2) 업종 정보	표준산업 분류코드	해당 사업장의 부문 또는 업종	해당 부문·업종 감축계수(CFI)			
	002	사업장1	5	0	4	0	0	2	*	*		*	0	0	0	0	0

(3)			(4)	(5)				(6)		(7)				
배출시설 코드	배출시설명	배출시설 규모	기준연도 배출량 (tCO ₂ -eq)	목표관리 계획기간의 감축계획				목표관리 계획기간 기대효과(예상)		목표관리 계획기간 투자계획				
				코드 [참고7]	세부 감축조치 명			온실가스 감축효과 (tCO ₂ -eq)		자체 투자 (백만원)	정부 지원 (백만원)	합계 (백만원)		
0098	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	A	1,430	3	2	9	3	노후설비 교체를 통한 효율제고		19.58		0	7.2	7.2
				5	1	2	1	과용량 모터와 펌프를 최적용량으로 교체		24.15		188	0	188
				6	1	2	4	보다 효율적인 조명원 이용		14.5		10	0	10
				9	1	1	1	조업개선		67.5		267.3	0	267.3

[작성방법]

- (1) 사업장 정보 : “1-2. 사업장 목록”에서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 (2) 업종 정보 : 제28조 규정에 따른 목표설정시 분류된 부문 또는 업종이름, 표준산업분류코드 및 해당 부문·업종의 감축계수를 기입
 - 제29조 규정을 적용받은 배출시설 또는 업종에 해당할 경우 인정계수(Ratio₀)를 기입
- (3) 배출시설명 등 : 해당 배출시설이름과 배출시설코드[참고2], 배출량 인증지침 [별표 5]에 에 따라 분류된 배출시설 규모 (A,B,C)를 기입
- (4) 기준연도 배출량 : “2.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현황” (5)에서 작성한 기준연도 배출량 등을 기입
- (5) 목표관리 계획기간의 감축계획 : [참고7] 감축수단 코드 참고, 목표관리 계획기간에 해당 배출시설(공정)에서 실시 계획인 감축조치 이름 기입
 - [참고7]에 코드가 없는 경우일 경우 직접 기입
- (6) 목표관리 계획기간 기대효과 : 해당 감축수단별로 해당 배출시설(공정)에서의 목표관리 계획기간의 예상 감축량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기입 (감축수단별로 기대효과를 예상하지 못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 합계로 작성 가능)
- (7) 목표관리 계획기간 투자계획 : 해당 감축수단별로 투자금액을 기입 (자체 투자, 정부지원금(융자 포함)을 구분하여 작성)



8.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 및 기타 작성

○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 기입 [별지 제7호 서식]

13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

(1) 개선명령	(2) 조치계획
예) '23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1,000tCO ₂ eq 초과 배출함에 따라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반영하고 감축 이행 추진	예) '25년 3월 인버터 설치를 통해 총 1,200tCO ₂ 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며, 인버터 설치 비용 200백만원 예상됨

[작성방법]

- (1) 개선명령 : 이행계획 작성 전년도에 이행실적에 대해 관장기관에서 내린 개선명령 기입 (첨부가능)
- (2) 조치계획 : 개선명령에 대한 조치계획 기입 (개선계획, 구체적인 일정, 소요 비용 등 포함)

○ 이행계획 작성 관련 기타사항 기입 [별지 제7호 서식]

14 이행계획 작성 관련 기타사항

(2) 사업장 정보			(3) 해당 이행계획 서식명	(4) 항 목	(5) 세부 내용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002	사업장1	5 0 4 — 0 0 — 2 * * * *	12.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온실가스 감축계획 근거자료	온실가스 감축계획 근거자료 제출

[작성방법]

- (1) 관리업체(법인)정보 : “1-1.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정보”의 업체 법인명 기입
- (2) 사업장 정보 : “1-2. 사업장 목록”에서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 (3) 해당 이행계획 서식명 : 기타사항이 있는 이행계획 서식의 번호와 서식명을 기입
- (4) 항목 : 해당 이행계획 서식의 항목을 기입
- (5) 세부 내용 : 해당 이행계획의 기타사항 세부 내용을 기입